

북한문제 이해

- 실태와 변화 가능성 -

1999

통일교육원

이 책은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I.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

1

제1절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 / 3

제2절 교재의 구성 / 11

II. 북한의 정치

19

제1절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 21
2.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 25
3.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 26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등장 / 33
2.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 36
3.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 41
4. 주체사상 비판 / 45

제3절 권력구조와 기능

1. 권력체계의 특징 / 49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 52
3. 정권기관 / 58

제1절 대외환경의 변화 / 87

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초 / 91
2. 대외정책의 전개 / 100
3.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 / 108

제3절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 124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 131
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 / 137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 151
2. 재정규모 / 156
3. 무역구조 / 159
4. 경제난의 부문별 현황과 과제 / 167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추진과 문제점

1. 대외경제개방 추진 배경과 합영법의 제정 / 178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성과 / 183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 192

제4절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전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 197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 / 198
3. 대외개방 정책의 한계 / 200
4. 북한경제체제의 향후 전망 / 201

V. 북한의 군사

207

제1절 북한군의 특징

1. 성격과 기능 / 210
2. 북한사회에서의 위상 / 212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 215
2. 군사제도 / 219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

1. 선제공습전략 / 227
2. 속전속결전략 / 228
3. 배합전략 / 229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 231
2. 예비전력 / 236
3. 전략무기 / 238
4. 최근 군사 동향 / 243

제1절 교육의 기본원리 / 249

제2절 교육정책

1. 교육행정체제 / 252
2. 교육제도 / 254

제3절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 263
2. 정치사상 교육강화 / 265
3. 교육방법 / 271

제4절 유아교육과 성인교육

1. 유아교육 / 273
2. 성인교육 / 275
3. 사회주의교육의 한계 및 전망 / 277

제1절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1. 북한의 문예정책 / 283
2. 문예이론과 창작 / 291

제2절 문화·예술분야 활동실태

1. 각 분야별 활동실태 / 298
2. 문예단체 현황 / 307

제3절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

1. 전통문화와 공산주의적 도덕 / 310
2.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 / 311

제4절 북한 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 314

VIII. 북한의 사회구조

319

제1절 계층구조

1. 북한의 계층 / 322
2. 계층 이동 / 334
3. 북한 계층구조의 특징 / 336

제2절 범죄와 일탈

1.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 / 340
2. 최근의 범죄와 사회일탈 / 340

제3절 사회통제

1. 체제 동조 이념 / 347
2. 사회통제기관 / 353
3.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을 통한 사회통제 / 356

IX. 북한주민의 생활

363

제1절 주민생활 규제원리 / 365

제2절 소비생활

1. 소득수준 / 368
2. 소비수준 / 370
3.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 384

제3절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1. 직업의 선택 / 390
2. 근로환경 및 휴가제도 / 392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 398

제4절 가정생활과 의례생활

1. 북한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 402
2. 가정생활과 여성의 위치 / 408
3. 의례생활 / 414

제5절 종교생활

1. 북한의 종교정책 / 418
2. 현재의 종교실태 / 420
3. 북한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 / 425

X. 북한의 변화 가능성

431

제1절 북한의 변화방향 / 433

제2절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1. 김정일 정권기반의 확립 / 438
2. 경제난의 해결 / 440
3. 대외관계의 개선 / 441

I.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

제1절	3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	
제2절	11
교재의 구성	

제1절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

20세기는 인류 문명의 명암이 교차한 시대였다. 세계경제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세기의 전반기 동안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고통을 겪었으며 후반기에는 냉전질서의 긴장을 경험했다. 이제 냉전질서는 무너졌고 20세기는 끝나가지만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지도자들이 인류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산

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유독 한반도는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냉전 이후 경제적 실리를 따라 국가간의 동맹관계가 급격하게 바뀌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자는 추세 속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켜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세계화 추세가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자본, 정보, 서비스 등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공간이 확대,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근대사회의 통합을 주도해 온 국가와 민족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 도처의 분쟁과 내전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의 대두에서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냉전 이후 나타난 민족주의 돌풍은 세계의 폭력을 주도하는 중심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냉전기간 동안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구도에 가려 깊숙이 파묻혀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날 폭력의 대의명분으로 전위되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세계정세의 현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틀을 구

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북한이 21세기를 맞아 한반도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생각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지금 세계질서는 국가별 경제적 실리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중인데 남북한은 여전히 이념적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민족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실천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50년 이상 분단상태로 지내온 남북한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문제는 온 세계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이후를 논하는 오늘날에도 유일하게 북한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남아 세계적 흐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그 체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체제수호를 위해서 인민군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과 어린 학생들도 모두 “혁명의 수뇌부”를 지키는 “총폭탄”이 되어야 하며 식량난의 심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도 “고난의 행군”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북한지도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지도부는 1999년 1월 1일 당보·군보·청년보에 공동발표한 신년사설에서도 올해는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 전진하는 총진격의 해”로 설정하고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해 놓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감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민족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남북한의 공존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남북 상호간에 50년 이상 쌓인 불신의 장벽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중요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

외재적 접근법이라 함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외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의 한계점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 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때에는 북한 내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외재적 접근법과 달리 내재적 접근

법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으로서 기여한 바 크지만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오랜 세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관점으로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 보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채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난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도 체제의 생존

과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는 않겠다는 이유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라고 해서 이데올로기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해 그 움직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의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집 등의 자료가 북한의 선전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분단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인식대상에 대해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 주관, 감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결과일 것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사회의 특성을 보

여출 비교분석과 함께 정치논리에 입각한 단순한 수직적 접근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수평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체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되 그 구심점으로서 수령의 존재와 이데올로기적 기초로서 주체사상 및 조선노동당의 일당지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최대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존재와 역할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을 가리키며,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함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된다.

북한은 1995년 10월 발표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 제하의 논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세우기 위해 주석직을 아예 폐지해 버리기도 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왜곡된 1인독재체제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혁명적 수령관을 축대로 주체사상이 지배권력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되었을 때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이미 권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구조와 논리를 갖는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의

기원과 구조, 기능, 변화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초로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시도하였다.

제2절 교재의 구성

이 교재는 북한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북한체제의 특징은 수령의 존재와 역할에 있다는 판단 하에 전체적인 논리를 전개했다. 독재체제의 성립배경으로 작용한 혁명과 전쟁의 요소는 그 이후 독재체제 공고화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쟁분위기를 통해 긴장을 지속시킴으로써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도모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외적 문제와 아울러 내적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구조

적 한계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제체제와 개혁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자멸을 초래하게 될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선전하는 외부의 위협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난과 김일성 사후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체제를 유지시켜 왔고 유지시키려고 하는가? 북한지도부가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개방과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개방의 물질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 아래 북한이 생존전략을 성취시키기 위해 채택한 전술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개방과 도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이중성이 대내, 대외, 대남 등의 영역에 걸쳐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본론에서 분석, 검토했다.

셋째, 어떤 체제든지 한계는 있게 마련이며 그 점에서 체제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북한의 변화는 사실상 권력정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존속해 온 원인이 내부결속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역설해 온 북한지도부의 통치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있다면, 북한체제가 변화하는 출발점은 북한지도부가 될 것이다.

체제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만으로 북한체제가 단기

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교재는 현재 북한의 문제는 내부 모순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과 북한체제의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교재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북한의 정치는 북한정권의 형성과정·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권력구조와 기능 등 3개의 절로 세분되어 있다. 제2장의 내용은 분단 이후 북한정권의 형성과정을 초창기부터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공식화될 때까지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한 뒤 그 과정에서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제시된 주체사상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과 정권기관의 구조를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각 부분별 기능을 소개해 놓았다.

제3장 북한의 대외관계는 대외환경의 변화·북한의 대외정책·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등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주”노선을 강조하던 북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절은 시기별로 북한정권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최근 북한과 주변 강대국 상호간의 외교관계를 소개해 놓았다. 제3절은 북한정권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앞으로 대남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인다.

제4장 북한의 경제는 북한 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추진과 문제점·북한 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등 4개의 절로 구분해 놓았다. 제1절은 해방 직후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서술했다. 제2절은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 실태와 재정규모, 무역구조 등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정권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 제3절은 북한정권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뒤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지적했다. 제4절은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내재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제5장 북한의 군사는 북한군의 특징·북한군의 조직과 제도·북한의 군사전략·북한의 군사력 등 4개의 절로 세분해 놓았다. 제1절은 북한에서 군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소개하고 주민들이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을 설명했다. 제2절은 북한군의 군사지휘체계와 군사기구를 설명하고 병역제도와 병영생활 및 계급구조, 군대 내부의 당조직 등에 대해 서술했다. 제3절은 북한의 군사전략이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적화통일전략의 하위개념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선제공습·속전속결·배합전략 등을 설명했다. 제4절은 북한의 군사력을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으로 나누어 상술한 뒤 최근의 군사동향도 소개했다.

제6장 북한의 교육은 교육의 기본원리·교육정책·교육내용 및 방법·유아교육과 성인교육 등 4개의 절로 구분해 놓았다. 제1절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개념을 소개하고 그 개념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했다. 제2절은 북한의 교육행정체계와 교육제도에 대해 서술해 놓았다. 제3절은 북한의 학교교육 내용이 크게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나뉘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치사상교육의 실태와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4절은 취학전 유아교육의 실태와 성인교육의 실태를 기술해 놓았다.

제7장 북한의 문화예술은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문화예술분야 활동실태·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북한 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등 4개의 절로 세분되어 있다. 제1절은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고취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점을 반영한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과정을 소개해 놓았다. 제2절은 문학, 음악과 가극, 무용, 영화와 연극 등 분야별 예술활동의 현황과 각종 문예단체의 실상을 설명했다. 제3절은 북한정권이 제시하는 공산주의 도덕이나 사회주의 문화라는 개념이 전통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서술했다. 제4절은 북한의 문화예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 교화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8장 북한의 사회구조는 계층구조·범죄와 일탈·사회통제 등 3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제1절은 북한의 사회계층이 출신성분과

직업별·소득별·성별 기준에 따라 설명한 뒤 계층이동의 실태와 북한 계층구조의 특징을 소개했다. 제2절은 북한의 형법이 규정한 범죄의 유형을 소개하고 최근 북한사회에 만연하는 범죄와 일탈의 실상을 기술했다. 제3절은 일탈을 통제하는 규범과 사회통제기관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9장 북한주민의 생활은 주민생활 규제원리·소비생활·직장생활과 노동실태·가정생활과 의례생활·종교생활 등 5개의 절로 세분해 놓았다. 제1절은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원리에는 공식적인 규범과 실질적인 생활의식 및 가치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절은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을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을 대비시켜 설명한 뒤 최근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제3절은 북한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직업을 갖게 되는가 하는 점과 근로환경 및 휴가제도 등을 설명했다. 제4절은 북한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을 시대별로 살펴 본 뒤 오늘날 북한주민들의 가정생활 실상과 여성의 위치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북한의 장례와 제례, 명절 풍속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5절은 북한정권이 규정하는 종교의 개념을 기술한 뒤 오늘날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북한의 변화방향·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등 2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제1절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후

계체제를 구축한 북한이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제2절은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김일성의 '유혼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 통치체제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김정일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전망했다.

Ⅱ. 북한의 정치

제1절	21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제2절	3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제3절	49
권력구조와 기능	

요 정

- 김일성 사망후 4년 2개월간의 긴 '유혼통치' 끝에 1998년 9월 김정일이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국가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부자간 권력승계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 가 열리게 되었지만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정권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북한 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에 더 역점을 두었다.
 - 김정일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공식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개방·개혁의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기보다 김일성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1절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의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1945. 7. 17~8. 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참전에 따르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담에 참가한 미·소 군사대표들의 회담에서는 한반도지역의 군사작전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군사점령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츠담회담 결과 소련은 대일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츠담회담이 끝난지 4일째인 1945년 8월 6일 미국

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8월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은 8월말까지 38도선 이북의 거의 전지역에 진주하였으며, 8월 24일 평양에 진격한 소련군은 “소련군의 관할구역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8도선은 소련군의 남하저지와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설정된 잠정선이었지만, 결국 소련의 책략에 의해 정치적 분할선이 되어 우리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곧이어 북한지역은 소련군의 점령정책을 통해 공산화되었다. 우선 북한지역의 소비에트화는 각 도인민위원회(道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지역 점령군 사령관인 로마네펬 소장은 평양에 있던 건국준비위원회(건준) 평남지부(대표 조만식)와 조선공산당 평남지부(대표 현준혁)를 통합하여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45. 8. 27)가 구성되었으며, 유사한 단체들이 북한의 나머지 4개 도에도 속속 조직되었다. 1945년 10월 8일 로마네펬은 북한 5개 도에 설치되었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였는데, 회의 결과 1945년 10월 28일 「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다. 5도행정국은 소련군정 하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한편 소련점령군의 초미의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당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였다.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45. 9. 11)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소련군 사령부는 북한지역의 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었다. 북조선 분국의 설치는 북한에 서울과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케 하려는 소련군 사령부의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1945년 12월 17~18일 분국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점령군의 도움 아래 공산당이 결성됨에 따라 공산당 지배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그후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46. 8)하면서 「북조선로동당」으로 개칭하였으며, 공산당 일당 지배를 위한 내적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정당·사회단체 5도행정국 및 각도 인민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5도행정국의 기능을 계승함으로써 북한에 공산당이 지도하는 단독 정권기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최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함께 갖는 기관이었다.¹⁾

소련점령군 당국은 김일성을 통치자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1946년 11월에 북한의 각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1947년 2월에는 읍·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를 통해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최고입법기관으로서 북조선 인민회의의 설치를 결의하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²⁾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1948년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는 특별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했다.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9. 8)한 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승인함으로써 소련의 위성국(衛星國)이 한반도 북쪽에 탄생하게 되었다.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 남로당과 북로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고,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소련은 북한정권이 성립하기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배후 조종과 감독을 계속하였다.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이 1948년 1월 20일자로 스티코프 장군에게 북조선 인민회의

1) 북한은 정권의 제1단계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人民政權)이라 하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바로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여 이른바 '민주개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은 「토지개혁법령」(46. 3. 5)을 비롯하여 「중요산업국유화법령」(46. 8. 10), 「로동법령」(46. 6. 24),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46. 7. 30), 「선거법령」(46. 6. 4),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46. 6. 27)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강행한 토지개혁이었다.

2) 북한은 민주선거에 의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임시'를 삭제하였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그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제와 회의 개최 허락을 요청한 사실과 당시 조·소간에 11개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에서 시행되어야 할 제반 조치들을 나열해 놓은 1949년 3월 19일자 스티코프의 편지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2.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해방이후 북한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세력, 현준혁·박헌영 등 국내 공산주의세력,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김두봉 등 연안파(延安派),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허가이 중심의 소련파, 김일성 추종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중심의 북조선공산당과 김두봉 중심의 조선신민당, 박헌영 중심의 남조선노동당이 시차를 두고 합당하여 창당된 것이며, 여기에 소련파가 가세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하에 테러와 통일전선전술 등 이중정책을 구사하며 정적(政敵)들을 제거해 나갔다.³⁾

점령 초기 현준혁과 조만식을 제거한 김일성은 6·25전쟁과 그 직후 정적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57년 5월 30일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단행하여 전 북한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 연안파는 완전히 축출되었으며, 소련파의 상당수는 소련으로 피신했으나 박창옥 등은 처형되었다. 남로당계와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지은 김일성은 자신과 합

3)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게 항일 빨치산운동을 전개했던 ‘빨치산과’의 일부까지도 숙청하였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은 피의 숙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수령’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 무렵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이른바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⁴⁾

3.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1)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

김정일은 1967년 5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

4) 1948년 헌법에서 주권의 대표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되었는데 반해,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합시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제도화되었다.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특징을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김일성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획득한 권력기반을 사회주의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회의에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권 장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70년대 들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다. 이어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또한 1975년 11월부터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그 당시 김정일은 '당 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을 뿐 이러한 내용이 처음부터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대회 이후 당의 지도체제가 김정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⁵⁾ 김정일은 1981년 5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묘향산지구 개발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건설현장을 '실무지도' 형식으로

5) 김정일의 등장과정과 후계체제의 전개에 대해서는 Chong-Sik Lee,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Asian Survey*, Vol. XXII, No.5(May 1982), pp. 434-448; Yo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Implication for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Asian Survey*, Vol. XXVI, No.10(October 1986), pp.1092-1117.

시찰, 각종 지시를 하달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80년대 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84) 등을 주도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외업무와 대내업무를 나누어 업무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돌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후계자 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⁶⁾ 라고 언급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군부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정·군 등 주요분야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6)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년감 1987』,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2) 김정일체제의 출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유훈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김일성 사망에 따른 과도기간 동안 군부를 중심축으로 후계정권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 군의 저변을 장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부 지도층의 권력서열을 대폭 상승시켰다. 또한 체제의 정당성을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둬 따라 김일성의 시신을 미이라화하여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하는 한편, 김일성 영생탑을 건설하고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97. 7)하였다.

김일성 사후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는데 이어,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국가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먼저 헌법개정(8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김일성을 칭송하는 「서문」을 신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규정하고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주석’,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추켜세움으로써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의 혁명유업을 계승하는 후계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김일성이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칭송됨에 따라 구헌법상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였으며, 당·정을 포괄하여 명목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하였다. 반면,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최고기관인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비록 개정헌법이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제102조)하고 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추대사를 보면,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어 있다.

셋째, 국가권력을 형식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김정일체제 출범에 따른 동치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1차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인 조약의 비준·폐기권, 외교사절의 임면권, 신임장 접수권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토록 하였다. 또한 정부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종래의 「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이었던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권한을 추가하였다. 특히 정부원의 「부(部)」를 「성(省)」으로 개칭하면서 37개 부서를 31개 부서로 조정하였고, 부총리 10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경제관련 유사분야를 통폐합하여 32개 부서를 23개 부서로 조정, 외형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넷째, 구헌법상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당·정합의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기관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토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경제여건이 변화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일부 수용하여 ①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② 개인 소유 범위 확대 ③ 특허권 보장 ④ 국가이외에 사회협동단체도 대외 무역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 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장려 ⑥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거주·여행의 자유권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변화된 경제상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북한이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헌법개정을 토대로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은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당·군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되,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경제문제는 내각이 전담토록 하였다.

둘째, 국방위원장이 최고통치권자로 부각됨에 따라 군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출범과 동시에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 등 「강성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점⁷⁾ 이라든가, 국방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확

대된과 동시에 국방위원(조명복, 이을설, 김일철, 이용무)이 주석단 서열에 있어 당비서(게웅태, 전병호, 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하였고, 국방위원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도당 책임비서, 정치국 후보위원을 겸직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주로 군에 치중되어 있으며, 군을 통한 사회통제와 군사문화의 파급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애컨대 “총폭탄 정신”, “무적필승의 강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통해 “난공불락의 사회주의 조선”을 건설해 나가자는 등의 구호를 들 수 있다.

셋째, 김정일체제 출범을 계기로 김정일 측근들이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종욱·김영주·박성철 등 국가부주석들이 명예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된 반면, 내각의 31개 부서 중 21개 부서의 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687명중 64%인 443명이 새로운 인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김정일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정책노선이나 통치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7) 강성대국론은 “군대와 사상”으로 체제를 관리하고, 전사회의 군사회 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사상과 군대가 강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98.9.7 노동신문)는 북한측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등장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며 김일성주의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56년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했었다. 또한 주체사상도 북한의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에서 주체·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⁸⁾ 이 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원대

회에 참석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그 뒤 10여년 동안 김일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주체라는 용어가 북한의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다.⁹⁾

당시 북한의 주체노선은 체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었다. 북한 당국이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바로 잡자”라거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¹⁰⁾ 소위 주체사상의 4대원칙이 정식화된 것도 1955년 김일성이 최초로 주체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진행된 일이었다. 김일성은 1965년 4월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8)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와 다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은 1926년 김일성이 불과 14세의 나이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훗날 새로운 주체형의 당이 창건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1930년 18세로 만주 길림성 소재 장춘현 카운에서 열린 「공정 및 반제청년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55년 12월 28일에 그러한 모임도 없었거니와 그러한 연설도 없었다”면서 주체사상의 공식제기일자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이명영, 『통일의 조건』, 1989, 종로서적, pp. 70~86.)

9)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하면 1952~1964년 동안 기사 제목에 “주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는 총 4회, 연평균 0.3회에 불과하다. 기사의 게재 일자: 1956년 3월 26일 · 1956년 7월 21일 · 1958년 3월 23일 · 1964년 9월 2일이다. 게재 일자를 보면 당시 북한 사회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Seok-Hyang Kim,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Socio-Political Roots of Ideological Change,” Athens, Georgia: The University of Georgia, 1993.

10)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1965년 9월 30일 김철희가 쓴 “당 창건 20주년을 맞으며: 조선 혁명과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기사가 최초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에 해당한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것을 필두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했고 1966년에 이르러서야 외교에서의 자주¹¹⁾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정책지도 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¹²⁾ 그 후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를 함께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정권은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에도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는 “당(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라고 소위 「김일성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김일성이 처음 언급한 이래 무려

11) 주체사상의 4대원칙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제기했을 때부터 다음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1956년 1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언급하였고, 1년 뒤인 1957년 12월 5일 정치에서의 자주를 주장했는데 이때 정치란 북한내부의 정치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2년 1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다시 내세웠다. 그런데 1966년 당시 정치에서의 자주란 북한의 대외관계, 곧 외교에서의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중·소분쟁은 나날이 격화되는 상태였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비동맹운동이 활발하게 퍼져 나가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새삼 외교에서의 자주 노선을 내세우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각각 등장하던 정치노선을 주체사상의 4대원칙으로 정식화한 것은 196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재홍 외, 앞의 글, pp. 39~44.

12)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5년에 걸쳐 북한의 공식적 정치지도 이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1) 1955년 당시의 배경

그런데 김일성이 하필이면 1955년 12월을 기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맞서는 논리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1955년 당시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1953년 3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한 뒤 그때까지 소련이 이끌어가던 사회주의 세계에 혼란이 일어났다. 스탈린 사후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롯한 과오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했다. 흐루시초프는 개인독재를 버리고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때까지 소련중심의 '1국 사회주의'를 지양하고 개별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다양한 길(many ways to socialism)"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했고, 한편으로는 대미(對美) 화해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 스탈린의 사후 일어난 소련의 변화는 절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숭배

하는 인물이었고,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도발할 때까지 김일성이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후원해 준 인물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스탈린의 소련 통치방식을 모방하는 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철저하게 반미제국주의 정책을 주장해 온 김일성의 입장에서 흐루시초프의 대미화해정책은 마치 사회주의 자체를 저버리는 것과 같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유로 김일성이 소련의 정치노선에 맞선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오히려 당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자체가 김일성이 소련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주체노선을 내세워야할 만큼 절박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1955년 12월 주체를 언급할 때 노골적으로 소련의 정치노선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다만 “맑스-레닌주의와 선진 당들의 투쟁 경험을 … 많이 배우고 섭취하되 …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 조선 인민의 투쟁을 잘 조직하고 추진시키기 위한 관점을 배워야 한다”¹³⁾는 주장을 펼쳤을 뿐이다. 그래도 김일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소위 ‘주체’ 노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혁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쳐 자칫 김일성의 정치적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소련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1인독제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북한이

13) 「로동신문」, 1956년 3월 26일,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바로 잡자”.

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산하의 여러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공업 우선정책 대신 소비재 생산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¹⁴⁾ 이와 같은 흐루시초프의 입장이 북한내부의 반 김일성 세력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당국은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해 3개년 계획('54-56년)을 발표했다. 1953년 8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채택했다. 김일성은 중공업을 발전시키면 자연히 전반적인 경제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북한의 총투자 배분현황을 보면 73.1%를 생산분야에 투자했다.¹⁵⁾ 이와 같은 집중투자의 결과 북한은 1956년 3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 석탄·전기·강철·화학비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부문도 확대되어 갔다. 1953년 45.6%에 불과하던 사회주의 경제부문이 1956년 3개년 계획이 끝났을 때에는 81.8%로 증가했다.¹⁶⁾

문제는 김일성의 정책노선에 대해 지도층 내부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이었다.¹⁷⁾ 중공업 우선정책에 대한 저항은 소비재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희생시키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비롯되

14) 방찬영, 앞의 글, p.161.

15) 방찬영, 앞의 글, pp.152~153.

16) 방찬영, 앞의 글, p.154.

17)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1988, pp.122~123.

었다. 당시 북한의 사회상을 요약해 보면 경제발전의 결과 각 분야별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공업 중흥을 목표로 산업 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¹⁸⁾ 이런 상황에서 최창익을 중심으로 연안파의 몇몇 인물과 소련계 박창옥이 김일성의 해외방문기간 동안 소련식 집단적 지도체제를 수립할 것을 모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¹⁹⁾ 특히 최창익은 김일성이 중공업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노선을 “반 인민적”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소련의 흐루시초프와 연대를 맺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 결과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어 갔고 경제협력의 범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1955년 12월 당의 이념적 과업을 추진할 때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자는 주장을 펴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새로운 정치적 목표로 ‘주체’를 세우자고 주장하면서 박창옥·박영빈 등 지도적인 소련계 한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인민학교 벽에 푸쉬킨의 초상화를 걸어 둔 일이나 당 기관지의 편집인이 프라우다지의 머릿 기사를 재편집해서 실는 행위 등은 주체를

18) 1956년 12월 강철생산을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해 강선제강소를 방문한 김일성은 그 곳에서 천리마운동을 벌였다. 천리마운동의 첫번째 구호는 “최대의 절약과 최대의 생산”이었다. 김일성이 천리마운동의 기수로 내세웠던 “새로운 공산주의자”란 결국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대가만 주어진다면 불만없이 초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서대숙, 앞의 책, pp.141-143.

19) 1956년 6월 1일-7월 19일 동안 김일성은 대표단 10명을 인솔하고 동구권 9개국을 방문해 경제원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 직후 일어난 8월중파사건은 김일성의 정치역정에서 최대의 위기로 기록된다.

잃어버린 일로 규정되어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²⁰⁾ 김일성은 '주체'라는 기치를 내세워 당시 북한에 있던 소련계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 갔다.

(2) 1965년 당시의 배경

1955년 12월 이후 이른 바 주체노선은 김일성 정치논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58년 3월 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을 위하여"라는 기사를 보면 김일성이 "반혁명세력"을 분쇄할 때 공식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그들이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체노선을 강력하게 추구했다고 해서 그 당시 북한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1965년을 전후해서 김일성이 주체라는 용어를 주체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5년 이전에 주체·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구조화된 담론으로 떠오른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1965년 들어 갑자기 노동신문은 총 6회에 걸쳐 기사 제목에 '주체'라는 용어를 게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6회의 기사 중에서 북한 내부의 현황을 소개하는 글은 단 한 차례 게재되었다는 사실이다. 9월 30일 "당 창건 20주년을 맞으며:

20) 서대숙, 앞의 글, pp.125~126.

조선 혁명과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였다. 나머지 5회의 기사는 예외없이 당시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던 민족주체성 투쟁 상황을 소개해 놓았다.

1965년 당시 남한에서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계속 일어났었다. 그 와중에 한일 양국은 2월 22일 국교정상화 조약 초안에 가조인을 했고 6월 22일에 정식 조인을 했다. 남한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할 때 내세웠던 논리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²¹⁾ 1965년 한일회담의 진행 상황이나 한일 국교정상화 등은 김일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김일성의 이름과 민족주체성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키는데 이용되었다.

3.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주체사상을 분석·이해하려면 주체사상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명제로 구성된 사상체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5년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과 사상체계가 북한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한 결과 나타난 산물이 오늘의 주체사상이다.

21)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조인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 6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체성 확립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주체사상의 내용은 시대별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1950년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김일성은 기회있을 때마다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했다. 또한 당시 노동신문도 주체란 공산주의의 지도이념인 맑스-레닌주의나 소련·중국의 선진적 경험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따르되 북한의 현실에 맞게 소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1965년에는 주체사상이 “남조선 위정자들의 외세의존 사상”에 대치되는 반대명제(안티테제-Antitheses)로 변모한다. 이어 1967년에 들어 노동신문은 조국통일이 민족주체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운다.²²⁾ 노동신문은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와 남한내 사대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다가 차츰 김일성의 이름과 주체사상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정치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수령’이라는 호칭으로 김일성을 거명하면서 조심스럽게 연결하곤 하던 “김일성 수령께서 교시하신 주체사상”이 “김일성 수령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되었다가, “김일성 수령의 주체사상”으로 변모해 갔다. 물론

22) 북한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제1차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이 196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3년 연장하여 1970년에 끝내기로 했다는 점은 당시의 경제상황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김일성은 1961년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북한주민들이 “이팝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저히 절약하는 태도를 몸에 배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노동신문의 주장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주체사상은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으며,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를 주체사상의 터전 위에서 전개해 나갔다. 한편 북한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부르짖으며 주민생활의 각 부문에 주체적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주체적 생활방식이란 결국 김일성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은 김정일 우상화에 기여하는 절대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시 북한당국은 주체위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주체위업은 대를 이어 지속해 나가야 하며 주체혈통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완성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이였다. 또한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이 ‘주체적인 혁명리론’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 역설하였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한 반면 김정일은 탁월한 ‘이론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실제

로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비서국 비서·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인물로 선출되어 정치 전면에 나선 이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였다.²³⁾

1980년대 말엽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동구권에 이어 소련마저 붕괴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차별성·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해 버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을 참다운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참답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든데다 1990년대 들어 아예 총체적 파탄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소위 “붉은기 사상”을 정식화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당국이 설명하는 붉은기 사상의 내용은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김정일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북한 당국의 구태의연

23) 1997년 4월 한국에 온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1974년부터 북한의 정치와 군사·외교적 실무를 지도해 온 인물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먼저 김정일의 손을 거쳤다고 했다. 다만 이런 실정이 북한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황장엽씨 국회 정보위 간담회 증언, 1997. 11.

한 논리였을 뿐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이 우리식 사회주의·붉은기 사상 등으로 주체사상의 내용과 폭을 확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는 북한 사회가 총체적 변혁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당국은 체제유지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 때문에 끊임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내세워 주민들의 인내심과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사후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총진군」,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1998년 9월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개막되었으나, 여전히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 원리로서 헌법에까지 규정하고 있다.

4. 주체사상 비판

주체사상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비판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이는 주체사상이 결과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북한사회를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세습형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왔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북한주민 개개인이 굶주리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심각한 논리적 취약성과 함께 현실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은 1950년대 당시

김일성이 주체 확립의 의미를 설명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맑스-레닌주의와 선진당들의 경험을 배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되 제대로 소화해서 '조선혁명'의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 결성과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일이 어떻게 모순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북한 정권이 풀어야 할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다.²⁴⁾

1960년대 들어 남한에서 전개되던 민족주체성 논의에 힘입어 북한주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우상화라는 왜곡된 목적에 동원되면서 논리적 취약성이 구조화되었다. 1970년 이후 북한당국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므로 주체성을 갖고 주인다운 태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령론을 내세워 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되려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4) 김정일은 1997년 6월 19일 발표한 논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참다운 국제주의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위업은 민족적 위업이며 동시에 국제적 위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위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인류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선행이론은 민족의 형성을 자본주의의 발생과 결부시켰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민족 자체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예견”했으나 그 민족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서 우선적으로 몰락시켜야 할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날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일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벌어나가는 시대이므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라고 주장함으로써 선행이론과 주체사상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인민대중들의 ‘주인다운 태도’를 완전 배척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책임과 의무만 지닌 채 열심히 노동하되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면서도 아무런 요구나 불평이 없는 인민대중과 권위와 권리를 누리는 수령이라는 존재가 공존하는 기묘한 대칭구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처럼 불균형적인 대칭구조를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숨은 영웅’이라든가 ‘참다운 공산주의자’ 등과 같은 실천적 개념과 선동적 구호를 끊임없이 내세웠다.

198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없이 권력의 부자세습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부자세습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를 이어 주체위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 주민들을 부단히 설득했었다. 그런데 이 설득 자체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이 무렵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개념을 소개한다든가 “대를 이어 충성해야 주체위업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던 점 등에서 북한당국이 이 문제로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난다.

1990년 이후 북한당국 최대의 고민은 그토록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유를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북한 당국이 서둘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노동신문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다고 자랑했던 ‘형제나라’들이 줄줄이 무너

지는 반면, 총체적 부패의 길을 걷는다던 자본주의 나라들이 건재하는 모습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경제상황은 북한당국의 설명을 더욱 옹색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주체사상의 내용을 시대별로 살펴 보면 그 논리적 취약성이 기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정치적 의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 사상체계를 바꾸어 나가느라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논리적 허구성과 모순점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황장엽 노동당 사상담당 비서가 1997년 4월 우리나라로 귀순한 이후 여러차례의 증언 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비판하면서 더욱 명백해졌다.

제3절 권력구조와 기능

1. 권력체계의 특징

(1)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북한은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²⁵⁾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25) 이상민·고성준 외,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1992, p. 125.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고 지적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군·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²⁶⁾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²⁷⁾ 이에 따라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원리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김일성의 혁명적 후계자인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2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27)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 중심체제이다.

(2)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① 최고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②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사업을 보고하며 ③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하며 ④ 각 기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라는 두 개념의 결합체라고 하겠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국가기관들을 조직하고 운영할 때 주권자인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체제를 의미한다.²⁹⁾

28) 국동문제연구소편, 『세계공산권총람』, 1972, p. 619.

29)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은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컨대 공산국가에서 국가기관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란 지도기관의 선거 절차에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실질적 국가지도자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과 당총비서의 직책을 가지고 국정전반과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1인 독재체제를 미화시키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동당은 계급적 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수령의 당이라고 하겠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외견상 집권당인 노동당 뿐만 아니라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과 같은 우당(友黨)이 있으나 여러 정당 가운데 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집권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노동당에 의한 집단주의 독재체제이다. 나아가서 노동당은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전당(全黨)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전체의 통치구조 차원에서 보면 노동당은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급기관이지만, 당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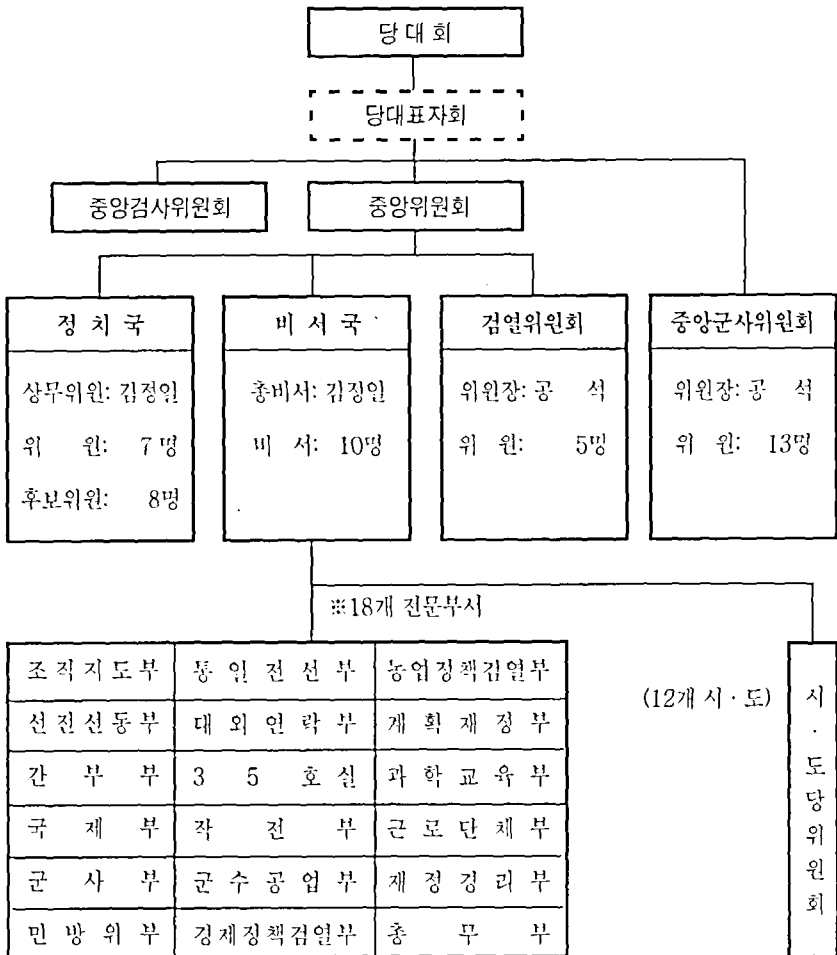
(2)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는 상급 당조직에 의해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에서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우선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조선노동당 조직체계
(’98. 12. 31 현재)



※자료: 통일부, 『북한 권력기구도』, 1998. 12.

당적 지도는 북한사회의 전 부문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은 물론 근로단체, 일반공장, 기업소 농장도 그 당적 지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당의 기구로서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특히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과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핵심부서이다.

이러한 당조직 체계를 볼 때, 김정일은 정치국과 비서국을 통해 노동당을 지도·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당조직은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 각급 당대표회와 당위원회가 있고 1급과 2급의 공장·기업소에는 공장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 당위원회 밑에는 초급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위원회 밑에는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당위원회, 당세포가 있다. 당의 최하기층 당조직은 당세포이다. 초급당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두며,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즉 당중앙위원회 내에 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로 통칭)를 조직하고 있으며, 군대내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하도록 당규약에 규정³¹⁾되어 있으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명목상 협의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한 군대내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연대급 부대의 경우 '정치부연대장'이 있고 당에서 직접 파견한 '정치위원'이 있다. 앞의 두 직책은 당일꾼이지만 뒤의 '정치위원'은 당의 대표역할을 한다. 만일 연대장이 당노선에 어긋나는 계획과 명령을 할 때 정치위원은 제동을 걸어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

30)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5

31) 조선노동당규약 제27조

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구「사로청」)이 있다. 청년동맹의 조직은 당조직지도부에서 지도한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위기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당·군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당·행정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군의 건설현장을 방문케 하고 군지휘관은 방문한 이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

(4) 외곽단체

북한의 ‘김일성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 바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

단체와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 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 조직들이다.

3.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기능이다.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제도 북한이 「김일성헌법」이라고 표명한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은 1948년 9월 북한이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후 8번째이지만, 이번 헌법은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등 일부 중앙기관들을 폐지하고 당·정·군에 포진한 김일성시대의 원로층을 퇴진시킨 뒤 이들이 물려난 자리에 김정일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장악 및 1인 지배체제의 확고한 틀을 마련했다.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서문의 명문화 ②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지방행정경제위원회 등 4개 기관 폐지 ③ 국방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확대 ④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및 성(省)의 부활 ⑤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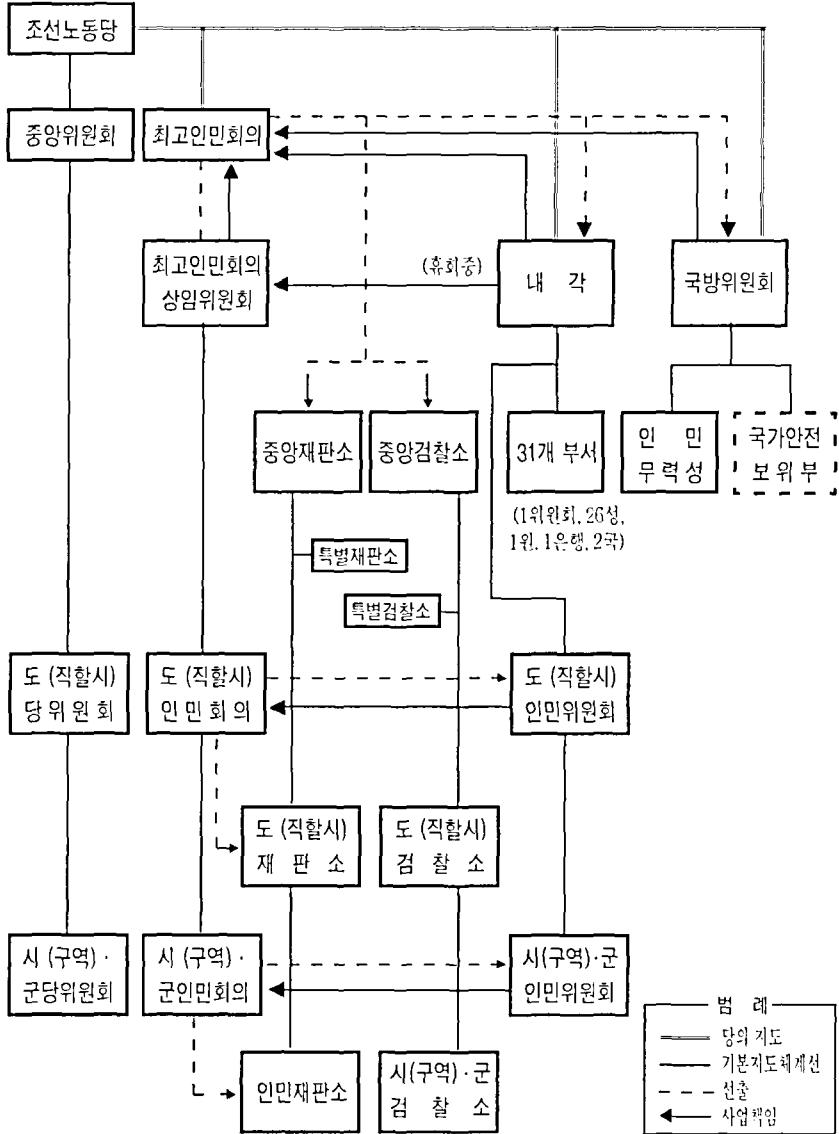
특히 북한은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가대표권을 분산하여 내각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특사권 행사,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 김일성이 당총비서,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장, 군최고사령관 등을 독점했던 것에 비교하면, 당총비서·국방위원장·군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이 권력장악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구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제111조)이었던 국방위원회를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표 2-2>

권 력 체 계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격상시켰으며, 「유사시 전시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제114조)는 권한을 「나라의 전시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제103조)고 규정함으로써 ‘전시동원령’ 선포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채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헌법 자체의 국가권력 분산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을 통치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1)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씩 선출되었으나, 1992년 개정선거법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정한다”(제7조)고 바뀌었다. 또한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복수후보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당 1명씩 가부(可否)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 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제12조)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헌법의 수정·보충과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는 주요 정권기관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를 선거·소환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위원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의 선거·소환,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의 내각성원의 임명,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을 선거·소환한다.

그 밖에도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해 심의·승인하며,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

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나 동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체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중 통일·외교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치된 통일정책위원회('90. 5)와 외교위원회('90. 11)는 이번 체제개편을 통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문위원회는 수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이는 대남·통일업무가 당으로 이관되고, 외교업무는 내각으로 이관된데 따른 조치라 하겠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질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또는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나, 사실상 민주화나 의회주의로

전환한다는 의미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의 지도와 노동당의 감독·조정을 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력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회의도 1년에 1~2회 열리며 회기가 2~3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정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와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가 있으며, 원로인사중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구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①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 법안과 법령의 심의·체택 ②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③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및 대책 수립 ⑤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
 정지 조치 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
 업 ⑦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실시 및 최고인민회의의 상임
 위원회, 부문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⑧ 내각의 위원회·
 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 ⑨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 ⑩ 중앙재판
 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하는데, ① 조약의 비준·폐지 ②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③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수여 ④ 대사권
 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조
 직·지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
 환장을 접수한다.

이밖에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자체의 정령과 결정·지시
 를 내리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최고인
 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대외관계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은 개정헌법의
 특징인 국가권력의 분산구조에 따른 조치이기는 하나, 김정일이 외
 국인사 면담 등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 ②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 ③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 ④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 폐지

지방인민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회의의 소집과 회의성립·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와 비슷하다.

(2) 국방위원회

1992년에 개정된 구헌법의 특징은 ‘김정일을 위한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

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군사정책 수행의 일원화 및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구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었을 뿐만아니라 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토록 함으로써 당시 동 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취임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통해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1998년 9월에 개정된 '김일성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②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③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④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 구헌법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재추대 기념연설을 볼 때 김정일이 국방사업과 함께 정치·경제 등 국정전반을 지도·감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주석단 서열이 당비서보다 앞서며, 주요 당·정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현재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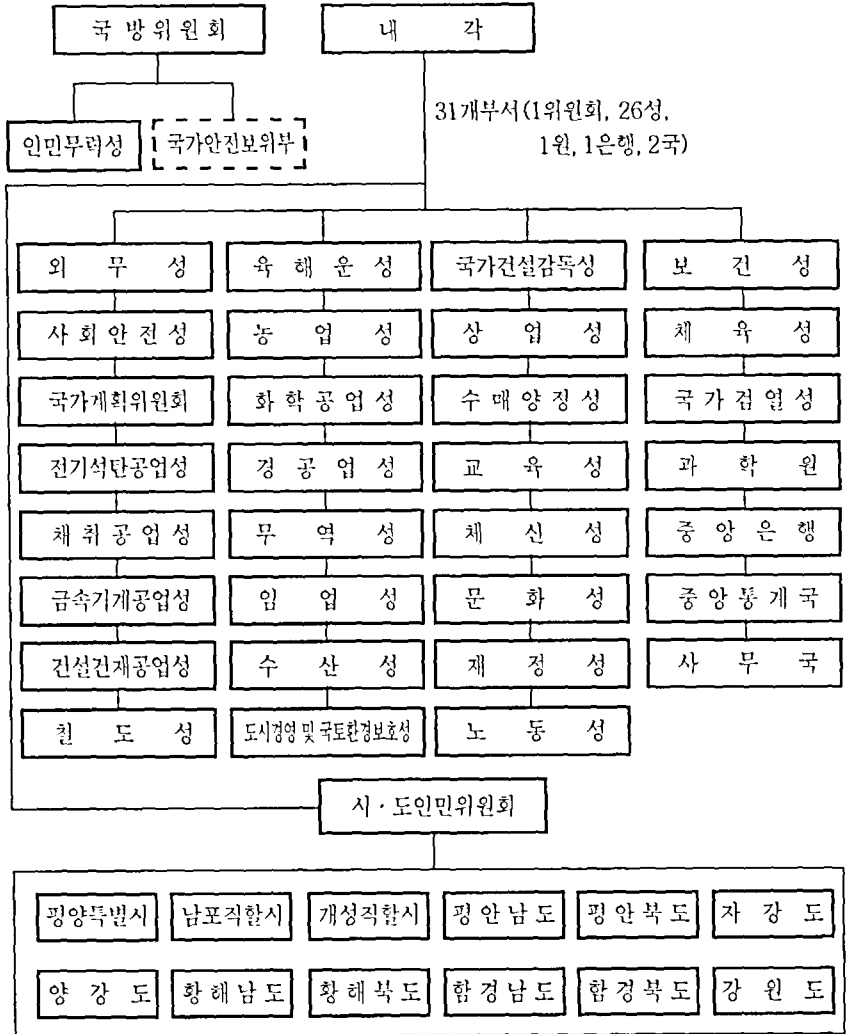
1) 내각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사업집행을 위하여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사업에 관해 세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내각은 ① 국가정책의 집행대책 수립과 국가관리관련 규정의 제정·수정, 보충 ②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폐지 및 사업지도, 국가관리기구 개선대책 수립 ③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실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④ 공업·농업·건설·운수·채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과 그밖의 여러부문

<표 2-3>

행정 기관
(98. 12. 31)



의 사업에 관한 조직·집행 ⑤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⑥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⑦ 사회 질서의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⑧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⑨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현재 북한의 내각은 1위원회, 26성, 1원, 1은행, 2국 등 31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아울러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밖에 내각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가지며, 새로 선출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부총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헌법상 규정은 없으나, 부총리는 1개분야 이상의 업무를 관할하면서 수개의 성을 통한·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조정작용을 통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관리기관이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지도·관리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성 회의와 간부회를 운영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구헌법에서는 1985년에 개편된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구헌법상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지방의 간부들로 구성되는 '당·정합의기관'이었으며, 그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헌법이 지방주권기관과 행정적 집행기관을 통합한 것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조치라 하겠다.

특히 과거 지방당책임비서가 겸직하던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함으로써 지방당은 정치, 지방인민위원회는 집행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당의 직접적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지방행정체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겠다.

또한 구헌법 하에서는 정무원이 지방인민위원회나 행정경제위원회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내각이 지방인민위원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이 특징적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지방인민위원회는 ① 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 ②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 집행 ③ 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집행 ④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 ⑤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⑥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국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⑦ 해당 지방의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통제사업 실시 ⑧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및 하급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지시의 폐지 및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이처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상급행정기관에 복종하고 사업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사실상 이중적 종속에 놓여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 중에는 1960년대부터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 지방행정기관과 달리 단독종속제 기구조직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사실상 상설) 지방주권기관으로 해당 지

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중중속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없다.³²⁾

(4) 사법 · 검찰기관

북한에서도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하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며,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등 외형상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그 내용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는데 이와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소환한다.

32) 신영호, “북한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pp. 169~170.

①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91조, 제110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헌법 제161조).

중앙재판소의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한다. 나아가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이를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심급제도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하급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지도록 규정해 놓았다.(헌법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제1심 형사 또는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도(직할시)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과 중앙재판소 이외의 각 재판소의 확정 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리하며,³³⁾ 상소·항의사건이나 비상상소사건을 심리

하는 경우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된다(재판소구성법 제36조, 제37조).

② 도(직할시) 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³³⁾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과 같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관할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직할시)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직할시)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사업상의 지도와 사업정책상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에서는 중앙재판소의 경우와

33)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재판소구성법 제37조).

34)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마찬가지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심리한다.³⁵⁾

③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사건 포함)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제1심 재판을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④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

35) 법무부, 『북한 연구(III)-형사소송법』, 1993, p. 36.

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중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헌법 제155조). 특별재판소를 제외한 각급 재판소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동일하나 특별재판소만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특색이 있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에서 심리하며, 이 경우 인민참심원의 참여는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제2심이자 최종심인 재판을 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 검찰소가 지니는 특유한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³⁶⁾와 공소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이른 바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검찰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중앙검찰소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이른 바 '사회주의 준법정신'의 유일성을 확립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헌법 제151조, 제152조).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의 체제에 대응하여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36) 북한에서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직접 참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등 직접 수사를 행하는 수사참여적인 역할보다는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1992, pp. 85-86.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전국에 걸쳐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³⁷⁾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실무부서가 있다. 일반감시부는 행정기관, 생산기관 등에 대해 국가계획의 실천여부와 사업실적, 운영방법, 인사관리, 재정관리 등을 검열한다. 예심감시부는 내부기관에 출장하여,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예심업무에 대한 감시 및 지휘와 각급 검찰소 예심감시부의 형사·민사·행정재판에 관여한다. 그리고 간부부, 행정경리부, 기요부(機要部) 등의 행정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헌법 제91조 11항), 각급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49조). 최고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후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동법 제152조).

도(직할시)검찰소에는 자체 소속기관으로 일반감시부, 재판감시

37) 북한의 각급 검찰소는 '초급당'조직을 갖고 있는데 '초급당'을 통하여 각종 지시, 정책노선을 각급 검찰소에 하달하고 각급 검찰소의 구성원들은 당의 지령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들 구성원은 당적을 가져야 하며, 검사들도 의무적으로 각종 당대회, 학습회, 역사연구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

부, 특별감시부가 있고, 그 밖에 기요과와 경리과가 있다. 시(구역)·군검찰소는 각 시(구역)·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와 서기를 둔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규정상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당사자 지위를 보충하는 우리의 변호사 제도와 비슷하나, 실제로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찰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제정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제도를 규율해 왔으나,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³⁸⁾을 채택하고, 1994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변호사 단체는 당이나 국가기관이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통제·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 단체의 법적 성질이나 국가기관과의 형식

38) 북한의 '변호사법'은 5장 3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변호사 자격, 제4장 변호사 보수, 제5장 변호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 독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 산하의 하부기관 또는 사업단위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고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한 개별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 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 전의 북조선변호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무기관인 각급 변호사위원회간의 연락을 긴밀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77. 12)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관료주의에 반대한다는 과제를 제기한 이후의 일이다. 이때까지 사회주의법무생활 개념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나,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지방의 말단주권기관까지 설치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이 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기명논문을 발표('82. 12. 15)하면서 그 실체를 확립하기에 이른다. 그 후 1992년 사회주의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18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

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명문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이로써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의 자발적인 규율생활을 강조하는 측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 의미에 있어 사회주의준법성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사회주의준법성과 별도로 이와 비슷한 개념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들고 나온 것은 처음에는 국가기관의 복무원 사이에 팽배해진 관료주의, 법위반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었으나, 결국 주체사상과 이에 이어지는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주민통제수단 내지 통제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77년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앙주권기관에서부터 말단 지방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이 설치되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중앙권력기관과 각 도(직할시)·시·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의 협의체로 조직되어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주로 국가·경제기관의 간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고 사회 전체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등의 감독통제기관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집행상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국가법 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여러 종류의 제재를 가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한다. 말하자면 법의 준수상황에 대한 검열을 통하여 밝혀낸 각종 사

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의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소나 검찰소 등의 다른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국토통일원 20년사), 1989.
- 구종서 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삼성경제연구소, 1996.
- 김학준, 『한국문화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1126호('98. 9. 10).
-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1995.
- 도홍련, 『김일성 주체사상, 그 사실적 검증』, 남북문제연구소, 1993.
- 방찬영,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영사, 1995.
- 백인학, 『주체사상과 북한정치체계의 변화가능성』, 북한연구, 1992.
-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연구』, 나남출판, 1993.
-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 이용필 · 양성철, 『북한체제 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1996.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최성, "수령체계의 구조적 작동메카니즘과 특징적 성격,"
『통일문제연구』, 6권 1호.
- 통일원, 『북한개요』, 1995.
- 통일연수원, 『북한실상 이해』, 1996.

Ⅲ. 북한의 대외관계

제1절	87
대외환경의 변화	
제2절	91
북한의 대외정책	
제3절	124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요 점

-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따라 이념외교와 함께 대외개방외교, 생존외교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일관된 목표는 체제수호를 도모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에 있다.
 - 북한은 대외정책 원칙으로 '자주·평화·친선'을 들고 있는데 소련 및 동구공산권 붕괴 이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개방압력을 거부하고 있다.
 - 북한외교의 특징은 이른바 '자주성'과 '혁명성', '정치이데올로기적 목표와 경제실리적 목표간의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의 대외정책에서도 혼재하여 나타난다. 최근에 들어 북한외교의 방향이 '공세적 혁명외교'에서 '체제수호외교'로 변화되었으며 그런 중에서도 국제화의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제1절 대외환경의 변화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소련의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 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평양선언'('92. 4. 8)을 발표하여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정당간의 연대성 강화로 대응하였으나,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해체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1993년부터 국제적 핵사찰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 대해서는 대미·대일 관계개선의 모색을 통해,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자주성의 원칙에 의거, 사

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빨럭불가담 나라들과의 단결을 적극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주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했다. 이러한 점은 김일성사후 1998년 당보·군보 공동사설 대외 부문에서도 「반제연대성」의 강화와 대외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원칙론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북한의 지역별 외교관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사회주의진영의 관계는 연대성 강화전략의 지속적 추진¹⁾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진영 자체의 축소 때문에 약화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경제협력국가인 중국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소 수교로 소원했던 러시아와도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다시 모색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은 과거에 비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빨럭불가담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지속적 개혁·개방에 따라 잔여 사회주의 진영이 동요하자, 비동맹관계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김영남(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비동맹국조정위 각료급회의('98. 5. 콜롬비아)에 참석하여 비동맹국가들이 비동맹운동의 이념에 충실할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대성을 적극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1)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쿠비의 카스트로 수상과 수교축전을 교환하였다. 「로동신문」, 1995. 8. 25;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 사망 1주기 추도전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양국간의 우의를 과시하였다. 「로동신문」, 1995. 7. 8

그리고 1999년 신년사를 대체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지난날과 같이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이념을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가되, “반제 자주의 가치를 높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했었다.

셋째, 북한의 대미·일 및 대서방관계 개선은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과거의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보완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의혹 문제에 직면하여 대미 정부 간 직접협상을 유도하고, 대미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테러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5년 1월 이래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북한은 대미교역상의 최혜국 대우나 특혜관세는 물론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및 식량지원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도 미·북관계가 느린 속도지만 진전이 있었다. 미항공기의 북한 정보구역 통과허용, 「카길사」의 대북 곡물구상무역 허가, 미군 유해 송환, 미 잉여농산물 30만톤 지원, 미사일개발 및 수출관련협상 3차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북관계 개선은 순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양국간 수교교섭 회담은 제8차 회담('92. 11) 이후 약 2년 이상 재개되지 못하다가 1995년 3월 노동당 대표단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등 연립 3여당 대표단이 ‘수교회담 재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북·일관계는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에 들어 일본

인처 두차례에 걸쳐 27명의 고향방문('97. 11, '98. 2)과 연립 3여당의 방북 등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인 납치의혹문제로 다시 난관이 조성되었으며 지난 '광명성 1호' 발사('98. 8)로 인해 더욱 냉각되어 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글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여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미·북관계의 현주소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의 발화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개입 및 확대전략과 미국을 통해 현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는 북한의 대미 접근전략간에 이해가 접근된 결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해결하고 김정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응적 대외정책을 모색할 것이며, 그 핵심은 미국과 관계개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기초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주변4국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초

(1) 대외정책 목표

한 나라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과거 냉전기 북한의 외교목표는 당규약²⁾과 구 사회주의 헌법³⁾에

-
- 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북한 제7차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5조).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이다.⁴⁾ 이와 같이 냉전시기의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데 대외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등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⁵⁾ 한편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외 정책의 주요과업임을 주장하였다.⁶⁾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는 북한의 외교목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제7차 개정헌법 제4조)를 제8차 개정헌법('98. 9. 5)에서 삭제함으로써 더이상 맑스-레닌주의가 북한

4)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당규약 전문). “국기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북한 제7차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16조)

5) 이 노선은 1964년 4월 2일 김일성 연설(‘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나고, 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연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논리적으로 완성되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94, p. 239

6)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4집, 1989, p. 797

의 활동지침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제7차 개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국가의 투쟁목표를 제8차 개정헌법 제9조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8차 개정헌법 제17조에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과 해방의 투쟁노선을 완화시킨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외교노선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⁷⁾ 그렇지만 아직 북한이 외교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북한은 김정일 총비서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와 관계복원에 힘쓰며, 대남 관계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북한은 현재 ‘혁명목표’에 근거한 종전의 외교정책을 ‘실용적 국가(정권) 이익’에 근거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송원호는 제4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유엔성원국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동신문』, 1993. 10. 8.

첫째, 북한은 혁명외교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실리외교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걸속을 위해, “남조선 혁명 및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라는 수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나, 대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강하게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남한과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해 그 동안 주장해오던 ‘하나의 조선’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바, 북한으로서는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기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북한은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외교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점차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에서 대외개방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동안 남한과의 경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연대성 확보를 목표로 전개해 온 아프리카 중시 외교정책을 체제유지 및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실리확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이른바 ‘해방외교’에서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호외교’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하나의 조선’ 정책 추진과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조선 해방’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조선’ 정책의 포기과 3대혁명역량의 약화에 직면하여 북한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대내적 정당화를 통한 체제 걸속을 위해 상대적 정통성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북한은 전면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은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불리하나, 제한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은 유리한 바, 이를 위한 제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은 진영외교를 단기적으로는 비동맹(빨리불가담) 외교로, 장기적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외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수교로 북방삼각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요되었고,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북한도 더 이상 사회주의 진영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선언 채택 및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강화 의지 천명, '남남협력' 강조 등에서 보듯이, 비동맹외교를 단기적으로 채택하되, 경제난 타결 및 동맹관계의 재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대서방외교도 추진해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는 개방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은 냉전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도대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주외교'를 전개해 왔으나, 중·소 화해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자 유인외교(誘引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유지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남 혁명노선과 대미·일 반제국주의 투쟁노선의 포기를 요청받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 경제난 해결, 대외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대미·일 수교교섭 강화, 대중 동맹관계 지속, 대남교류·협력 모색 등 3궤도정책(Three-Track Policy)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결

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와의 투쟁’ 슬로건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대남 적개심 강화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의 투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며 일본이 대북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북한은 대중·러 견인경쟁 유발외교로부터 대5국(미·일·중·러·한국) 유인외교로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외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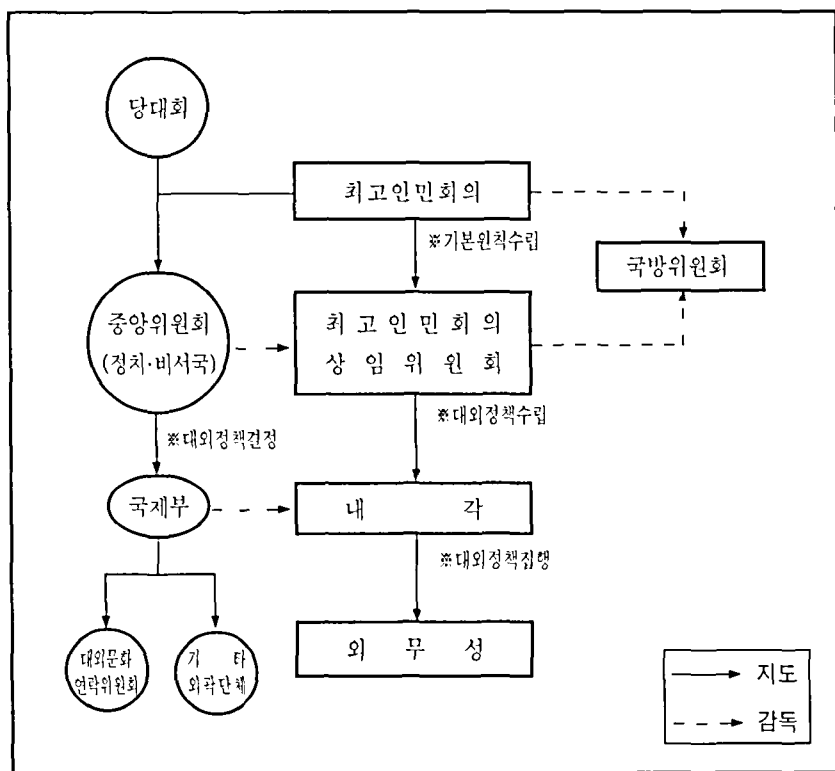
1) 대외정책 결정과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 중심의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감독한다. 물론, 외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하며(헌법 제110조 14항), 내각은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헌법 제119조 1항), 또한 내각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헌법 제119조 1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책을 당에서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해당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구체화되며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국방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내각을 통하여 집행된다.

<표 3-1>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



※자료: 북한 사회주의헌법('98. 9. 5) 노동당규약('80. 10. 13)

2) 집행기구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주요기관들로는 당 국제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외무성과 각급기관의 산하기구 및 단체들이 있다.

① 당 국제부

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는 다른 나라, 특히 미수교국가의 정당들과 당대당(黨對黨)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당 국제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정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민간인이나 단체차원의 교류를 위해 당의 각종 외곽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도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활동을 전개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친선의회구루빠위원회'를 조직하여 IPU(국제의원연맹) 등 국제의원단체들은 물론 각국의 의회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친선·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하거나 반한 및 친북 선

전환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외무성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수립, 조약 및 협정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교업무외에도 통상 및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북한의 외무상 백남순은 박헌영, 남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에 이어 여섯번째로 그 지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통상 5년 내지 1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외무성은 10개의 지역 담당국과 함께 15개의 기능별 담당국이 있는 등 그 조직이 방대하다. 1990년대에는 대미·대일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아프리카지역 등의 외교적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확대하고, 아프리카 관련조직을 축소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재배치했다.

④ 당의 외곽단체

북한은 민간개별접촉 및 대외선전활동을 위해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 국가별친선협회, 각종 연대성 위원회 등을 당의 외곽조직으로 두고 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등 이른 바

인민외교 차원에서 관련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방북 초청사업을 수행한다.

2. 대외정책의 전개

(1) 대외관계 변천과정

북한은 정권형성 이후 지금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 자주화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이른 바 국제혁명투쟁 및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외교활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변형하여 왔는데 대체로 진영외교기와 다변외교기, 실리추구외교기, 대서방외교 강화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진영외교기(48년 정권 수립~50년대 초)

북한의 대외관계는 분단 초기부터 소련의 영향력 안에서 시작되었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당시에는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다. 수교국 역시 소련, 중국, 동구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6·25전쟁의 도발로 UN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휴전협상과 관련한 외

교적 지원획득에 치중하였다.

2) 다변외교기(50년대 중반~60년대 말)

후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54~56년)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소 이념 분쟁을 이용, 등거리외교와 함께 신생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변외교를 전개했다.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인도네시아 '반동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되고, 당시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표방하자 북한도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⁸⁾ 북한은 1956년 4월 당 외곽 단체로 대외문화연락 위원회를 만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 북한은 기니('60. 6), 알제리('63. 4) 등과 수교하는 등 제3세계 비동맹 외교를 적극 강화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

8) 김일성은 총화보고서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p.12

카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첫째,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둘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셋째,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강조하였다.⁹⁾ 같은 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이다. 그러나 1962년 중·소간의 국경 충돌 등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다시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대소련 편향외교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중·소 등거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환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하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비동맹국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3) 실리외교 추구기(70년대)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다변외교를 확대하고 서방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등 실리외교로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북한의 실리외교는 1971년 11월 당중앙위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¹⁰⁾

9)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1968, pp. 195~196

10) 『조선중앙연감 1972』, pp. 269~270.

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실리외교 추진의 배경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UN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중국 관계개선과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6개년계획(’71~’76년)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6월 한국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¹¹⁾고 비난하면서도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 바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¹²⁾ 그리고 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제30차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1) 『로동신문』, 1974. 1. 26.

12)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하였다.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1988, pp. 857~859 참조

4) 대서방외교 강화기(80년대이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 단결강화는 물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3년 10월 비마 아웅산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¹³⁾

한편 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령들을 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미관계 정상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체제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타도대상으로 간

13) 「로동신문」, 1984. 1. 13.

주해 왔던 미국과 관계개선을 체제 유지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배상금 획득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일 수교는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2) 수교확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 공산권에서 개혁·개방이 확산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동구 각국들의 분할·독립 등으로 국가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북한의 수교국도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북한의 수교국은 111개국이었지만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1998년 12월 현재 수교국은 133개국

<표 3-2>

남북한 수교현황

(’98. 12 현재)

구 분	한 국	북 한	동 시 수 교
아 주	34 개국	19 개국	18 개국
미 주	34 개국	20 개국	19 개국
구 주	50 개국	36 개국	35 개국
중 동	14 개국	9 개국	8 개국
아 프 리 카	51 개국	49 개국	49 개국
합 계	183 개국	133 개국	129 개국

※자료: 외교통상부

<표 3-3>

남북한 상주공관 설치현황

()는 북한

('98. 12 현재)

지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2(13)	15(1)	1(1)	38(15)
미주	16(4)	13	1(2)	30(6)
구주	26(12)	2(1)	3(9)	31(22)
중동	12(3)	-	(2)	12(5)
아프리카	14(9)	-	-	14(9)
합계	90(41)	30(2)	5(14)	125(57)

※자료: 외교통상부

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재외공관은 1998년 12월 현재 상주대사관 41개, (총)영사관 2개, 대표부 14개 등 57개이다.

남북한의 재외공관 수를 비교해 보면 공관총수는 125:57로서 북한의 공관수는 한국의 절반 정도이다. 북한의 재외공관 설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재외국민¹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영사관(2개) 보다 상역업무나 정치·외교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부(14개)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대표부(5개)보다 영사관(30개)이 훨씬 더 많다.

북한의 재외공관을 지역별로 보면 상주대사관의 경우 아주(13개), 구주(12개), 아프리카(9개) 순으로서 비동맹외교에 비중을 많

14) 북한은 공민이라 한다.

이 두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 영사관이 아주(1)와 구주(1)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해외동포 가운데 북한국적의 교포가 아주지역에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다. 대표부는 프랑스, 독일¹⁵⁾ 등 구주지역(9개)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구주지역에 각종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3) 국제기구 진출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 극히 선별적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그들에게 개방압력이 되지 않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UN정책은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① UN간섭 거부기 ② UN상정 거부기 ③ 선별적 UN상정기 ④ 상정유보기 등 4단계로 변모해 오다가 1991년 UN가입으로 급선회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단일의식하의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은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로는 유엔을 비롯하여 유엔직속기구(4

15) 독일 통일 후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은 이익대표부 형태로 남게 되었다.

〈표 3-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98. 12 현재)

구 분	유엔 및 산하기구	유엔전문기구	유엔독립기구	정부간기구	합 계
한 국	5	16	3	68	92
북 한	4	11	0	11	26

※자료: 외교통상부

※남한은 북한가입 25개 기구에 모두 가입

개), 유엔전문기구(11개), 정부간기구(11개) 등 26개이며 한국의 92개에 비해 숫적으로 1/3도 못된다(표 3-4 참조).

정부간 기구를 제외하고 유엔기구 중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기구로서 유엔전문기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다. 북한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계급을 위한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이 허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

북한은 그동안 대미·일·중·러 관계를 공산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진영외교논리에 의해 전개해 왔다. 그러나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실리에 근거한 새로운 대4국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바, 정치·군사적 보장은 대미 핵

협상과 대중 동맹지속을 통해 확보하는 한편, 경제난은 대러 경제교류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외교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편이다.

(1) 대중관계

북한은 한·소수교('90. 9. 30) 이후 러시아를 맹비난했던 것과 달리, 한·중수교('92. 8. 24) 이후에는 적어도 공식적 차원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 공고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변경국인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관계는 이념적 유대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및 대내정책의 측면에서 중국은 혁명1세대의 퇴진에 따른 신권력구조 형성과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혁명1세대의 퇴진과 폐쇄정책 지속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로, 단기적으로 약간의 정책적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한 '변방외교'와 대남한 '실리외교'의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중 '전통적 친선관계'의 지속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특히 평양축전('95. 4. 28~4. 29) 기간 중 평양-타이베이간 전세기 운항 및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시 북한의 대만지지 입장, '로동신문' 북경 특파원에 대한 중국의 추방 결정, 장쩌민 주석의 방한('95. 11. 13~11. 17) 등이 북·중관계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대내 경제개혁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개혁·개방 지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양국간 경제부문에서의 마찰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청산계정 처리방식의 교역도 점차 위축될 것이므로, 양국 경제관계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 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최근의 양국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

으며, 수입은 37%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8년 상반기 양국간 무역실적을 감안할 때, 1998년 총 무역규모는 전년도의 6.5억 달러 수준을 상당히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에 대해 중국은 전통적·이데올로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양국관계의 긴장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 참가경험이 있는 현중국 군부의 고위직은 북한에 대한 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군인사교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현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에 지속되는 한, 북·중 동맹조약의 개정 및 폐기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4주년('95. 7. 11)을 맞아 쌍방간의 친선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장쩌민은 방한 직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중간 군사동맹조약을 파기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군함이 남포항에 입항하는 등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요컨대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조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신리

외교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러간의 대북 견인경쟁을 다시 유도하는 한편, 대미접근도 강화하여 현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경제적 실리를 확보해나갈 것이다.

(2) 대미관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 포기에 따라 중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4개 현대화 등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소련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물론 체제유지를 위해 석유, 석탄, 식량 등 최소한의 원조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북한은 구소련과 교역하던 물량을 중국과 교역확대로 대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특히 전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수교회담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게 되자, 북한은 일본의 대북정책 저의와 미국의 외교적 조정력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일본과 회담을 중단하고, 미국과 직접교섭에 적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¹⁶⁾

북한이 대미접근을 시도한 단기적 의도는 현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고, 장기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

16) 김일성은 워싱턴 타임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 4. 12.

미 동맹관계 약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에 있다. 반면에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수많은 교섭대상국 중 하나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한반도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 내의 냉전상태 해소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1989년 몰타회담 이후 대북한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미·북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대미 요구조건과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전제조건이 상당히 충족되어 가는 형편이므로, 양국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① 북미 직접대화 ② 대북 핵 불사용선언 ③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정과 내정 불간섭 ④ 주한미군 철수 ⑤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¹⁷⁾ 및 3자회담 개최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미·북 제1단계 고위급회담('93. 6. 2~6. 11)에서 ① ② ③조건이 충족되었고, ④조건에 대해

17)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94. 4. 28)을 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군사정전위 북한측 대표의 철수(94. 4. 28), 중국군 대표의 철수(94. 12. 15), 중립국감독위 체고 대표단 철수(95. 4), 폴란드 대표단 철수(95. 5. 28)를 통해 휴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를 사실상 마비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의 사문화·무실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점진적 철수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¹⁸⁾ 또한 ⑤조건인 경우 북한의 핵의혹이 해결될 경우 중단고려 의사를 미국이 표명한 바 있으므로 ⑥조건을 제외하고는 양국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① NPT 복귀 및 핵문제 해결 ② 남북대화의 진전 ③ 미군유해 송환 ④ 반미 적대선전활동 중지 ⑤ 테러행위 및 폭력불사용 ⑥ 인권문제 ⑦ 대량살상무기의 해외판매 금지 등을 제기해 왔다.

최근 미·북관계는 미·북 기본합의문('94. 10. 21)¹⁹⁾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회담과 북한수제 지원, 양국 민간인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보다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간 관계는 큰 마찰없이 진전을 보이는 실정이다. 북한은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와 미국선박 북한항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미국도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에 걸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치적 관계를 보면 양국은 경수로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경수로 전문가회담 및 미·북 준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 합의된 사

18)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미접근에 있어 과거보다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19) 미·북 기본합의문은 1994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었다. 제네바 미·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과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 합의문(Confidential Minute)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은 NPT에의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허용,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활동의 전면 동결과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003년을 시한으로 하여 북한에 2,000MWe 경수로를 지원하고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연 50만톤까지 제공하며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항을 공동언론 발표문으로 공표하였다. 미·북 준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유지, 사용후 핵연료봉의 처리, 대북 중유제공 등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합의되었으며 북·KEDO협약에서 부지인수, 서비스의정서등을 합의 실천하였다.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미·북 전문가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이 주북한 구 동독대사관을 연락사무소 건물로 사용키로 하였다. 연락사무소 개설 시점과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재개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양자간 연락사무소의 개설문제는 외교과우치의 판문점 통과 등 기술적인 사항의 미해결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재정문제 등으로 조기개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만 5천 달러를 지원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하였다. 최근에도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98. 9) 제네바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된 양측의 의무이행 재확인 및 미사일회담재개 등 쌍방간 현안에 대해 일괄타결을 짓고 합의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북한정책조정관을 임명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간 대화는 활발했던 반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의회는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미의회는 수차에 걸친 결의를 통해 북한 핵의혹 해소를 미·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고, 북한에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핵처리

시설 즉각 해체, 남북한 상호 핵사찰, 남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공동위 사무소 설치, 남북한 무역 및 여행자유 확대 등 대북강경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연락사무소개설 등 대미관계 개선은 촉구하겠지만 자유화물결이 두렵기에 관계정상화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북 수교과정은 양국의 내부정세와 남한의 입장, 4자회담, 경수로사업, 미군유해송환, UN사·북간 장성급대화, 미사일 개발 및 수출금지,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입 등 현안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일관계

북한은 일본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는 한편 서방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북방외교에 따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손실을 만회할 의도로 대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경제대국화에 부합되는 정치적 대국화를 추구해 왔는 바, 대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자본과 기술에 의한 대북 경제 협력을 통해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일본은 8차례의 수교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기본문제인 구한말 조약(을사조약 및 정미7조약 등)과 합병조약의 유·무효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확보 및 보상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구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의 해석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친 후 보상방식과 연계하여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상원칙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전후 50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과 전후 보상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 보상도 재산청구권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문제는 북·일 양측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나, 궁극적으로 양측의 '정치적 타결'에 기초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셋째, 기타 문제로서 북한이 제기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이 제기한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문제가 남아 있으나, 수교회담의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일관계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접촉, 중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청산 문제, 일본의 대북 쌀지원,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양국간 공방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양국간의 수교회담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과 일본은 1990년 9월 28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간의 '3당공

동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추진에 합의한 후, 1991년 1월 3일 제1차 본회담 개최 이래 1992년 11월 5일까지 8차례의 수교회담이 진행되었다. 최근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 이후 중단되어 있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활발한 접촉을 보였다. 그러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시점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비공식 실무회담 개최와 일본인 처 27명의 방일, 일본 연립여당의 방북 등 양국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다소 느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북한은 일본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과거청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과거청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의는 보상문제에서 일본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망언,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한 북한의 무성의, 일본상공 '광명성 1호' 통과, 일본내 보수우익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이 최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카드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북한은 일본정부가 발표한('95. 6. 1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 기금 창설계획'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일본의 과거비행에 대한 인정 및 진상 공개와 함께 민간기금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95. 7. 1)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이 문제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

출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환용함으로써 보상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일관계에서 주목을 끈 또 하나의 사안은 일본의 대북 쌀 지원이다. 북한은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방일하여 가진 연립 여당 방북단 대표들과의 회담('95. 5. 26)에서 쌀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게 모두 50만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비난공세를 계속하였다. 북한의 대일비난은 일본이 1997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공세는 일본의 핵문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핵문제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된다.

최근 양국경제관계를 살펴보면 1998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무역 총액은 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일 수출은 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6% 줄었으며 수입은 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간 늘었다. 그러나 수입보다는 수출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기의 0.4억 달러에서 0.5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8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규모는 전년도의 4.9억 달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APEC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무라야마 총리는 '대북수교 3원칙'을 제시했다. 무라야마 총리가 밝힌

3원칙이란 북·일관계 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교교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 아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북·일수교 이전에 일본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98. 10)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21세기의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이 3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현재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향후의 북·일 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공조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이 미국에 앞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당분간 북·미관계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북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로 인한 자국의 안보문제와 비판적인 여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대러시아 관계

한·소수교 직후 “달리로 사회주의 연대를 팔아먹었다”고 북한이 소련을 맹비난함에 따라, 북·소 관계는 긴장관계로 돌아섰다. 그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의 출현에 따라 양국관계는 정치·경제·군사 등 전반적 측면에서 악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러시아인들 가운데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며 북한도 경제난 해결

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회복을 바라고 있어 좀더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북·러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와 상호간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기조 위에서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러관계 강화요인은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 러시아의 대서방 견제 외교정책, 미·북 및 일·북 수교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 한·러 경제협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북·러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러 갈등요인으로는 북한 벌목공의 인권문제, 북한의 대러 채무상환문제, 러시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양국관계의 변화추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이상 정치적 동질성을 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이 냉전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한·러 기본관계 조약’의 체결에 따른 한·러 유대강화는 북·러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다. 러시아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대북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에 근거한 대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기존 대소 동맹관계에 의한 원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인플레이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러시아는 경제난 타결을 위해 체제개혁과 시베리아 개발

에 열중하는 한편, 1992년부터 대북무역에 있어 우호가격 철폐 및 경화결제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대소 의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해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산 플랜트, 무기 등이 지난 50여년간 북한 내에서 가동·이용되어 왔는 바,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자재공급과 부품조달을 위해 구소련 공화국들과 관계유지 및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입장에서 러시아 및 CIS 공화국들과 개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러 교역량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와 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북·러간에는 「98~99년 과학 및 문화협조계획서」 「과학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어 두나라간의 경제·문화·기술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1996년 9월 10일에 효력이 만료된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이어 새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 조약은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에 바탕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91~95년) 및 1995년 말에 발표된 '신방위대강' 추진과 1997년의 '미일안보협력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의

군사유대관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방 4도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PKO 파견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대일 안보측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부의 엘리트들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군부에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군부의 인적 밀착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러시아는 갈등의 해소와 상호간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및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한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러관계는 김일성의 사망과 러시아의 체제변혁에 따른 이념적 연대감의 상실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취약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당분간 현상유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양국간의 관계에서 러시아대사는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물이 주로 등용되었으나 정치적 관계에서 실무적 관계로 변하고 있는 양국간 관계변화에 맞추어 직업외교관 출신이 임명된 바 있다.

제3절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은 현재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변화 압력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노선을 고집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를 존속시키는 한, 그들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제유지와 경제발전, 정통성 확보라는 당면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볼 때 전술과 행동유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현재 치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술과 행동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조류는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운

데,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추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체제경쟁이 판가름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수습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금의 노선을 고집한다 해도 세계화의 물결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세에 떠밀려가는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황장엽·장승길 등 북한 고위층 인사의 망명사건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일시에 개혁 개방이 되면 지난날 역사 왜곡 등 폐쇄로부터 얻었던 이익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축적될 때 제한적 개방으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고, 일본에게는 적당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전후배상금(50~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됨)을 받아 경제회생을 노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예전과 같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배제정책을 통해 내부체제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도 경수로 사업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금강산관광 등의 성공 여부가 남한의 실질적 역할에 크게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대화와 교류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원만하게 해야 대외신뢰도나 입지를 확대 개선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북한은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이 북한의 장래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종합판』, 67. 68호, 1998.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1998.
- _____,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방향』,
1998.
- _____,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1997.
-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1997.
- 북한의 노동당규약(1980. 10. 13).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1998. 9. 5).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8.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1~1998.
- 통일원, 『'95북한개요』, 1995.
- _____, 『김정일 주요 문헌집(1994~1996)』, 1996.

IV. 북한의 경제

제1절	131
북한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제2절	151
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제3절	178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추진과 문제점	
제4절	197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요 점

- 북한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 연속된 자연재해의 발생에 기인하나 근본적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닌 각종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 북한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신무역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경제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추진시 발생될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대외개방의 한계 등 각종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그 회생 여부가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성립과정과 전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지하자원 및 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농업경제의 완전 협동화와 더불어 산업경제, 즉 수공업 및 개인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한이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중앙기구를 설립하고 가장 처음 실시한 정책은 토지개혁이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만 정보가 무상몰수되어 그 중 98만정보가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을 위한 기본전제로서 추진되었으며 일제하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를 청산하고 개별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해 준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부문은 소상품생산적인 소규모 개인농업이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세한 소상품생산경제 형태로는 농촌의 부흥과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농업 경영에 의해서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다음 단계의 혁명과제로 추진하였다. 토지국유화의 경제적인 목적은 전국의 토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농업부문으로부터 국가의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농촌 노동력의 공업부문 동원과 농업경영의 대단위화를 통해 규

〈표 4-1〉

농업협동화의 전개과정

년 도	조 합 수	가입농가 호 수	농가총수에 대한 비율(%)	조합에 편입된 경지 면적(1,000정보)	총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1953	806	11,897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3	576	30.9
1955	12,132	511,5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606	95.6	1,684	93.8
1958	13,309	1,055,015	100.0	1,791	100.0

※자료: 『조선중앙연감』, 1959, p.193, p. 330

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등에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은 195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¹⁾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군에 2~3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우선 실험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²⁾ 그리하여 농업집단화에 착수한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에 전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표 4-1〉 참조).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소련의 국영 농장형태인 소프호즈방식(sovkhos)을 채택한 것이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기

1) 북한의 농업협동조합의 형태에 관해서는 『경제사건(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08~409 참조.

2) 『경제사건(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07~408.

능과 조직은 중국의 인민공사와 매우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중국의 인민공사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상공업의 협동화

북한이 반제반봉건혁명을 수행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구축해 나가는데 토지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하게 제기된 과제는 주요 산업 국유화 조치였다. 그래서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민족반역자 및 일본인 소유의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채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모두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 시설이 국유화될 수 있었는데, 이 규모는 공업생산능력의 90%, 공업 총생산액의 72.4%에 달한 규모였다.³⁾

구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 방법, 속도, 형태 등은 각기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랐다. 구소련의 경우 ‘노동자통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인민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 1차 국유화와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2차 국유화의 단계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국유화조치는 단 한번에 아주 짧은 시간내에 무상몰수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북한의 대부분

3)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 대동, 1993, p.47.

의 주요 산업들이 일본인 소유였고 해방과 더불어 그것이 모두 인민 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국유화조치는 중국과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주요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패전국 소유였고 이것이 이미 2차대전 직후 국민당정부에 의해 국유화되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정부가 국민당 소유 관료자본을 모두 몰수할 당시(1949년) 이 규모는 34.7%나 되고 있었던 것이다.⁴⁾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려면 사적 경제부문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모두 계획경제 영역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1949년 당시 주요 산업 대부분이 이미 사회주의경제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공업생산액에서 사적 경제부문의 비중은 9.3%에 지나지 않았다. 사적 경제부문이란 소상공경제형태인 개인수공업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인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을 위해 이 부문의 협동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우선 개인수공업부문의 협동화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57년에 최종적인 완성단계에 들어갔으며, 자본주의적 상공업부문은 1956년말부터 전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1958년에 완성단계에 들어갔다(<표 4-2> 참조).

그런데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 개조되기 이전의 북한의 사적 경제부문은 아주 영세한 규모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상공업부문의 경우 평균 노동자 고용규모가 2.5명에 불과하였으

4) 김시중,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1993, p.16.

〈표 4-2〉

상공업생산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 %)

경제형태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공업	상업	공업	상업	공업	상업	공업	상업	공업	상업	공업	상업
사회주의경제	72.4	3.5	90.7	56.5	96.1	67.5	98.0	87.3	98.7	87.9	99.9	99.9
국영형태	72.4	0.1	85.5	27.9	86.2	32.0	89.9	53.9	90.6	48.8	90.6	69.2
협동조합	-	3.4	5.2	28.6	9.9	35.5	8.1	33.4	8.1	39.1	12.2	30.7
사적경제	27.6	96.5	9.3	43.5	4.0	32.5	0.2	12.7	1.3	12.1	0.2	0.1

※자료: 『조선중앙연감』, 1959(국내판), p.32, p. 335.

며, 1957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6,584개에 이르는 개인상점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342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⁵⁾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산업경제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여타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단시간안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경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서의 사적 부문이 전혀 잔존할 수 없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산업경제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는 1958년에 동시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1957년부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전일적 지배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인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7년~60년)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5) 고승효, 앞의 책, p. 86.

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

북한은 이렇게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의 기본 상부구조를 구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기술적 하부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전인민적 소유의 완전한 확립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압도하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경제전략

1) 자립적 민족경제전략

우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우선적인 경제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도 고수되고 있는 핵심전략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제”⁶⁾를

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권, p.79~80.

의미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원자재조달,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경제활동을 자체내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⁷⁾

이러한 자급자족적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 대내지향적·수입대체적·내수시장의존적 경제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민경제의 완전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 지도하에 이 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국제분업체제에서 유리된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즉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대외무역 관계가 전개되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 구소련 및 중국과만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로 하는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수출은 다만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내부자원의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때문에 북한은 60년대 중반이후 원자재 국내조달비율을 6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1969년 현재 기계·설비의 국내자급율이 98.2%에 달했다고 한다.⁸⁾

그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10% 이하에 머물러 1970년대에 세계 석유위기와 같은 대외경제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

7) 북한의 이 전략은 본래 일제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파행성과 왜곡성을 띠게 된 민족경제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중소분쟁 이후 주체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주체사상노선에 의해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환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체제의 방어라는 차원에서 대외경제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한 측면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고승효, 앞의 책, p. 126.

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수주의적이며 폐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자립경제발전전략은 북한의 산업을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지 못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동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즉 90년대 이후 볼 수 있는 것처럼 탈냉전의 기류에 의한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라는 국제경제환경변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동시에 추진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전략은 북한과 같은 후진경제가 비교적 용이하게 수출할 수 있는 소비재공업부문의 낙후도 가져옴으로써 천연자원 외에는 외화가득 수단이 거의 없는 경제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결국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은 초기에 빠른 공업화를 달성하고 일시적으로 외부경제환경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을 가져왔을런지 모르나,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및 국제분업의 이익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경제가 장기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전략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의 실현수단으로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⁹⁾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혹은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도 보장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전에서 “지난날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사회주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 나라들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한다. 또한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부터 먼저 발전시킨다”¹⁰⁾고 밝힘으로써 경공업의 발전과 연관된 중공업 발전을 강조한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경제정책집행 과정에서 중공업의 절대우선 정책이 선택되었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구소련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구소련은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 중공업 우선 정책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체제경쟁

9)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15~716.

10) 앞의 책, p. 716.

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성장 전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채택된 이유는 생산력을 확장시키는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수익이 소비재 생산 위주의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단기적 수익을 크게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잉여생산물은 전사회에 걸쳐 확대되며 사회총생산물(social gross product)과 순생산물(net product)도 저축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핵심이 되는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중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재 공급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다.¹¹⁾ 이때문에 북한은 재정 투자지출 중 70% 이상을 항상 중공업부문에 편중 지출하였다.

이러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성장전략의 결과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히 중공업생산 위주구조로 재편되었다. 공업부문이 전체 사회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6년에는 23.2%에 불과했으나 1949년에는 35.6%로 증가하였고 1964년에는 62.3%로 확대되었던 것이다.¹²⁾

결과적으로 북한은 구소련과 헝가리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11)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17.

12) 『조선중앙연감』, 각번호.

그러나 북한의 공업총생산 증가율은 계획기간별로 볼 때 5개년 계획기간과 제1차 7개년 계획기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차츰 둔화되어 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이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생산요소 투입방식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하여 그 모순이 극대화되었음에 기인한다.

북한이 선택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투입물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생산성보다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량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자본재의 증가가 생산물 증가를 크게 앞지르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란 어느 일정 단계를 지나면 양적인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통한 자본량의 증가에만 의존하였던 북한의 경제성장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 군사·경제 병진전략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군수산업의 육성과 결합

시켜 동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구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및 경쟁 과정 속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절대시하였으며, 이를 경제성장 전략과 연결하여 추진했었다. 따라서 북한도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상호 연결시켜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은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 없는 측면에서 잘 알 수 없다.

북한의 군사비가 예산상으로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오히려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공업 분야와 군사분야의 상호연계성은 더욱 강화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공업의 발전없이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이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10월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 경제운영의 기본전략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71년 동안은 30% 이상으로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군사비를 종전의 절반수준인 17% 수준으로 축소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축소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과 군수산업의 연개는 소비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며 북한의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수준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과정 및 성과

북한은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61~7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실시된 주요 계획 중 단기계획으로는 제1차 1개년계획('47년), 제2차 1개년계획('48년), 2개년계획('49~50년),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 3개년계획('54~56년), 5개년계획('57~61년) 등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해 추진한 주요 장기계획과정 및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7개년계획(61~70년)

북한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을 더 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1961년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조성이 불균형한 상태로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과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그 실행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각 부문별 불균형은 보다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1962년 ‘쿠바 위기’와 1966년 증소분쟁을 계기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제1차 7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한 결과 계획기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오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조정기간까지 합하여 이 기간동안 나타난 성과는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성장을 12.8%, 국민소득 270%, 공업생산액 330%, 곡물생산액 150%의 증대가 있게 되고 총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비중이 1956년 25%에서 65%로 상승하였다고 한다.(〈표 4-3〉 참조)

2) 6개년계획(71~76년)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통해 3대 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마련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 계획기간 동안 공업이 연평균 16.3% 성장하고 국민소득 170%, 공업생산액 250%가 증대하고 곡물총수확량이 800만톤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표 4-3〉 참조). 그러나 6개년

<표 4-3> 북한의 경제계획과정 및 성과(1961~1993)

계 획	주요 과업	주요 계획 목표	주요 성과(북한발표)
제 1 차 7개년 계획 (1961~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기술 혁신 ○국민 생활 향상 ○국방·경제 건설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2.7배 ○공업 총생산: 3.2배 ○양곡 수확고: 600~700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 총생산: 3.3배 ○양곡 수확고: 미발표 ※계획 기간 3년 연장
6개년 계획 (1971~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 발전 ○기술혁명 ○산업 실비 근대화 ○국방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8배 ○공업 총생산: 2.2배 ○양곡 수확고: 700~750만 톤 ○국방비: 재정 지출 의 3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7~1.8배 ○공업 총생산: 2.5배 ○양곡 수확고: 800만 톤 ※1977년을 조정 기 간으로 설정함으로 써 사실상 계획 기 간 1년 연장
제 2 차 7개년 계획 (1978~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 생활 향상 ○대의 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9배 ○공업 총생산: 2.2배 ○양곡 수확고: 1,000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 총생산: 2.2배 ○양곡 수확고: 1,000만 톤 ※칠도 60% 진척화
제 3 차 7개년 계획 (1987~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조 ○의식주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1.7배 ○공업 총생산: 1.9배 ○농업 생산: 1.4배 ○과학 기술 투자: 국민 소득의 3~4% ○무역액 증가: 3.2배 	

계획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공업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 특히 석유의 부족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노정되었으며, 서방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 심각한 외채문제가 야기되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동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후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제2차 7개년계획(78~84년)

제2차 7개년계획은 6개년계획에 대한 1년간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공업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동 계획이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전제로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제2차 7개년계획의 지원사업으로 대안중기공장 및 북창알미늄공장 신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등 16개 대상의 건설지원과 석유, 코크스, 망간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였고, 중국도 봉화화학공장 건설을 비롯한 4개의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약속하

였다. 그러나 북한은 목표년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완수 및 추진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를 하지 않다가, 1985년 2월 16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서 1984년 말을 기해 동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북한이 발표한 성과는 공업이 연평균 성장률 12.2%, 국민소득 190%, 공업생산액 220% 증대하고 곡물총수확량이 1,000만톤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간동안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사업'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히 곡물생산량의 경우 626만톤 정도만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

제2차 7개년계획이 실제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984년 1월)에서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방침을 채택하고, 동년 9월 합영법의 제정 공포 등과 같은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실적은 부진했으며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제3차 7개년계획으로 넘어갔다.

4) 제3차 7개년계획('87~93년)

제3차 7개년계획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10대 전망

13) 이는 북한의 과장된 통계 발표 때문인데, 미국 CIA는 1984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660만톤으로 보고 있다.

목표 실현 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동 계획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면서,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을 크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기술혁신을 종전처럼 노동력동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우선 남한의 올림픽에 대응하여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열고 정치성사업을 많이 벌인 결과 경제부문에서의 경제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게 되었으며, 90년도 이후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기존의 대외무역관계가 와해됨으로써 결정적인 영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이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연평균 7.9%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연평균 마이너스 1.7%로 나타나고 생산지수도 1986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993년에는 71.4로서, 전반적으로 계획수행율이 51.8%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이로 인해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대내외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침해화된 시기에 심각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와 세계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이들 국가와 맺었던 장단기 무

14)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역협정의 이행이 거의 중단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부진했음을 들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조정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라는 신경제전략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특히 수출생산기지를 정비하고 수출품 생산을 확대 강화하며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대외무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이 종결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로운 경제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98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3대 제일주의'가 퇴색하고 앞에서 살펴본 3대 기본경제전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98년 9월 김정일체제를 제정비한 후 발표한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글에서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중공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방도로 될 수 없다. 물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대외무역관계의 확대에 의해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중공업을 기초로 한 자립경제노선의 견지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도 그 개념이 서방의 GNP개념과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확한 국민소득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관한 총량”을 말한다.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문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순국민소득(NNP)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정부가 농업생산이나 생필품생산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가감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군사분야 등의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P와 1인당 GNP를 추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하여 1998년 7월에 발표한 1997년 북한의 경상GNP는 177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약 741달러로 기록하고 있다.¹⁶⁾

반면 한국의 1997년 경상GNP는 4,374억달러이며, 1인당 GNP

1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54.

는 9,511달러이다. 이를 경제규모면에서 평가해 볼 때 한국이 북한보다 24.7배 정도 크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표 4-4> 참조).

또한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율을 함으로써 경제규모가 80년대 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4-5> 참조).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5~85년 기간 동안 북한의 연평균성장률이 4%대로, 1986~89년 기간에는 2%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¹⁷⁾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온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경제침체에 북한경제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은 북한경제에 특히 원자재, 자본재, 식량 등의 조달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화질제 요구였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1991년부터 본격화된 것 같다. 1990년도에는 북한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공업

16) 북한은 자체적으로 GNP를 발표해 오지 않고 있는데 1997년 6월 UN주재 북한대표부가 UN사무국에 북한의 GNP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5년 말 현재 북한의 GNP는 52억 달러, 1인당 GNP는 239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북한이 UN의 재정분담금을 낮게 배정받고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용되는 GNP 추계는 북한의 가격체계나 결정방식, 대미달러화에 대한 외곡, 국민소득 개념의 차이 등으로 현재의 경제통계 체계를 가 지고는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1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11.

〈표 4-4〉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97)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B/A(배)
1. 인구	천명	23,855	45,991	1.9
2. 명목 GNP	억달러	177	4,374	24.7
3. 1인당 GNP	달러	741	9,511	12.8
4. 경제성장률				
GDP	%	-6.8	5.5	-
GNP	%	-6.8	4.9	-
5. 대외경제				
무역총액	억달러	21.8	2,807.8	128.8
수출	억달러	9.1	1,361.6	149.6
수입	억달러	12.7	1,446.2	113.9
무역의존도	%	12.3	64.2	-
대미환율	원/달러	2.16	951.11	-
외채	억달러	111.0	1,208.0	10.2
(외채/명목GNP)	%	67.3	27.6	-

※자료 : 한국은행, 「'97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8. 7

〈표 4-5〉

북한의 GNP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성장률	5.1	3.8	2.7	-3.7	-4.3	-1.7	-4.6	-3.7	-6.8

부문의 감소는 0.4%에 불과하고 건설부문은 5.9%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서 경제 전반에 큰 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들어오면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전년 대비 15.8%나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2년에는 21.0%나 감소하였다. 중공업 부문의 부진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GNP 감소 폭도 1990년 -3.7%에 비해 1991년 -5.1%, 1992년 -7.7%로 이 두년도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중공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과 동시에 광업 및 건설업 분야의 커다란 침체가 경제후퇴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경제흐름을 살펴본다면 북한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1991년과 1992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표 4-6> 참조).

〈표 4-6〉

산업부문별 성장률 추이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5	1996	1997
농림어업	-10.2	2.8	-2.7	-7.6	-10.5	1.0	-3.9
광 공 업	-2.9	-11.9	-15.0	-3.2	-2.3	-9.6	-15.6
제 조 업	-1.5	-13.4	-17.8	-1.9	-5.3	-8.9	-16.8
(경 공 업)	-6.2	-4.4	-7.3	5.0	-4.0	-7.1	-12.0
(중 공 업)	-0.4	-15.8	-21.0	-4.2	-5.9	-9.7	-18.7
건 설 업	5.9	-3.4	-2.1	-9.7	-3.2	-11.8	-9.9
서비스업	0.3	2.5	0.8	1.2	1.5	0.8	1.1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호

요컨대 북한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천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축소됨에 따라 절정적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북한식 자급자족 경제는 엄밀히 말해서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었으며, 대외경제협력관계도 북한경제의 존속을 위해 이미 필요한 요소로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라는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북한경제가 회생될 수 있음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금융 기능까지 정부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통제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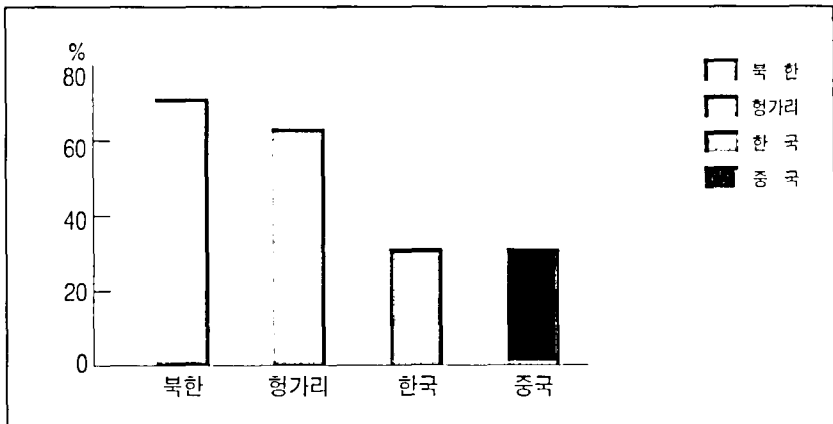
는 것이다. 재정의 통제기능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동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94. 4. 7)에서 통과된 북한의 1994년 예산결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수입 416억 20만원(193억 5,000만 달러), 지출 414억 4,215만원(192억 8,000만 달러)으로 1억 5,805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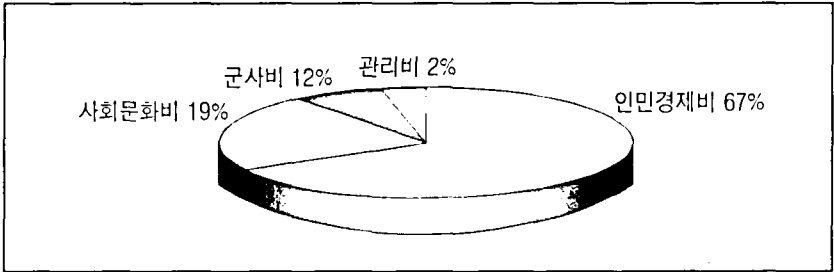
〈그림 4-1〉

GNP 대비 정부지출 규모



<그림 4-2>

북한의 재정지출의 부문별 비중



발표되었다.¹⁸⁾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1.4%(계획은 11.6%)인 47억 2,440만원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93년도의 실제 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 은닉된 군사비를 포함할 경우 총예산 규모의 30% 수준인 57.8억달러로 추정된다.¹⁹⁾

1994년 예산집행 결과의 특징은 재정흑자 규모가 '93년의 3억 2,823만원에서 94년에는 1억 5,805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과 총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8% 수준인데 비하여 군사비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도 북한이 건전재정을 과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시마다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신

18) 『조선중앙연감』(’95년판), 1995. 12. 30. 재정수입, 지출액의 미국 달러화 표시는 북한의 1994년 무역환율 미화 1달러당 대비 북한원화 2.16원을 통해서 산출한 것이다.

19) 통일부, 『북한경제동향』, 1996. 9, p. 11.

되성을 갖기가 어렵다.

한편 현재 북한은 1995년 이후 금년까지 연속 3년 동안 최고인민회의(제9기 8차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98년 9월에야 결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산과 새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고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예산결산 심의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²⁰⁾

3. 무역구조

(1)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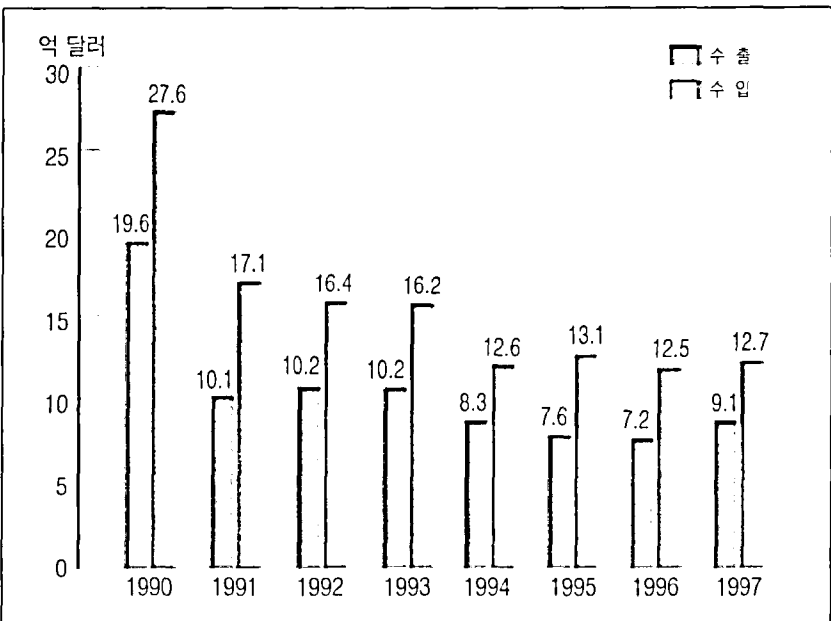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87~'93)에 무역규모를 기준연도의 3.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과는 달리 동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하여 대외교역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북한의 교역규모는 1990년에 4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1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급감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96년 약 19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1997년에 약 21억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하다가, 98년 상반기 현재 총 7.5

20) 통상적으로 북한은 매년 3~5월경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함께 당해연도의 예산안을 확정, 이를 기초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

억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13.3%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4-3> 참조).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4.6억 달러로 줄어 들고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6년 6,400만달러수준까지 떨어지더니 97년에는 8,300만달러로 약간 회복하고 있는 실

<그림 4-3>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자료 : KOTRA, 「북한뉴스레터」, 1998. 7.

정이다(<표 4-7> 참조).

구소련은 원유, 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주된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장단기 경제협정 및 생산협정 등을 통하여 북한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의 부진은 단순한 무역감소 이상의 충격을 북한 경제 내부에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강철생산, 철금속, 석유제품, 직물부분, 화학비료, 철광석 등의 주요 중화학공업 시설은 대부분 구소련이 제공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구소련과의 갑작스러운 경제관계 축소는 이들 설비의 가동, 유지, 보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19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교역은 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 원유도입량의 77.2%, 총곡물 도

<표 4-7>

북한의 구소련·중국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구소련 (러시아)	총무역	24.7	4.6	3.2	3.5	1.5	0.8	0.6	0.84
	수 출	10.5	1.8	0.7	0.5	0.4	0.1	0.2	0.17
	수 입	15.2	2.8	2.5	2.9	1.1	0.6	0.4	0.67
중 국	총교역	-	-	6.9	9.0	6.2	5.4	5.6	6.5
	수 출	-	-	1.5	2.9	1.9	0.6	0.6	1.2
	수 입	-	-	5.4	6.0	4.2	4.8	4.9	5.3

※자료 : 중국 『해관통계』, 각년호 및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이 당시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 교역물자의 부족으로 94년도부터 대중국교역 역시 감소하다가 97년도에 6.5억달러 규모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7년도 북한의 곡물수입의 약 53.2%, 원유도입의 45.8%를 중국에 의존한 정도로 현재 북한교역의 첫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¹⁾ (<표 4-8> 참조).

1997년말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무역규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20억달러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외교역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간 주류를 이루어왔던 1차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국별 무역현황

<표 4-8>을 보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1997년 말 현재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교역은 1995년의 경우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식량 및 원유 등의 원조물자를 대량 지원함으로써²²⁾ 1996년에 1위 교역상대국으로 올라선 후 97년도에도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1997년 말

21)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6월호, p.10~11.

22) 북한의 1996년 총곡물도입분 105만톤 중 약 54만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며 원유도입은 총 93만 6000톤으로 모두 중국에서 도입한 것이다(『중국해관통계』 1997. 1).

〈표 4-8〉

북한의 국별 무역 현황('97)

(단위 : 만 달러, %)

순 위	국 가	수 출	수 입	총교역	비 중
1	중 국	12,161	53,468	65,629	30.1
2	일 본	31,048	17,880	48,928	22.5
3	한 국	19,306	11,527	30,833	14.2
4	홍 콩	18,070	3,205	21,275	9.8
5	인 도	6,949	4,350	112,997	5.2
6	예 멘	0	8,800	8,800	4.0
7	독 일	4,333	4,283	8,617	4.0
8	러시아	1,697	6,686	8,383	3.9
진 체 금 액		90,460	127,225	217,685	100

※자료 :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6월호, p.3.

※주 : 한국과의 교역은 민족간교역이므로 반입, 반출로 부름.

현재 수출 1억 2천만 달러, 수입 4억 3천 4백만 달러로 3억 1천 4백만 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상대국 중 최대 적자상대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원유, 식량, 비료 등 기본 기초재들을 대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과의 교역은 수출 3억 1천만 달러, 수입 1억 7,800만 달러로서 1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외교역상대국 중 최대의 흑자상대국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와 섬유류, 전기전자류 등 임가공품과 무연탄, 비석, 연피 등 천연자원 상품 등의 수

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나라와의 교역비중은 52.6%로서 대중, 대일 무역의존도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의 교역, 즉 남북교역은 반입 1억 1,527만달러, 반출 1억 9,306만달러, 총 3억 8백33만달러로 북한 전체 무역의 14.2%를 차지하는 3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7,700만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대외교역에서 보는 무역수지 흑자의 두 번째 대상이다. 홍콩과의 교역은 4위로서 총 2억 1,200만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96년도 6,100만달러(7위)에서 크게 증가된 규모로서, 북한이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 수입을 위해 금을 1억 2천만달러어치나 홍콩에 수출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요컨대 90년대 들어와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별 무역구조 추이를 보면 뚜렷하게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 1994년을 기점으로 전체 교역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이후 1997년에 34% 수준에 이르고 대신 일본, 한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상품별 무역구조

북한의 1997년 10대 수출상품구조를 그 순위별로 보면 섬유제품 20.4%, 귀금속류 18.9%, 비금속류 10.1%, 식물성 생산품(주로 농

입산물) 9.6%, 기계류·전기기기 및 부품 9.5%, 광물성생산물 7.9%, 기타 7.5%, 산동물 6.5%, 화학공업 플라스틱제품 6.1%, 목제품 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내역은 대체로 북한의 수출 대종 상품이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상품 및 1차자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표 4-9 참조>).

한편 1997년 북한의 수입상품은 광물성 생산물(원유 및 석유제품) 22.5%, 식물제품 20.5%, 기타 11.8%,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11.6%, 섬유제품 9.9%, 화학공업제품 7.6%, 차량 7.1%, 플라스틱제품 4.5%, 조제식료품 4.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내역을 보면 식물성생산물과 식량대용품이 합해서 25%로서 식량난 극복을 위한 곡물수입이 가장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원유 및 석유제품이 단일제품으로서는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7년도 북한의 원유도입은 중국으로부터는 50.6만톤을 수입한 반면 저렴한 예멘산을 60만톤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멘산을 대체로 임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그 다음 단일 품목 수입으로 높은 것으로는 비료수입이다.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료수입은 4만톤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97년도에는 2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²⁴⁾ 따라서 북한의 수입상품에서 전략물자인 식량과 비료, 에너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6월호, p.4.

24) KOTRA, 위의 책, p.9~10.

〈표 4-9〉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실적('97)

단위: 만 달러, %

수 출 상 품			수 입 상 품		
구분(HS기준)	금 액	구 성 비	구분(HS기준)	금 액	구 성 비
1. 산동물	58,962	6.5	1. 식물제품	261,429	20.5
2. 식물제품	86,911	9.6	2. 조제식료품	57,871	4.5
3. 광물성 생산품	71,740	7.9	3. 광물성 생산품	286,626	22.5
4. 화학공업, 플라스틱	54,785	6.1	4. 화학공업제품	96,901	7.6
5. 목제품	31,146	3.4	5. 플라스틱제품	56,630	4.5
6. 섬유제품	184,171	20.4	6. 섬유제품	125,972	12.1
7. 귀금속류	171,085	18.9	7. 기계류	147,187	11.6
8. 비금속류	91,710	10.1	8. 차량	90,089	7.1
9. 기계류	85,489	9.5	9. 기타	149,550	11.8
10. 기타	68,602	7.5			
합 계	904,602	100.0	합 계	1,272,253	100.0

※자료: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6월호, p.6, p.9.

결과적으로 북한의 상품별 무역구조는 금이나 임가공제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식량, 비료, 에너지 수입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형태는 극히 후진적인 취약한 무역구조로서 무역정상화를 위해 식량부족문제 및 에너지부족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경제난의 부문별 현황과 과제

북한의 경제난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동시에 애로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현상이다. 경제난의 형태는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량난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표출된 것은 북한이 심각한 흉수를 겪은 1995년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였다. 이 당시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1996년의 총식량 수요는 764만톤이었다. 이 중 주식용은 487만톤, 비주식용은 277만톤인데 생산은 376만톤에 그쳐 부족분이 388만톤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내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6만톤 규모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흉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톤과 369만톤 생산에 그쳤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80년대 중

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80년대에 북한은 평균 식량생산량이 415만톤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평균 200여만톤 정도의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인당 배급량을 700g에서 500g정도로 줄이고 부족 식량의 대부분을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관련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게 되는데, 89년도에 비한 90년도의 격감율이 쌀의 경우 32.5%, 옥수수의 경우 27.3%, 전체 26.8%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도 이후 연속 자연재해마저 겪게 되고 평균 식량생산량이 345만톤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표 4-10> 참조).

북한은 1997년 한해동안 외부에서 총144만톤(WFP 39만톤, IFRC 등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37만톤, 빈경무역에 의한 자체 확보량 66만톤)의 식량을 조달하고, 98년에도 10월말 현재 WFP 30만톤, 개별국가 및 NGO의 22만톤, 우리측 6.2만톤 등 58.2만톤에 다 미국의 30만톤 추가지원까지 합하여 외부의 지원을 총 90만톤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98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외부세계로부터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각종의 농업기술협력지원 그리고 북한 자신의 녹색혁명 강조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기술의 혁신 모색 등으로 식량사정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호전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98년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표 4-

〈표 4-10〉

북한의 곡물생산 현황

단위 : 만톤

연 도	총생산량	쌀	옥수수	두 류	기 타
1993	388.4	131.7	196.3	19.7	40.7
1994	412.5	150.2	213.8	17.3	31.2
1995	345.1	121.1	185.1	12.9	26.0
1996	369.0	134.0	197.6	12.1	25.3
1997	348.9	150.3	159.9	11.2	27.5
1998	388.6	146.1	194.7	11.3	36.5
'93-'97 평년작	375.4	138.9	191.2	14.1	31.2

※자료 : 통일부.

10>에서 보듯이 388만 6천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8월~9월 경 일부 지역에 호우·우박 피해에 의해 약 8만 4천여톤의 감수효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온·강우량면에서 작황조건이 지난 3년간에 비해 양호하고 국제농업기구의 기술지도에 의해 10여만정보에 이르는 이모작 증산효과가 있어 97년 대비 10.2%(39만 7천톤) 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측되는 북한의 수요량(정상배급량 보다 22% 감량 배급시 551.3만톤)에 비하면 약 163만톤 부족하여 99년도에도 여전히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렇게 지금까지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식량문제 때문에 이미 96년도부터 농업생산방식에 일부 개선조치를 도입해오고 있었다. 즉 1996년도에 분조관리제를 일부 개선하여 협동농장의 20명 단위 분조를 7명 단위로 축소하고, 할당생산량을 축소하

여 잉여농산물을 개인적으로 장마당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협동농장에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UNDP가 세운 「북한농업재건 계획」 하에 약 10만정보에 이르는 경작지에서 이모작을 실시하거나 ‘옥수수사이그루재배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그간의 식량 위주 단작체계를 수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집단영농방식의 기본체계를 그대로 놔둔채 기술적 차원에서만 내려지는 개혁조치이기 때문에 식량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영농방식에 입각한 농업생산방식의 개혁외에는 달리 해결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식 ‘농가생산청부제’로 전환하여 농업생산관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난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1> 참조). 북한의 에너지 공급 감소는 북한 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가 마비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 공업의 중심이 에너지 다소비형인 중공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본다.

우선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주요

원인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가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존율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립경제 노선에 따라 석탄의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하, 신규설비의 미도입, 자재의 공급애로 등으로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석탄생산량의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하자 1990년 석탄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23.4%나 감소하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7년 현재 석탄생산량이 1,825만톤에 불과함으로써 1989년도에 비해 무려 57.9%나 격감하고 있는 것이다(<표 4-11> 참조).

<표 4-11> 북한의 에너지 생산 추이

구 분	단 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석 탄	만톤	4,330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2,100	1,825
	%	6.3	-23.4	-6.4	-5.8	-7.2	-6.3	-6.7	-11.4	-13.1
원유도입	만톤	-	252	189	152	136	91	110	94	110.6
	%		-	-25.0	-19.5	-10.5	-33.0	20.8	-14.6	17.7
발전량	만톤	294	277	263	247	221	231	230	213	193
	%	4.2	-5.7	-5.0	-6.1	-10.5	4.5	-0.4	-7.4	-9.4

※자료 : 통일부, 『북한의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1994년,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년도

※주 : '97년 원유도입량은 중국산 50.6만톤, 예멘산 60만톤을 합한것으로 한국은행 자료를 수정한 수치

전력 생산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북한의 전력생산구조가 수력 대 화력의 비율이 6:4일 정도로 수력의 비중이 높지만 화력발전소의 99%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소일 정도로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 반해,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에 저열탄의 대량사용으로 발전소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북한 발전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소가 갈수기나 동절기에는 생산의 차질이 적지 않게 발생하며, 발전설비의 상당부분도 일제시대나 1950~1960년대에 건설된 것이어서 발전효율이 낮고 고장도 잦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현재 발전량은 193억Kwh로서 89년도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4-11> 참조). 이는 전년도인 1996년도에 비해 9.4%가 감소한 것으로서 전력문제가 최근 들어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1997년 현재 북한의 발전용량이 739억Kwh이므로 전력생산가동율이 불과 26.1%에 불과한 수치이다.²⁵⁾

이렇게 낮은 전력생산은 공장가동율을 저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북한은 98년도 들어와 전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법은 외화난으로 원유도입이 어려우므로 거의 자체 자원을 가지고 해결하는 자력갱생식 방법

25) 96년 2월 북한의 전력공업부 부부장이 주동일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전력생산시설용량은 630만kW이고 그 중 수력이 320만kW, 화력이 310만kW이나 97년도 수력발전은 70만kW, 화력발전은 95만kW로서 각각의 발전소가동율이 불과 21.9%, 30.6% 그리고 전체 가동율은 26.7%라고 한다.

이다. 즉 연재(그을음)와 같은 대체연료의 개발이나 자체 자원을 이용한 발전소, 예컨대 조수력이나 풍력, 낙차를 이용한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형발전소는 북한이 전력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김정일이 98년 1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중소형발전소는 185개에 불과하였으나 97년에는 500개, 98년 9월초까지 4,080개가 건설되었다고 한다.²⁶⁾ 그러나 중소형발전소의 평균 전력생산량이 10Kwh~20Kwh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소형발전소 건설은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전력난 해소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결국 북한의 전력난 해소는 노후화되어 있는 낡은 송배전시설과 전력생산시설을 대체하고 석탄생산과 원유도입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요원한 문제라 하겠다.

원유도입의 급격한 감소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리라고 분석된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에 252만톤이었으나 구소련으로부터 도입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됨으로써 1997년 110.6만톤까지 56.1%나 하락하고 있다(<표 4-11> 참조). 최근 북한의 주요 원유 도입선은 97년도 일시 에멘산을 도입한 외에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98년도 북한의 원유

26)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01호, p.5.

도입량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98년 7월 중국의 대홍수로 대경유전이 침수됨에 따라 98년 10월말 현재 북한의 원유도입량이 4.5만톤에 지나지 않고 12월말까지도 2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의 정유공장 가동률도 약 2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외화가득 애로가 타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원유부족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의 에너지공급원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원유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부재하고 북한이 항상 중국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도 어렵다는 면에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3) 원자재난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심각한 원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원자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원자재난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그동안 부족한 원자재공급원 역할을 해주었던 외부조달원이 축소된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자재난은 몇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

다. 즉 <표 4-12>를 보면 철광석의 경우 91년 816.8만톤에서 97년 291만톤으로 64.3%, 비철금속의 경우 91년 22.7만톤에서 97년 10.8만톤으로 52.4%, 강철의 경우 91년 316.8만톤에서 97년 101.6만톤으로 67.9%, 시멘트의 경우 91년 546.9만톤에서 97년 334만톤으로 35.4%, 비료의 경우 91년 143.5만톤에서 97년 77만톤으로 46.3%나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량이 절반내외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광공업 가동율도 거의 대부분 90년도에 비해 96년 현재 20%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예컨대 제강업의 경우 90년 56.3%에서 96년 20.2%로, 자동차의 경우 90년 39.4%에서 96년 25.8%로, 화학비료의 경우 90년 45.1%에서 96년 27.2%로, 시멘트의 경우 90년 51%에서 96년 31.5%로 가동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 90년 17.8%에서 23.4%로 섬유공업의 경우 90

<표 4-12>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철 광 석	816.8	574.6	476.3	458.6	422.1	344.0	291.0
비철금속	22.7	17.8	16.4	16.0	15.4	11.6	10.8
강 철	316.8	179.3	186.0	172.8	153.4	120.8	101.6
시 멘 트	546.9	474.7	398.0	433.0	422.0	379.0	334.0
비 료	143.5	138.5	160.9	131.8	120.9	95.6	77.0

※자료 : 통일원, 『북한의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1994년,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년도

년 28.2%에서 31.6%로 약간 올라가고 있을 뿐이다. 조선의 경우 가동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동력 중소형 어선의 건조에 치중함으로써 그리고 섬유공업의 경우 주로 일본 조종련 기업이 보내는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위탁가공형태가 최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이와 같은 심각한 원자재난과 공장가동율 저하를 정상화하고자 자원절약, 내부자원 활용, 대체원자재의 개발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외화가득의 애로, 에너지부족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

<표 4-13>

북한의 주요 광공업가동율

단위 : %

연 도	제 강 업	기 계 공 업		화학비료업	시멘트업	섬유공업
		자 동 차	조 선			
1990	56.3	39.4	17.8	45.1	51.0	28.2
1991	53.0	36.4	18.7	40.8	43.0	30.5
1992	30.0	30.3	25.7	39.4	39.5	23.7
1993	31.1	30.3	23.8	45.8	33.1	29.9
1994	28.9	27.3	23.8	37.5	36.0	32.8
1995	25.7	26.4	23.8	34.4	35.1	31.6
1996	20.2	25.8	23.4	27.2	31.5	31.6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1997, p.23~27.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 에너지, 원자재, 외화 등의 공급 경제 에로 문제가 상호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어느 한 문제만의 해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난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전면적 개혁과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추진과 문제점

1. 대외경제개방 추진 배경과 합영법의 제정

(1) 추진 배경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해나가는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대외무역이란 국내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여건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인 것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경제건설전략인 자립적 사

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서 대외무역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국내 수요 충족에 부족한 한에 있어서만 활용되어야 하는 보완적 경제현상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 시장(사회주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주장처럼²⁷⁾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권과의 교역관계에만 치중해왔다.

그러나 60년대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하여 국내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포적 공업화’(intensive industrialization)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선진적인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와의 교역관계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에 의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자극받아 대외무역관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일성이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서방선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하였다. 즉

27)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집』, 국토통일원, 1988, p.634.

기술 및 플랜트 등 대규모 설비와 자본장비들을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차관형식을 빌어 수입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다음 <표 4-14>에서 보듯이 60년대에 비해 70년대 상반기 소련에서 보다 서방 선진국가로부터 압도적인 차관도입실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불어닥친 석유위기로 북한이 수입하는 원자재가 격은 상승하는 반면 세계경제불황에 의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등의 수출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25억달러라는 누적채무문제와 아울러 채무불이행(Default)²⁸⁾이라는 사태에 접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교역의 다각화와 수출증대를 적극 강조함과 동시에 80년대 들어오면서 대외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합영법의 제정이었다.

<표 4-14> 북한의 국기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1961~76년)

단위 : 만달러

년 도	소 련		중 국		기타 사회주의국		OECD국		합 계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1961~69년	-	19,668 (58.4%)	-	10,500 (31.2%)	-	3,500	-	-	33,668
1970~76년	-	90,600 (41.5%)	-	160	-	-	-	124,200 (57.8%)	214,960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28)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76년 일본에 채무상환연기를 요청한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은 76년, 79년, 83년 세차례에 걸쳐 약 600억엔에 이르는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2) 합영법의 제정

북한은 1984년 1월 최고 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향후 5년 내지 6년 내에 사회주의 국가와 교역을 10배로 증대시키고 외교관계가 없는 서방국가와의 교역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대외개방 정책 추진에 대한 선언과 함께 후속조치로 동년 9월에는 외국인기업의 북한투자와 관련된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5년에는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동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동 세칙 등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법규들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제3차 7개년계획기간('87~93)에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를 3.2배로 증가시켜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이 추진을 위해 1988년 12월 합영공업부가 신설되어 외국인 투자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무역정책의 기조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이렇게 차관도입정책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외채부담을 적게 하면서 수출을 통한 외화가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인접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성공과 80년대 들어와 무역규모 및 경제력면에서 남한과 더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 자극받은 면도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영(equity joint venture)기업이란 북한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유치되려면 무엇보다도 대외신용도의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측면에는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구자본의 유입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여기에 인프라마저도 미비하고 북한 국내시장 자체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서방자본의 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 조총련자본만이 유입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1993년까지 이루어진 합영사업은 총 144건으로서 조총련기업이 거의 80%이고 그 총투자규모는 1억 5천만달러로서 건당 평균투자액이 100만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120여건의 조총련 합영기업 중 조업중인 기업은 70여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성사된 합영사업은 대부분 1차산업과 서비스업, 경공업분야에 치중되었다. 북한이 희망하는 중화학공업 및 비철금속, 석탄 등 광업분야에서의 합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첨단산업 관련 부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볼 때 합영법은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기존의 대외무역관(정경연계의 원칙, 국가독점의 원칙, 평등·호혜의 원칙)을 수정하고 국제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외경제관계의 다양화·다각화를 모색하는 신무역정책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대외무역을 경제발전의 한 동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외화가득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조조합영'이라는 한계로 끝나고 말았다.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성과

(1) 제한적 경제개방 추진의 배경

합영법을 통한 서구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 도입유치정책은 이미 80년대 후반경에 오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4년~88년동안 구소련으로부터 4배 이상의 수입증가가 있을 정도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본의 충당에 구소련이 아직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고 있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북한의 경제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던 구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역규모가 격감하고 경제 위기에 부딪히게 되자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마침 90년 7월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냉전후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의 하나로 두만강유역 3개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가간에 '두만강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반환판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북한은 그 방안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제특구정책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90년 10월 당시 총리였던 연형묵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 주해,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하고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도 가지면서 자본주의시장경제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함경도 최북단인 나진·선봉에 경제특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과거 합영법의 내용을 상당히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1992년 10월 제정·공포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에는 전문 21조로 이루어진 합작법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1월에는 총 4장 47조로 이루어진 합영법을 새로이 개정·공포하였다. 동 법규들은 현재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북한 헌법 제37조의 “국가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²⁹⁾는 조문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실현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22개 조문으로 규정해 놓았다. 특히 동 법은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와 관련되어 동 지역에서 투자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행규정들을 정해놓고 있다(제9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내 일반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투자활동 기업에 대

29) 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추가된 조항으로 합영·합작 형태외에 100% 단독 외자기업, 주식회사 등의 허용이 시사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여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작법에는 북한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합작기업의 경영활동, 합작기업의 해산과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밝혀 놓았다. 합작법(제2조)에는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외국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합작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은 합영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설립,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등의 규제사항이 합영법의 기본 내용을 이룬다. 합영법(제5조)에 따르면 투자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상기 법규들 이외에도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외국인기업법('92. 10)과 그 시행규정('94. 3), 외국인투자은행법('93. 10)과 그 시행규정('94. 12),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그 시행규정('93. 1)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93. 1)과 그 시행규정('94. 2), 외환관리법('93. 1)과 그 시행규정('94. 6), 토지임대법('93. 10)과 그 시행규정('94. 9),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93. 12), 대외경제계약법('95. 2), 합영법시행규정('95. 7)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밖에 북한은 최근('97년 1월)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월 18일을 '무

역절'로 제정하고, 대외무역의 다각화, 무역회사의 설립원칙 등을 규정한 '무역법'('98년 3월)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확대에 대해 어느 만큼의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엿보게 하는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황과 문제점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면적이 총 746km²로서 약 15만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었다. 제1단계(1993~1995년)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본격 유치하고, 제3단계(2001~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2010년까지 3단계로 설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가운데 1995년에 완료된 1단계에서 중점 건설대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극히 일부만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게 되고, 95년말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630만달러에 불과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계획을 수정하여 당면단계와 전망단계, 즉 2단계로 개

획을 재조정하였다. 재조정안의 내용은 제1단계인 2000년까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서 국제화물중계기지 및 수출가공기지 건설과 관광기지개발에 역점을 두고, 다음 단계인 2001년~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한 이후에도 북한정세에 대한 불안감, 인프라 시설의 미비,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 투자환경 조건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은 규모나 건수면에서 여전히 부진했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96년 UNDP의 도움으로 96년 7월 동경에서 투자촉진세미나를 개최하고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 당시 김일성대학의 김수용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96년 6월 말까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계약건수는 49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 5천만달러에 이르나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22건으로 3,400만달러에 불과하였다.³⁰⁾ 조총련기관지인 98년 10월 16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97년 12월말 현재 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계약 실적은 111건에 7억 5,077만달러이나 실제 실행된 금액은 77건에 6,242만달러에 불과한 정도라고 한다.³¹⁾ (<표 4-15> 참조)

반면, UNDP는 97년말까지 이 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8,733만달러로서 '두만강개발계획'에 의한 동북아 전체 투자유치면에서 10%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나마 투자된 내

30) 김수용, "라진·선봉 자유경제구역지대 투자환경의 우위성에 대하여", 한세정책연구원, 「북한경제」, 1996, p.55.

31)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10월호, p.18~19.

〈표 4-15〉

나진·선봉 형태별 투자액 및 건수

단위 : 만달러

연 도	합 영		합 작		단 독		합 계	
	계 약	실 행	계 약	실 행	계 약	실 행	계 약	실 행
1993	0	0	0	0	120 (1)	120 (1)	120 (1)	120 (1)
1994	0	0	0	0	200 (1)	200 (1)	200 (1)	200 (1)
1995	13,444.0 (20)	2,013.0 (19)	3,095.0 (3)	1,065.6 (3)	1,628.2 (3)	101.7 (2)	18,167.2 (26)	3,180.6 (24)
1996	4,458.9 (16)	393.8 (8)	1,004.5 (8)	78.8 (7)	45,913.2 (15)	780.7 (9)	51,376.6 (39)	1,253.3 (24)
1997	2,897.0 (30)	140.0 (19)	409.6 (7)	24.1 (4)	1,914.2 (7)	874.0 (4)	5,220.8 (44)	1,038.1 (27)
합 계*	20,799.9 (66)	2,547.1 (46)	4,509.1 (18)	1,168.5 (14)	49,775.6 (27)	2,076.4 (17)	75,084.6 (111)	5,792.0 (77)

※자료: KOTRA, 「북한뉴스레터」, '98년 10월호, p.18.

※건별 리스트로부터 사사오입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계약총액 75,084.6만달러는 본문의 75,077만달러와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는 형태별 투자건수

용도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부문(40%)과 운수, 상업, 호텔, 은행 등 서비스부문(58.3%)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제조업부문(1.6%)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의 투자여건이 생산, 가공,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이 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진·선봉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도 대부분 중국 화교자본 위주인데, 97년말 현재 실행투자건수면에서 중국자본의 비중이 55.8%,

홍콩자본이 10.4%이므로 화교자본이 합하여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일본자본이 20.8%, 영국자본이 3.4%, 네덜란드자본이 2.6%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4-16> 참조). 이는 나진·선봉에 진출한 기업들이 주로 화교기업과 조총련기업들로서 서방선진 국가들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렇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요약해 볼 때 다음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동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항만, 부두건설, 전력, 수송, 주거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초시설 개발이 계획대

<표 4-16>

나진·선봉 국별 투자건수

단위 : 만달러

업종	중 국		일 본		홍 콩		영 국		네덜란드		기 타*	
	계약	실행	계약	실행	계약	실행	계약	실행	계약	실행	계약	실행
1993	0	0	0	0	0	0	0	0	0	0	120.0	120.0
1994	0	0	200.0	200.0	0	0	0	0	0	0	0	0
1995	2946.4	416.1	316.8	69.6	8,104.0	849.4	2,000.0	34.2	1,500.0	750.0	3,300.0	1,061.3
1996	21,457.5	560.0	7,056.7	263.8	22,700.0	318.0	0	0	35.5	35.5	126.9	76.0
1997	3,765.4	352.2	243.4	5.3	1,050.0	677.4	0	-	0	0	166.0	3.2
합계	23,160.3	1,328.3	7,821.9	1,583.4	31,854.0	1,844.8	2,000.0	34.2	1,535.5	785.5	3,712.9	1,944.2

※자료:KOTRA,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호.

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동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예정기업들이 의문을 지니고 있다.

둘째, 북한 경제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북한경제 회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내수 시장의 위축과 북한 내부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져 투자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이미 중국, 베트남, 여타 동남아 국가들이 상당히 안정된 대외개방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특구는 이들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외개방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 투자 예정인 외국기업들의 경우는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와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긴장상태의 지속은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대북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제한적 개방정책의 실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의 실제 투자실적이 미미한 현상을 보이자 97년 6월 이 지역에 시장경제원리를 대폭 도입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각 기업들의 생산, 판매면에 자율권을 크게 확대해주고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북한원화와 달러간의

자유로운 태환과 외화로서 중국위안화의 통용도 허용하는가 하면 북한원화와 달러화의 암시세를 현실화하여 1:210원의 비율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였다. 개인이나 집단의 자영업도 허용하고 이로 인한 자산획득도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환경조성작업과 아울러 '97년 8월 18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총 37건의 투자안건을 제출하고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협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³²⁾

그러나 98년 들어와 김정일정권이 재정비되면서 이 지역 개발추진계획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북한이 98년 들어와 더욱 더 중공업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노선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무역제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반증으로 북한은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한 직후 당기관지인 근로자·노동신문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98. 9.17)라는 글에서 “외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 주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중공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방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기까지 하다.³³⁾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 개발을 추진해왔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편된 북한의 공식 권력기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이 불명확한

32) 북한이 UNIDO에 제출한 외자도입 프로젝트는 나진·선봉외에 평양, 사리원, 남포 등도 포함한 프로젝트였다. 합작제 인건수는 31건, 17억 1,4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진·선봉 지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33) 파리에서 발행되는 『인타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98. 9.15)에 따르면, 김정일의 지시로 나진·선봉 외곽지대에 설치했던 ‘자유무역지대’ 간판에서 자유라는 낱말이 지워지고, 자본주의식 광고간판도 사라졌다고 한다.(내외통신, ’98. 11. 5).

상황이고 분명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은 북한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수준에서 완급이 조절되어나가지 않을까 전망된다.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1) 대외개방 조건의 미비

사회주의 대외개방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과 투자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관리체제의 개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무역기업들은 무역기업 설립허가권의 이전과 같은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정조직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 무역기업의 활동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무역기업간 경쟁환경도 미비된 상태이다. 경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와 현실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중앙에서 인허가, 혹은 수출입 쿼터를 얼마나 받아내느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 경쟁보다 수출물량의 확보가 무역기업의 성과를 더 크게 결정한다고 하겠다.

둘째, 대외개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은 일찍이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조건은 북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다. 현재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정치경제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결국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경제 부문의 안정성을 높이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이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상품의 증대를 위해서는 원자재 시장,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산과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대외개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제개혁의 추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2)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진출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초기투자는 동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많이 투자·진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가 보편화된 것이다.³⁴⁾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진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당수준까지 높아진 때문이다. 또한 시장경제가 보편적인 경제운동법칙으로 자리잡아 내수시장에서의 판매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 판매로 획득한 이들 국가들의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는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등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장치들이 뒷받침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경우는 북한 내수시장의 미성숙과 각종 진입장벽의 존재, 소비자의 구매력 부족 등으로 북한의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단지 초기 투자시 외

34) 고정식·김홍석,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발전과 당면과제』, 국제세미나 자료, 산업연구원·한국무역협회, 1996. 6, pp. 15~21.

환획득이 용이한 호텔 및 관광자원 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이다.³⁵⁾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경제개혁과의 동시 추진 한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의지와 안정성이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의 초기에 공산당 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지 또한 확고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공산당 중앙에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추진 속도와 방법을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좋은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구소련에 비하여 공업화

35) 나진·선봉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부문에 1996년 6월까지 53만 달러를 투자하여 동지역 전체투자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인프라에 1,350만 달러, 상업 수송, 서비스에 1,121만 달러가 투자되어 각각 전체투자의 40%와 33%를 차지하여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KOTRA, 「북한뉴스레터」, 1997. 8, p. 2). 1997년 상반기 중에도 옴페로 호텔 건축 이외에 뚜렷한 투자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원, 『북한경제동향』, 1997. 10).

의 정도가 낮아서 개발도상국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개혁의 세분화 정도도 낮아서 시장의 도입과 확립에 훨씬 수월한 편이었다. 나아가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할 당시 북한에 비하여 자본의 축적정도가 높았고, 경제성장률이 플러스상태에 있었으며 농업부문의 개혁성파로 인하여 극심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문제없이 공업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갈 수 있었다.³⁶⁾

반면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치개혁적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리적 통제와 억압력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개방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개방은 국내정치나 체제유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추진도 김정일정권의 유지와 사회통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36) 박재춘, "통일과 남북한 경제의 체제전환",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한국비교경제학회편, 박영사, 1995, pp. 3~55.

제4절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현재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9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원, 물자, 에너지 등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경화결제의 요구와 북한의 부족한 외환사정도 구소련과의 경제관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을 상실하도록 만들

어 북한의 외환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연속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발생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이한 주된 원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의 반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⁷⁾ 이러한 계획경제 내에 누적된 총체적인 모순과 구소련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자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농장의 관리체제 개혁, 독립채산제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은 모두 구소련, 헝가리 등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

37)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976~80년 기간 4.1%, 1981~85년 기간 4.3%, 1986~89년 기간 2.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통계청, 『북한의 경제통계』, 1996).

하여 추진했었던 내용과 유사한 조치들로서 중국이 추진한 경제개혁과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경제개혁을 추진할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계획경제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명분 측면에서는 동일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범위와 강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달랐다.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단계적인 경제개혁의 방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도입의 범위와 정도는 기업관리, 가격책정, 임금 및 노동자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현재는 중국 경제 전반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계획당국은 과거의 경제 계획 기능에서 거시경제 부문만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 있다.³⁸⁾ 이는 기업, 소비자, 생산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의 성과는 이를 추진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개혁의지와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였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 정권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의지가 중국 공산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체제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정부에 비하여 경제개혁 추진에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8) 중국의 시장경제화 정도를 상품별 시장가격 결정비중 측면에서 보면 1993년 말 현재 농수산물 87.5%, 소매상품 93.8%, 생산재 81.1%가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5, pp. 118~125.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영업 허용, 접경지대 자유무역시장 개설,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지대내 국영기업의 주식제 도입, 이중외환제도의 폐지 등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가격개혁, 금융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주식제 개혁, 독립채산제 개혁 등은 원천적으로 그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⁹⁾

3. 대외개방 정책의 한계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실효성 적은 무역관리체제의 개혁,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경쟁, 경제개혁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 않는 대외개방, 경제성장의 한계로 인한 내수시장의 협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대외개방 성과 억제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치·경

39) 시장가격을 위주로 하는 가격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채산제의 도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금융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유자산의 객관적 평가 불가능함과 동시에 주식발행 시장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식제 개혁의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5.

40)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問題點が多い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帯”, 『苦難の行進』, 1997. 1.

제적 취약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대외개방이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 때문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서 성과가 미미한 것은 대외개방 조건이 중국, 베트남 등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⁴¹⁾ 여기에 한국과의 정치적 긴장상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개방 추진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대내외 환경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의 성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 밖에 없다.

4. 북한경제체제의 향후 전망

북한 경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의 부족으로 필요 물자생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들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즉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가세되어 견잡을 수 없이 경제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금강

4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연구』, 1995. 12.

산관광사업 허용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대외개방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대외개방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전망과 같은 수많은 제약조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진로는 제약조건들의 해결방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점진적·단계적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개혁으로의 진전, 전면적·급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구사회주의권 방식의 채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그럭저럭 끌고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방향이 혼재되면서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한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경제가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구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현재의 각종 정치경제적인 제약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 대동, 1993
- 김일성종합대학,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1995.
- _____,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1996.
- _____,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1995.
- _____,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199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각월호.
- 북한경제 포럼편,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준비』, 제2차 정기 학술회의 자료,
1996.
- 일본무역진흥회,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6년판), 통일원,
1997.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1997.12.
- 통일부, 『남북한경제지표』, 1995.
- _____, 『북한경제동향』, 각년호.
- _____, 『북한경제실태 및 남북경협문제』, 1995.
- _____, 『'98년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1998. 11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동향』, 1996.

_____, 『북한의 경제특구』, 1996.

_____,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94.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1996.

_____,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안내서』,
1996.

_____, 『중국 국영법 개혁의 전개와 전망』, 1993.

한국비교경제학회편,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1995.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각년호.

V. 북한의 군사

제1절	209
북한군의 특징	
제2절	215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3절	226
북한의 군사전략	
제4절	231
북한의 군사력	

요 점

-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 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의 보루 역할과 함께 이른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혁명무장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중심 깊숙히 고속으로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 북한은 116만명에 달하는 상비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추계 인구를 2,386만명으로 기준할 경우, 인구 1,000명당 49명에 해당하는 군인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비군과 현역에 준하는 교도대를 비롯한 745만명의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로서 세계 제1위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제1절 북한군의 특징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안보의 최종수단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의 국가안보개념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는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고 하는 노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의 총비서 및 군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성격과 기능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규약 전문)고 규정하고,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당규약 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숨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당규약 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1인독재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남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무력수단으로 존재한다.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들이 한반도에서 치루어야 하는 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창함으로써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이 군사력강화 이유를 “적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도리어 우리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자라

고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져서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 남조선혁명을 지원할 준비를 잘하기 위한 것”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공격적인 ‘남조선혁명전략’과 ‘무력적화전략’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김일성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습니다”²⁾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³⁾

결국 북한이 오늘날까지 ‘남조선 해방’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기조는 4대군사노선으로서 북한헌법('98. 9. 5)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1) 조선로동당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해설, 제11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0. 2, p. 81.

2)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제하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4. 12. 23).

3) 『조국통일』, 1968. 2. 28, 인민군 창건기념일('68. 2. 8) 김일성 연설.

4) 김일성저작집 제7권, p.447 “전쟁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입니다.”

2. 북한사회에서의 위상

북한의 군이 당직 혁명적 군대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군대’라는 사병화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로서 인민군의 성격은 군간부들의 군창건보고대회 보고나 각종 간행물 및 방송논설 등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다.

1990년 4월 25일 북한 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제하의 군창건 58주년 기념논설에서 “당의 명령집행을 위한 지휘체계는 오직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1992년 4월 24일 군창건 6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는 “인민군장령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세우야 하겠다”며 “당의 영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1996년 6월 4일 해군절 50주년(6. 5) 기념보고회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통해 “한몫이 어뢰가 되고 폭뢰가 되어 최고사령관을 걸사용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91. 12. 24) 및 원수(‘92. 4. 20)에 이어 국방위원회 위원장(‘93. 4. 9)으로 추대하고 그를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하면서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에서 나아가 ‘김정일의 군대’로 사병화(私兵化)하는 등식을 표방해 왔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수령’, ‘위대한 아버지’,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이 유일무이한 통치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⁵⁾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회의 둘째 의안으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고 동회에서 개정된 헌법(제10조)은 지난 제7차 개정 사회주의헌법('92. 4. 9)에 비해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동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다.

여기에서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정규군 116만명은 물론 교도대 173만명, 노농적위대 414만명을 포함한 동원가능 예비병력 745만명을 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의미한다.⁶⁾

이상과 같이 북한 인민군은 그 역할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종속적 측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체제유지의 골간으로 역할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군은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김정일 정권의 기반을 유지해 주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과 통치자의 관리된 폭력수단이자 경제건설의 도구로도 활용되는 북한군의 특징은 일관된 공격형 전투서열유지, 병력

5) 1994년 7월 20일 평양방송은 “인민에게 있어서 아버지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우리 수령”이라는 ‘정론’을 폈다.

6)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응립하는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해설하였다.

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 반격능력 분쇄 목적의 철저한 인명살해 위주의 교리, 과도한 지하진지 건설 및 유지 등에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 극복과 공안통치를 위해 상당수의 군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1) 군 지휘체계

북한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성이 실제적인 북한 군사 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인민무력성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어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경비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 북한을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인민무력성 작전국장에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2) 군사기구

1) 국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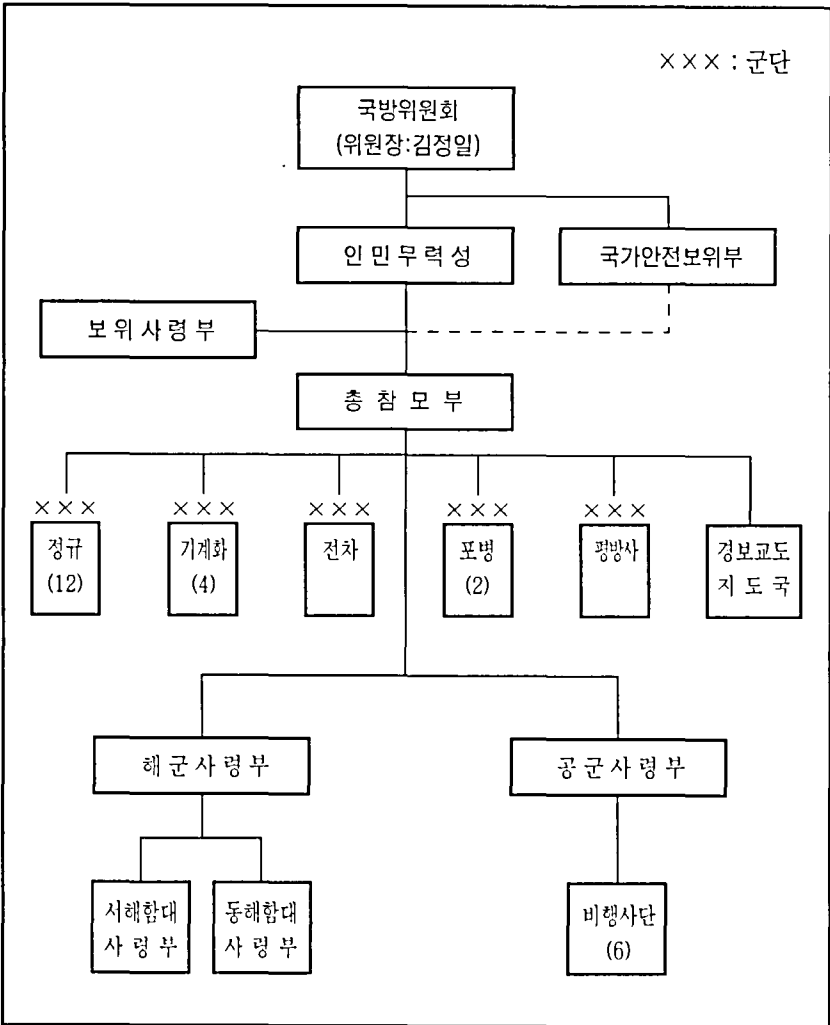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⁷⁾

제6차 개정헌법('72. 12. 27)에 따르면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제7차 개정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동조항이 삭제되고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되었다. 금번 제8차 개정('98. 9. 5) 김일성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치나 폐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제2차대전 시 전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전쟁 지도기구인 대본영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표 5-1> 참조).

7) 북한헌법('98. 9. 5) 제100조~제105조.

<표 5-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자료: 국방부 편, 『국방백서: 1998』, p.39 인용.

2) 당 군사위원회

당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⁸⁾와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시동원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관리·운영 및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3) 인민무력성

인민무력성은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후 1992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성은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예하에 총참모부를 두고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군단, 포병군

8) 1984년 2월부터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 임무를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에서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통일원, 『95북한개요』, p. 497.

단, 경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게 되었다.

인민무력성의 구성상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 계통이다.

2. 군사제도

(1) 병역제도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를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⁹⁾로 등록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5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 입대하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 졸업하는 해에 입대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북무자 등) 등은 물론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사회안전성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도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¹⁰⁾

9)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초모'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시에는 45세까지 '초모' 대상이 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10) 통일원, 『95 북한개요』, p. 487.

근무연한은 내각결정 148호(1958)에 의거,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며, 1995년부터 10년 근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 부대, 저격부대 등) 요원은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¹¹⁾

1996년 10월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로 복무가 연장되었다. 군복무를 마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 되며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 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3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2) 병영생활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¹²⁾

-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11)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지만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성의 방침에 따른다.

12)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 연설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지시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저작집 3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pp. 518~524.

-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 ⑤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비밀의 엄숙한 유지
-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 ⑦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복무중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7~10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긴 휴가는 30일간 받을 수 있는 물자휴가로 고향지역에 가서 특산물을 획득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는 특별휴가와 마찬가지로 군관 1명이 동행하여야 한다. 주민생활에 대한 실망을 우려하여 평상시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되는 대신 연 1회 휴양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병영내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초상화를 한 장으로 인쇄한 3대 위인상과 “총대는 정권, 정권은 총대” 등 김정일의 명언을 부착시켜야 한다. 또 김부자 찬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에서 병영내 「1인1악기」 연주를 권장하고 있다.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영농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¹³⁾

13) 통일원, 앞의 책, P. 490.

(3) 군계급구조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려지고 있으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 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 하사관에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② 일반병은 상등병, 전사로 구분된다.

차수 계급을 신설한 이후 북한군 장성 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1일 군창건기념 60돐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전 호위총국장 이운설도 인민군 원수임에 비해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로 격상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이 된지 4개월만인 동년 4월 23일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를 발표, 오진우(당시 인민무력부장)를 비롯한 최광(당시 총참모장) 등 8명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직접 달아 주는 등, 총 664명의 군장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어 김정일은 1993년 7월 19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40호」를 발령, 1차 진급에서 누락된 6·25전쟁 참전 원로 군관 및 장성 99명(중장 14명, 소장 85명)을 승진시키고 1994년 4월 15일 당민방위부장 김익현을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시켰다. 또한 1995년 10월 8일 오진우 사망('95. 2. 25) 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하고 당 중앙군사위 및 국방위원회 명의로 최광, 이을설에게 원수 칭호를,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고 김하규 등 군 고위직 14명을 진급시켰다.

1997년 2월 9일에는 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7호를 통해 박재경, 김격식 등 측근 4명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6명을 진급시키고 4월 13일 군창건 65주년을 앞두고는 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8호 「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를 발령, 대장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을 차수로 진급시키는 등 123명(차수 4명, 대장 1명, 상장 8명, 중장 37명, 소장 73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다.

1998년 4월 13일에도 최고사령관 명령(제00102호)으로 상장 최성수 외 21명(중장 1명, 소장 20명)을 승진시켰는바, 소폭 인사에다 초급장성들이 대다수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군창건 60주년 기념훈장」('92. 3)과 「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년 기념훈장」('93. 3) 등을 새로 제정했는데 이 역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군 선무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례는 1993년 9월에 제정·발표된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표창은 1956년 6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정되어 근 20년간 북한군의 사기양양책으로 장기복무자들에게 수여해 오다가 1975년경 수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매년 너무 많은 병사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어 표창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이 표창을 폐지했었다.

북한이 이번에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을 다시 제정한 것은 1975년 후 장기복무한 전장병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최근 군내에 일고 있는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한편, 군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휴전 40주년을 맞아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한 노병(6천명)들에게 새로 제정된 ‘전승 40주년 기념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하고 군원로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군의 경제건설을 위무하기 위해 1996년 12월 29일에는 발전소 및 금수산기념궁전 등 대형건설 사업에 참여한 군인들과 관계자들 1,678명에게 노력영웅 칭호, 김일성훈장 및 김정일표창장 등을 대거 수여하기도 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대 내에는 각급 단위의 당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이 군에 대해 당의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

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기도 하는데 인민무력성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군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당원인 군간부의 경우 핵심권력층에 진입하기 어렵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인민군대 내에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의 성격이 영토 및 체제보존 임무보다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적화혁명과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적화통일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단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의 추진으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 후, 후단계에서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들의 통일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공황을 조성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중심 깊숙히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25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삼아 수립된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지만 미군의 군사적 능력과 대한민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및 현재의 대치상황, 한·미동맹 관계, 연합방위태세 등을 감안할 때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정권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전략이다.

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고속중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 제고에 일관함으로써 '80년대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전시동원태세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그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1. 선제기습전략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잠재력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와 비슷하고, 북한 GNP의 수배가 되는 수

14) 국제문제연구소 편, 『방위연감 1995~1996』, p. 167. 국방부, 「국방백서 1998」, pp.45~47.

도권, 경인지역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1993년부터 사정 50km이상의 170밀리 자주포, 70km이상의 240밀리 방사포를 중서부 전방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강 배치하고 서울까지 6분 비행거리에 있는 최전방지역에 130여대의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2. 속전속결전략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별칭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킨미사일의 양산(量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적·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 포클랜드전쟁 및 걸프전 등은 북한에게 속전속결전략의 효용성을 시사하는 실례가 되었다.

3. 배합전략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방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 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¹⁵⁾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 말경 김일성은 개도진지를 완성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대동로’(땅굴) 작업을 명령하였는데 그 이유는 월남패망 사례처럼 땅굴침투부대와 지하당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상대측에서 제대로 응전하기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한편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기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

15) 1972년 4월 19일자 『로동신문』은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출판에 즈음해서』라는 논설에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적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 적들을 도처에서 공격하여 소멸하며 조국평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16) 서원식, 『북한전략사상 신문』, 한원, 1990, pp. 102~109.

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난 조국 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 주며 오늘 월남 전쟁에서의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⁷⁾

사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부합되는 면이 없지않으나 전쟁은 사상교육과 지형만 고려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지속역량으로 볼 때 자의로 도발할 수도 있으나 결코 뜻대로 종결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로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김일성 저작집 25』, p. 294. 1966. 10. 5. 당대표자회의 김일성 연설.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1) 일반병력 및 부대편성의 특징

1998년 10월 현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0만 3천명, 해군 5만 4천명, 공군 10만 3천명으로 1997년보다 1만 3천명 증원된 총 116만명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같은 병력수는 한국의 총병력 69만명의 1.7배 규모이다(<표 5-2> 참조).

북한의 지상군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2개 포병군단과 4개 기계화군단을 포함하여 20개 군단사령부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

지도국으로 편성된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는 보병 32개 사단 및 여단, 10개의 경비여단, 36개의 교도사단, 2개의 미사일여단 등 총 175개 사단 및 여단이 있다.¹⁸⁾

특히 기계화부대와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하여 10개의 군단, 60여 개의 정규사단, 여단규모인 지상군 병력의 약 65%가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강습돌파 위주의 전격전 수행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인 10만여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력현황으로 보아 레이다에 잘 탐지되지 않는 300여대의 AN-2기, Mi계열 공격 헬기 140여대와 한국군에서도 활용하는 휴즈 500계열 헬기 80여대를 이용하여, 후방 깊숙히 침투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유사시 정규·비정규전 부대의 배합전으로 남한의 전·후방지역을 동시 전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⁹⁾

공격시에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성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

18) 국방부, 『국방백서 1998』, p. 39.

19) 백종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통일연수원, 1990, p. 48.

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고 기존진지의 수배이상의 광범위한 위(偽)진지와 모의장비를 설치하고 공격시 이용할 갱도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하여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⁰⁾

(2) 주요장비

1) 지상장비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개열전차(T-54/55/59 등) 2,750여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구형인 T-34 전차 250여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200여대의 약 1.7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9,300여문(76.2/100/122/132/17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3,100여문(구경 107/122/132/

20)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pp. 57-58.

240밀리)의 방사포, 고사포 등 13,8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 가능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해상장비

북한 해군은 총 99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0%의 함정을 전방기지에 전진배치해 놓았다.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4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510여척, 잠수함은 40여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동해 570여척, 서해 420여척으로 분리·운영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소형함정이 많아 원해작전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보유한 잠수함으로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

부대요원의 은밀한 침투 등에 환용할 수 있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3~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인천 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개펄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고속 상륙정, 시속 50노트 이상) 130여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면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하다.²¹⁾

3) 항공장비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70여대, MIG-15/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20여대 및 헬기 32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9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47%를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하여 MIG-21/23/29 및 SU-7/25기는 현기지에서 발진하면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구형이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워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중심이 짙

21) 국방부 편, 「국방백서 1998」, pp. 41-42.

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 공군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하나 대체로 공군 전술기의 성능과 대지공격 능력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은 그들의 전력을 양적 증가와 더불어 속도, 항속거리, 무장 및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무기체계 방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MIG-23/29 전투기와 SU-25 근접지원전투기 및 IL-76 수송기 등 신예기를 도입하여 전술항공전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全民무장화에 따라 15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745만여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60시간내지 50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 성격을 지닌 '노동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군위대'를 발족시켰다. 1988년 4월부터 북한은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중앙당에 민방위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교도대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5세까지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173만명이다.

(2) 노농적위대

노농적위대는 4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위주(여자 17~30세)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위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414만명이다.

(3) 붉은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

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 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 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118만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4) 기타 준군사부대

주요 보안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회안전부 공병부대, 군수물자를 관리 지원하는 군수동원총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원 등 약 39만명에 이르는 인원도 예비 병력으로서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가능하다.

3. 전략무기

(1) 핵무기개발

북한은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연구소인 '뉘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핵연구단 지에 집중 배치해왔다. 현재 북한에는 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연수받

고 돌아와 핵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력이 2,500명내지 3,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기술을 자체개발로 성공함으로써 5Mw급 제2원자로를 완공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자체 설계한 원자로를 건설·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러 핵개발체제 완성에 주력하고 대천에 200Mw급 원전을 착공하였을 뿐아니라 영변 원자력단지에 대규모 핵폐기물 재처리시설(규모: 180m×20m×6층건물 높이)을 건설하고, 수차례의 고풍실험('83~88년 기간중 70여회)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무기 완성에 주력한바, 플루토늄추출능력을 감안하면 초보적인 1-2기의 핵무기조립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북한은 1992년 4월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1993년 2월까지 IAEA의 임시사찰을 6차례 받았다. 그 결과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원자로('50~60년 영국·프랑스의 플루토늄 전용생산 원자로: 경제성, 안전성 결여)를 운영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설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확보하여 재처리한 횟수만도 3회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찰이 거듭될수록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22)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 198.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다가 이를 유보하고 미국과 협상에 매달렸다. 그 후 미·북간 3단계 고위급 회담('94. 10. 21)을 통하여 대북경수로 제공 및 미·북한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대가로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IAEA사찰 수락 등에 합의하였으며,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95. 12. 15).

그러나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채취를 거부하였을 뿐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97. 2. 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97. 2. 25)에도 불참하였다. 지난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경쟁적으로 벌어진 핵실험이나 대미·일 견제 또는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슬로간에 따른 국제적 위상제고를 목표로 북한으로서는 핵개발 지속을 유혹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핵개발 포기에 대한 투명성 보장 여부와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는 계속 점검되어야 한다.

(2)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무기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리워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화학무기가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보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

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 용성 등 4곳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 등 8곳에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생무기 저장시설도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왕재봉을 비롯한 6곳이 있다.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취루성 유독가스가 있고 생물무기의 종류로 세균무기인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가 있으며 정주, 문천 등 3개소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들 세균을 배양·생산하여 생체실험까지 마쳤다.

또 북한은 유사시 전·후방을 동시에 화학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데 투발수단으로 육상은 박격포, 야포, 방사포, FROG-5/7, SCUD, 노동1호 미사일 등이고, 해상은 화력지원정, 공중으로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 개발된 생화학무기를 유사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술부대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군단과 사단급 부대에 화학무기 훈련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음은 물론,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 화생무기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장거리 미사일 및 화포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미사일 기술 입수에도 주력한 바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적인 생산단계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연간 약 100여기의 스커드 B/C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왔으며 현재 사정거리 1,000km이상인 지대지미사일 노동1호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사정거리 1,500km~4,000km이상의 대포동 1·2호 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3단계 추진 미사일발사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진입 시도에는 실패하였으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로써 남한 전역은 물론 동경과 북경 등 동북아 주요 지역까지 사정권 내에 들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화포(長射程火炮)는 사정거리 40~50km인 FROG-5로켓 및 170밀리 자주포와 사정거리 70여km에 달하는 FROG-7로켓 및 240밀리 방사포 등으로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수원 후방에 이르는 수도권 및 춘천·속초선을 언하는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장사정화기를 생산·배치한 목적은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전략 표적을 공격하여 초기제압 및 주민의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는 군사·심리적 효과를 거뒀던 것으로 판단된다.²³⁾

4. 최근 군사 동향

북한은 1990년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 수호 및 대남 적화전략 추진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쟁 준비에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전투준비태세 강화 움직임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군병력이 영농 활동 및 경제 건설현장에 상시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아직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1995년 이후 주요군사력 증강 동향을 보면 정규군단이 없던 후방 지역 1개 도의 지구사령부를 군단으로 증편하여 각 도별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장거리 화력과 후방지역 기습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였다. 또 장거리포인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를 계속 생산하여 중·서부지역에는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동부지역에까지 증강배치하고 있다. 이로써 최초 진지에서 이동하지 않고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전략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동 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 대포동 1, 2호의 시험발사 등 꾸준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한부 전쟁준비를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은 그후 계속 군사시설의 지하 갱도 보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시설(180여개소)에 대해서도 전시의 지속적인 생산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23) 국방부 편, 앞의 책, pp. 44~45.

쟁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공격훈련을 강화했고 1996년에는 군기사고 및 탈영자 방지를 위해 정치학습과 군사규율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1997년에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후에는 '자원절약형 및 도상 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이착륙훈련, 수륙양용 공기부양기의 시험비행 등 전분야에서의 전시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 1998』, 1998.
- 국제문제연구소편, 『방위연감 1995~1996』, 1995.
-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통일원, 1998.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1994.
- 서원식, 『북한 전략사상 신문』, 한원, 1990.
- 육성소 외, 『북한군의 동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 유석열, 『북한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1997.
- 이동욱 외, 『북한의 군사전략』, 평화토론회, 1998.
-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세종연구소, 1995.
- 이석호, “북한군사력의 재평가,” 『국제문제』, 국제문제연구소, 1993. 9.
-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 : 지속과 변화』, 1995.
- 조선로동당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해설 : 1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 조지연, 『통일과 강한 군대』, 행림출판사, 1997.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 황병무 외, 『'98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및 평가』,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8.

VI. 북한의 교육

제1절	249
교육의 기본원리	
제2절	252
교육정책	
제3절	263
교육내용 및 방법	
제4절	273
유아교육과 성인교육	

요 점

-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며 이러한 교육의 이념은 사람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 한다.
 - 북한의 교육목표는 사람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도록 교양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혁명성·과학성·현실성"과 "당과 수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정치사상교육을 중요시 한다. 그 결과 개인의 능력과 자유로운 창의력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 북한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교육',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제1절 교육의 기본원리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대하여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 정의한다.¹⁾ 그리고 이같은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있다고 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당과 수령에 충실”하고²⁾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이념적 기초를 법률로 규정하고 또 이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체계화하여 이를 교육의 지침서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 발표.

2) 1998. 2. 15 김일성방송대학 강자.

로 이용한다. 즉 사회주의 교육의 이념에 대해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했다.³⁾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교수교양 방법 등을 종합, 이론 체계화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⁴⁾라는 교육의 종합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테제』는 그간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김일성의 연설, 교시, 명령 등을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정리, 수록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식 교육의 이념은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이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교육을 “인간개조”라 하며 이러한 인간개조의 본질을 사상개조,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라 풀이한다.⁵⁾

그리고 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는 바, ①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확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이 라고 한다.

북한은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과 관련, 사회주의 교육은 계급적 본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성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

3) 현행 북한헌법은 1998. 9. 5 개정된 것으로서 헌법 서문에서 이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명시했다.

4) 북한은 1977. 9. 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동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나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교육은 혁명의 환경과 목적에 맞도록 전개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육에서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혁명실천에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⁶⁾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이 혁명을 위해 철저히 희생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을 깨우치는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이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6)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의 혁명성」에 대해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에 관한 사상은 자본주의 교육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로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12. p.553.

제2절 교육정책

1. 교육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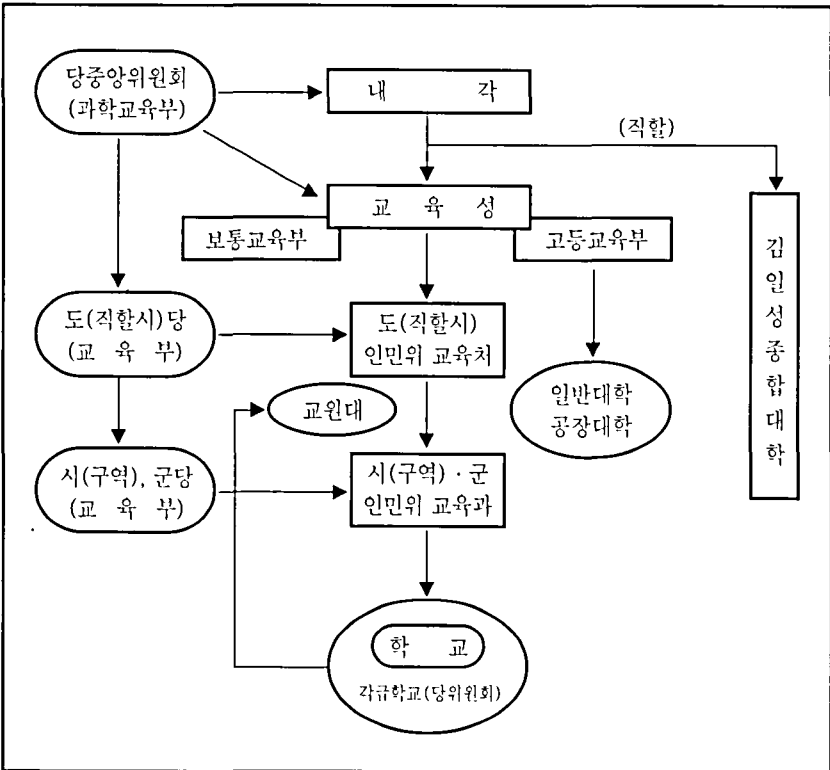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정책은 ‘당적지도’⁷⁾의 원리에서 수립, 전개된다. 즉 교육의 당적 지도는 “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실하게 함은 물론,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체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며 당의 혁명 노선과 방침을 적극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

7)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에서 교육의 「원칙」 가운데 「당적 지도의 원칙」을 명시.

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의 학교 당조직⁸⁾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내각」(행정부)의 경우, 중앙의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표 6-1〉 참조)

〈표 6-1〉 북한의 교육행정지도



8) 각급 학교에는 학교당위원회와 「소년단」 및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됨.

교육행정은 지방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담당한다. 중앙의 「내각」 교육성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고등교육부는 대학교육, 보통교육부는 고등중학이하의 교육행정을 분담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시·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교육처와 시·군·구인민위원회의 교육과의 지도 감독하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2. 교육제도

(1) 학 제

북한은 1996년도부터 신학기를 4월 1일로 설정했다.⁹⁾ 북한은 원래 ‘4월 1일’이었던 새학년을 1969년도에 “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9월 1일’로 변경한 바 있다.

북한이 신학기를 또다시 분학기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이완 때문이다. 즉 매년 2월~4월 사이 김일성, 김정일 생일행사 관련 축제분위기에 편승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및 입학식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에게 김일성부자의 존재를 확고히 심어주고, 김정일로 이어지는 ‘대 이은 충성’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선전매체(평양방송 '96. 2. 10)가 김부자의

9) 1996. 2. 5 노동신문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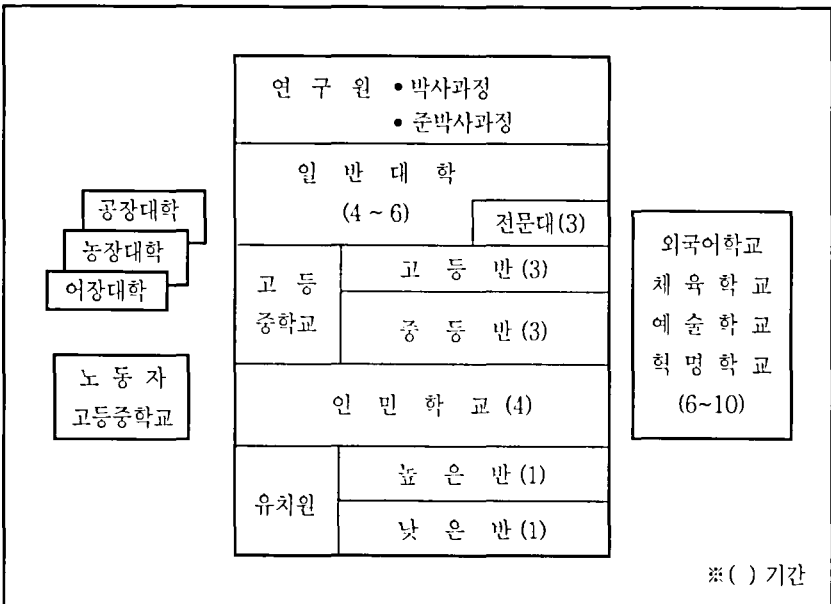
생일과 관련, “김일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김일성을 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선전하는데서도 입증된다.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대학 4~6년, 연구원(준박사·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1년간 의무교육의 기간은 유치원 1년(높은반)을 포함,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 6년 사이이다.

〈표 6-2〉

학 제

범례 □ 의무교육, 연령(만)



북한은 <표 6-2>에서 본 바와 같이 4-6-4제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별도 실시한다.

(2) 무상교육제

북한은 사회전반의 부존자원과 생산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바, 교육제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의 사업으로 교육을 한다. 이를 두고 '무상교육'이라 한다. 그리고 이같은 무상교육은 보통교육과정인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 6년의 11년간 '의무교육'으로하며,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은 장학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또 북한의 무상교육은 의무교육기간의 교재 등 교육자료의 무상공급도(저렴한 가격) 포함된다. 그러나 교재는 '95년부터 경제난의 심화로 사실상 공급되지 못하며 각 학교의 자체조달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즉 국어, 수학, 물리 등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음악 등 기타 과목의 교과서는 거의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1) 보통교육

북한은 현재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한다. 북한은 이같은 의무교육제도에 대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

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¹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① 초등 의무교육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 9. 8)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6·25로 인해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가 1956년부터 초등 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를 실시했다.

② 중등 의무교육

1958년부터는 이를 3년제 중등교육까지 확대하였고, 1967년부터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4년제의 인민학교와 5년제의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과정으로 한 것이다. 중등학교의 5년과정 중 3년간은 일반적인 중학교육을, 그 이후 2년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의무교육의 년한을 1년간 더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10)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참조.

③ 11년간 의무교육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간의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 동년 9월부터 1년간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다.

이같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목적은 중등 일반지식 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에게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조기에 교육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도 그 목적이다.

즉, 각급 학교에는 연령에 따라 집단적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7~13세), 고등중학교와 대학단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4~30세)이 노동당의 외곽 청소년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학생은 「붉은청년근위대」, 대학생은 「교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에 가입해야 한다.

2) 고등교육

북한은 고등교육을 ‘장학제’로 실시한다고 선전한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고 이과정에서는 수업료를 면제하

거나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개설된 것은 1946년 9월 1일이다. 1946년 2월에 형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1948년 7월 7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내각결정 제157호’로 고등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전 직후, 「3개년 전후복구건설기」(1954~'56)에 정치·경제분야의 대학들이 속속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등교원을 대량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설치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개최, 「6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1961~'70)기간에는 공장대학을 증설하였다.

이어 「제2차 7개년경제계획」(1978~'84)기간에는 경제활동의 각 분야별로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각종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대학 등을 증설했다.

현재 북한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약 280여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서 각 도에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약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각종 공장대학들이, 대규모의 협동

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수산대학 등이 있다. 이뿐아니라 북한은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약 600여개 있다고 주장한다.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최근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종합대학 등 일반대학 못지 않게 희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간부가 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부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 등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치뤄야 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는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을 누린다.

(3) 특수교육제

1) 특기자교육

북한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각 도에 특수학교들을 건립했다. 인민학교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는 「제

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교육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등이 있고,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 특기자들을 위한 예체능전문학교가 있으며, 외국어의 중점교육을 위한 「외국어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도(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21일 당시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로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사범교육

북한은 사범교육을 중요시 한다. 즉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으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

(직할시)급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의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의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할 뿐아니라 교원의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반을 모집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삼흥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제3절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① 정치사상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체육교육으로 대별한다. 이 가운데,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과학기술교육으로는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체육교육으로는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각급 학교의 교육은 김일성부자 우상화와 대남 혁명의식 고취 등의 정치사상적 내용과 생산 및 건설에 유용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교과과정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표 <6-3> 및 표 <6-4> 참조).

인민학교 교과 과정의 경우,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은 통합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보다 교과영역별 경험

<표 6-3> . 인민학교 교과 과정

번 호	구 분 과목명	총시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6주)	2학기 (21주)	1학기 (16주)	2학기 (21주)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 린 시 절	152	1	1	1	1	1	1	1	1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 린 시 절	152	1	1	1	1	1	1	1	1
3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4	외 국 어	37							1	1
5	수 학	834	5	5	5	5	6	6	6	6
6	자 연	222					3	3	3	3
7	체 육	304	2	2	2	2	2	2	2	2
8	음 악	304	2	2	2	2	2	2	2	2
9	도 화 · 공 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시 험 과 목 수						3	4	4	4

※출처: 『교과과정안』(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3), 통일부, 『95 북한개요』, 1995.

의 전수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의 구조상 특징은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경시되고 있다.

2. 정치사상교육 강화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즉 “모든 교육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데 복종하여야 한다” 혹은 “정치사상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내용에 정치사상성을 떨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상성은 최근 입수된 북한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1) 김부자 예찬

보통 교육의 국어교과서에서는 무조건 김일성부자를 본받고 그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음악 등 예능계나 수학 등 자연계 교과서에서도 교과목 본래의 교육취지와 목표보

11) 통일원은 1992년 7월 북한의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의 각종 교과서 48권('90년 및 '91년판)을 입수, 교과내용의 정치사상성을 분석하였다.

<표 6-4>

고등중학교 교과 과정

번 호	구 분 과목명	총시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50	2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역사	195							2		2				3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112	1		1		1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110							1		1				1		
5	현행 당정책	(102)							(34)		(34)				(34)		
6	국어 문	769	5		4/5		4		4		2			2			
7	한문	251	2		2/1		1		1		1			1			
8	외국어	591	3		3		3		3		3			3			
9	역사	280			1		2		2		2			2			
10	지리	344	2		2		2		2		2			2			
11	수학	1,283	7		7		6		6		6			6		7	
12	물리	549			2		3		4		4			4		5	
13	화학	381					2		3		4			4		4	
14	생물	410			3		2		2		3			3		3	
15	체육	309	2		2		2		1		1					1	
16	음악	143	1		1		1		1								
17	미술	76	1		1												
18	여학생실습(여)	210	1		1		1		1		1				1		
19	기계조작실습(남)	197															
20	제도	60							1		1				1		
21	실습: 전자기계 선택과정	(120) (100)							(36)		(50) (26)				(34) (74)		
	계	6,420 (322)	27		31		31		34 (70)		34 (110)			34 (142)			

※출처: 앞의 표와 동일, ()는 학년별 연간 수업일수

〈표 6-5〉

국어교과서 내용의 주제별 분포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 계	대남·미·일 적개심고취	공산주의 도덕교양	언어	계
인민학교 (1-4학년)	32 (20)	25 (16)	7 (4)	13 (8)	31 (19)	53 (33)	161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6 (21)	9 (12)	7 (10)	10 (13)	12 (16)	21 (28)	75 (100)

※주:()는 %

다는 정치사상의 주입이라는 목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들이 정치사상적 내용, 특히 김일성부자 우상화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음악교과서 노래가사의 주제별 분포에도 잘 나타나 있다.

① 국어 : 국어의 경우, 인민학교 1~4학년 교과서의 총 161개 단

〈표 6-6〉

음악교과서 노래가사의 주제별 분포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 계	적개심 고 취	사회주의 우월성	기 타	계
인민학교 (1-4학년)	41 (36)	20 (17)	5 (4)	17 (15)	13 (11)	19 (17)	115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8 (33)	6 (11)	2 (4)	9 (17)	10 (18)	9 (17)	54 (100)

※주:()는 %

원 가운데 64개 단원(40%)이, 고등중학교 1~3학년 교과서의 총 75개 단원 가운데 32개 단원(43%)이 김일성 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표 6-4, 6-5>)

② 음악 : 음악교과서의 경우도 노래가사 가운데 김일성부자 우상화 내용이 많다. 인민학교는 57%, 고등중학교는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6-6>).

위의 도표 가운데 국어 교과서에 단원의 주제가 읽기·쓰기·문법 등의 ‘언어생활’로 분류된 영역의 문장에서도 김일성 우상화 구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학년 국어교과서의 제1과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 뒤는 대부분 ‘김일성과 어린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원이 이어져 있다.

음악교과서의 각 학년 제1과에는 김일성 찬양노래, 제2과에는 김정일 찬양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김정숙 찬양노래도 교과서마다 들어 있다. 노래가사의 50% 이상이 이들 3명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③ 자연계 : 수학 등의 자연계열 교과서에도 본문 뿐 아니라 많은 연습문제가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교과서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 책자를 몇번이나 읽었느냐’는 유형의 연습문제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 교과서의 각 단원 첫머리는 김일성부자의 교시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빨이 튼튼하려면 이를 잘 닦아야 합니다”라 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평범한 내용들이다.

(2) 대남적개심 고취

정치사상교육 내용상 주목되는 특징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경제, 사회 등 ‘착취사회’와 ‘착취계급’, ‘제국주의’ 등으로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이를 모두 대남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 혁명투쟁심의 고취 내용을 유형화해 보면 ① 대남 비방·모략, 지주·자본가의 탐욕과 무자비성, ② 미·일의 만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의 문장은 미사여구가 아니면 호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부 문구들은 극단적으로 자극적이며 비속하다. 예컨대 ‘배뎀기를 찌르다’, ‘까부시다’, ‘피바다’, ‘원썩’들과 같은 호전적 용어나 ‘혁명의 전취물’, ‘타승’(승리), ‘고지점령’(목표달성) 등과 같은 군사용어가 학교의 교육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¹²⁾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음악교과서에도 대남 증오심을 고취하는 노랫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남녘땅을 짓밟는 원썩 미제와 일제를 쳐부수러 나간다.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의 피자국은 우릴 보고 외친다. 아, 나어린 어깨에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¹³⁾와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가사의 노래는 ‘소년근위대원의 노래’, ‘나는야 꼬마 명사수’, ‘꼬마 땅크 나간다’ 등 상당히 많이 있다.

12)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1072.

13) 고등중학교 3학년, 『음악』, 제10과, ‘소년빨치산의 노래’.

수학교과서에는 남한 어린이의 비참상을 부각시키고 미·일에 대한 투쟁심을 고취하는 연습문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에서 학교에 못가는 아동의 숫자, 이중에서 구두담기는 몇 명이고 빌어먹는 아이는 몇 명인가”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와 수학교과서의 연습문제 가운데는 군사지식을 전수하거나 전쟁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군사놀이를 하면서 <암호>를 정했습니다. 보초가 부르는 수와 합하여 600이 되는 수를 불러야 우리 편입니다. 보초가 239를 불렀습니다. 몇을 불러야 우리 편입니까”¹⁴⁾ 등과 같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3) 반복강조

정치사상교육의 소재들이 다른 학년이나 다른 과목에 반복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도 북한 교과서의 특징이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등의 노랫말은 국어와 음악 등 여러 교과서에 똑같이 수록하여 반복함으로써 강화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적·심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김일성 부자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와 소재의 문장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구체화하여 반복·수록한 것은 기초교육과정에서 처음 싹이 튼 편향된 감성과 가치관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굳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14) 인민학교 2학년, 「수학」, '덜기'.

이상과 같이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건전한 인격을 배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전수하기보다 정치사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어 교육을 정치교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방법

북한은 교육방법과 관련 ① ‘깨우쳐 주는 교육’ ② ‘이론과 실천의 결합’ ③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④ ‘조직생활·사회정치활동 강화’ ⑤ ‘학교전교육·학교교육·성인교육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을 위해 집단교육, 반복교육, 조기교육, 평생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화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상활동의 강화이다. 학교내의 정치조직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시간, 이념학습, 조직규범에 대한 교양시간을 갖는다.

조직을 통한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긍정적 학습법’을 장려하고 인내력, 지구력, 자발심을 고취·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집단주의 교육방법 뿐 아니라 이의 실천이나 생산활동과의 결합도 중요시한다.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산지식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수시로 생산노동에 동원하거나 혹은 집체적 군사훈련에 참여시키고 있다.

결국 이같은 북한의 집단주의적 획일적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퇴화시키거나 외부환경에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든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독창성과 자율성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 훈련에서 지나친 획일성의 요구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교육은 조건반사적인 인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만 움직이는 수동적·기계적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¹⁶⁾

16) 북한의 교육방법에 관해서는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학론』, 박영사, 1995 참조.

제4절 유아교육과 성인교육

1. 유아교육

북한은 1947년 6월 13일 “보건국 명령 제5호”로 「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한 이후, 어린이 양육문제를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유아교육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여성의 근로를 위하여 유아를 맡아 보육함”이라 하는 등 여성의 유희 노동력을 동원키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 후 1970년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했고 1976년에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 유아교육제도를 구체화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세력”이라 규정하고, 유치원과 탁아소의 운영을 통해 “모든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우고 모든 여성이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명시, 유아교육의 정치사상성을 강조했다.

(1) 유아교육 과정

유아는 태어나서 빠르면 30일부터 3세까지 탁아소에서, 4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양육·교양한다. 탁아소에서 양육된 유아는 4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보내진다. 유치원은 낮은 반 1년과 높은 반 1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1995년 현재 탁아소 2만7천여개를 포함해서 유아시설은 약 3만7천여개로 추산되며 여기에 수용된 어린이의 숫자는 3백5십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 유아교육의 특징

첫째, 유치원 교육에도 사상교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북한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남조선 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또한 어린이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라 한다.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은 1995년부터 “어려서부터 충실성 교양을 잘해야 한다”는 제목의 자녀교육지침서를 발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도록 더욱 독려하고 있다.

둘째, 취학전 유아교육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은 “사회보장의 완전한 실현”이며 “여성해방을 위한 걸림돌의 제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교육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해방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북한식 유아교육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의 신장을 무시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충성하는 획일적인 주조화된 인간을 배양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2. 성인교육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만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정치학습과 재교육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첫째, 당간부와 일반당원, 주요 기관과 단체의 간부요원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으로는 김일

18) 『어린이교육보양법』, 참조.

성고급당학교, 도(道)공산대학, 군(郡)당학교, 인민경제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가운데 비판을 받고 현직에서 축출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둘째, 지위의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하루중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3조)라고 규정해 놓았다.

사실상 북한 당국은 간부나 일반주민들에게 하루 2시간 이상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선전매체에 의하면 “매일 2시간 이상의 학습, 1주일에 1번씩 강연회 및 정기강연, 화요학습, 반나절 학습, 해마다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전달 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내각의 성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¹⁹⁾ 일반주민들은 직장과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각종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학습의 종류는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작업전에 진행되는 독보회와 조회 등이 있다. 그밖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밭머리 학습, 행군 중의 문답식 학습, 전투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군정학습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학습자료는 주로 김일성노작과 노동신문 등이며, 그밖에 주요 학습수단으로는 공장이나 마을, 거주지 별로 집단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방송이다.

19)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1976, p. 189.

셋째, 주민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 학교’이다. 북한은 학습을 조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전사회적 규모에서 학습을 생활화·습관화하라고 촉구한다.

3. 사회주의교육의 한계 및 전망

북한은 지난 50년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전체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고 당의 방침대로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이념화 교육정책을 강행해 왔다.

북한의 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전체 주민들을 「당과 수령」, 「김일성·김정일」에 충실한 맹목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 하겠다. 이같은 교육의 목적은 체제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육정책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퇴색된 오늘날 그 목적달성이 어렵고, 또 북한의 경제·사회질서가 혼란해진 현실에서 북한식 교육의 방향, 내용및 교육의 성과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교육제정의 뒷받침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와 질병, 공포와 절망 속에 체

제 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국가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같은 조건들은 북한식 교육정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른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의 변화에서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맥사, 1990.
-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로동신문』, 1998.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 전용선, 『북한사회주의 교육이론 연구』, 한누리, 1993.
- 『조선말 대사전』, 제1권, 1992.
- 통일부, 『북한인민학교 교육 및 학생생활』, 1998.
- 통일원, 『북한의 교과서분석』, 1992.
- 황정규,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VII. 북한의 문화·예술

제1절	283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제2절	298
문화·예술분야 활동실태	
제3절	310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	
제4절	314
북한 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요 정

- 북한의 문화예술은 미(美)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무기'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북한의 문예정책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었다는 '주체의 문예이론'의 철저한 준수, 각종 문예활동에 있어서 '당성·계급성·인민성'의 관철, 당의 노선과 정책의 철두철미한 관철을 위한 무기화 등으로 요약된다.
 - 북한이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려는 것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으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조작된 역사적 정통성과 연계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

제1절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1. 북한의 문예정책

북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절대가치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예술정책과 목표 및 향유방법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헌법('98. 9. 5)은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52조)고 규정하며 혁명성과 사상성,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김일성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내린 교시(1962. 11)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화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¹⁾

이와 같은 당에 대한 혁명성과 사상성 중시와 함께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절대적 행동지침이 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1974. 2 당중앙위)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한다”(3항).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4항)고 규정하여 북한의 문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조항과 김일성교시, 10대원칙을 참작하면 북한의 문예정책은 사회주의체제 옹호 및 합리화, 김일성우상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근로자의 정서함양, 미적 가치 추구가 따르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인은 문화전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김일성 연설

1)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 579.

(64. 5. 24)은 문화예술인들이 김일성주의를 실천해 가는 도구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북한의 문예정책은 이처럼 문화예술인들이 창조자, 전문가로서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집단주의 미학의 기본원리 위에서 오직 김일성과 당의 목표로 단일화시켜 선전선동 및 인민교양, 혁명투쟁화의 무기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북한의 문예정책 기조에 나타난 문예창작활동의 구체적 목표는 ① 당정책 구현 및 선전선동 ② 김부자 및 가계 우상화 ③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④ 정치사상 교양 ⑤ 노력동원 및 노동의욕 고취 등 5개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일찌기 북한은 문학예술에 대해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 있는 무기”²⁾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는 문예의 기능이 예술의 본질인 미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전파, 사상의 전달이란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정치선전의 기능적 논리는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 문예의 가장 본질적 특성은 공산주의적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으로서 이는 ‘원칙’인 동시에 구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북한의 문예는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적 세뇌의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예정책은 수령과 당의 통치정책에 예속된 하위정책

2)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13.

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예정책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침투를 막고 수령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한다.

이 점은 제8차 개정헌법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제40조)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제41조)

북한이 주장하는 문화혁명은 “그 기본업무가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진보적인 문화유산을 소유하게 하며 사회주의 원칙에서 인민교육을 실시하며 낮은 교육을 받은 인테리들을 재교양하며 근로계급출신의 새간부들을 육성하고 전체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체 낙후한 생활양식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기풍을 확립하게 하며 사회주의적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있다”³⁾고 한다.

3) 「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1955, p. 1506.

이와 같이 북한은 문학예술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전파매체로서 가지는 기능, 즉 작품의 형상화 과정을 통해 근로대중을 교양하는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것만이 참다운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근본조건이며, 김일성의 교시는 곧 창작의 기초이고, 창작 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된다.

또한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어 문화도 혁명수행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수행할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도기 단계의 혁명목표는 이른바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라는 두 개의 고지점령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자면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의 수행도 강조된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업”의 하나로,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⁴⁾

결국 북한에서 문화란 독자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3대혁명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정치사회화의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선전에서 학교교육은 물론, 문화예술도 대단히

4) 김정일의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 1. 3.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전제하에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예술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문화는 김일성부자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략함으로써 ‘이념문화’, ‘목적문화’, ‘우상화 문화’로 변질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문화를 혁명투쟁의 무기로 보는 한, 문화는 정치에서 미분화된 상태에 있으며 문화정책 역시 단순히 학술, 예술, 민속, 체육, 언론, 교육 등 어떤 특정 문화적 영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이념문화에 예속되고 이밖에 가족에 관한 정책, 언어 및 국어교육 정책, 나아가 법의식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생활양식을 ‘군중문화’라 하는 것과 같이 군중문화사업은 집단화된 경제생활에 대응한 집단적 문화사업으로 이는 서구사회의 개인주의 및 대중문화와 달리 인간, 사회, 자연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문화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항상 정치적 목적과 결부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둘째, 폐쇄적 문화로서 자유세계에서 오는 이질적인 가치가 사회 내부에 침투하여 정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가능한 서구문물의 유입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셋째, 북한의 문화구조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 이것은 전체주

의적 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문화구조가 단순한 만큼 북한의 문화는 공통적인 영역이 매우 넓다.

넷째, 문화구조가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문화구조는 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성된 것이며, 모든 문화활동은 당의 통제하에 조직동원 된다.

이와함께 북한문화의 기능적 특징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현실생활에 확립시켜 주는 '보장수단'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동시켜 주는 '전환수단'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생산수단에 적응시켜 생산능력을 고양시켜 주는 '촉매수단'이다.

넷째, 주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시켜 주는 '단결수단'이다.

다섯째, 지배세력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자위와 보전수단'이다.

북한의 문화가 이러한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방되며 정책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영역과는 달리 문화영역은 조작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모든 주민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통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당의 통일 단결을 쪼먹고 저해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제때에 극복하여야 하며,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북한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⁵⁾

김일성 우상화가 열기를 더해가는 1970년대에 들어서는 문학 예술 각 부문에 걸쳐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직접 참여가 이뤄지는 등 문학예술 부문 역시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문화예술론’을 저작하여 영화부문의 성과를 올리고 ‘무용표기법’을 창안하고 이 표기법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자기를 개발하였으며, 3대혁명노작을 가극화하고, 태평소, 해금, 피리 등 민족악기의 개량사업을 통해 기존의 5음 체계를 혁신하였으며, 또한 가야금의 현을 늘어 음역을 확장하고 명주실 줄을 쇠 줄로 대체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일의 작품 창작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발표된 대표적인 첫 작품이 「불멸의 력사」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15권의 큰 분량을 이루고 있는 이 총서는 소설 부문, 곧 묘사문학으로 주체사상을 의식화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 예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주민들의 대남 투쟁의 식과 혁명성을 고무·선동하는 일이다. 김일성 자신도 “우리의 문학 예술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할 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한 전체 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후의 체제위기감

5) 김정일, “조선 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조선중앙방송』, 1995.10.5

을 느낌으로서 상대적으로 혁명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는 바,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항일혁명 문학과 수령형상 문학이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휘파람’과 같이 가볍고 밝은 노래 창작도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수용하면서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틈새로 들어오는 이국문화, 서방사조 등으로 문화적 취향이 변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주도의 공식문화는 가급적 외면하면서 비공식적인 문화에 접화되어 이를 유통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문예이론과 창작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 문예이론과 문예정책은 표리관계에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 가운데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種子論),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⁶⁾,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로 설명된다.⁷⁾

6) 김용범, “북한의 문학·예술” 『민주통일론(북한실태)』, 통일연수원, 1993, p. 197.

다시 말하자면 문학예술에서 '주체' 확립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 문학예술을 시대의 현실적 조건과 그 자체의 발전 요구에 맞게 창조, 발전시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학예술을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 역사와 현실에 부합시켜 혁명과 인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무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성격으로 볼 때, 이념적 보편성과 형식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문예이론은 김정일에 의해 종합되었으며 문예창작에 서는 다음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에 김일성부자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창작의 많은 부분이 김일성부자에 대한 칭송과 예찬을 위해 바쳐진다. 둘째, 김일성부자의 절대화·우상화에 따라 그들의 가계(家系)도 신성한 차원에서 묘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김일성부자에 철저히 귀의, 순응, 복종, 실천하는 인간상의 구현이다. 곧, 모든 인간과 사회현상은 김일성부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체의 문예이론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⁸⁾

7)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7.

‘종자론’은 북한이 주체문예이론과 함께 독창적 문예이론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종자론이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서는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좋은 종자를 고르려면 “사물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높은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체문예이론이 미학원리(美學原理)라면 종자론은 예술창작에 임하는 실천강령이다. 여기서 종자란 작품의 사상·예술적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자 북한사회가 공동의 이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일체의 가치체계를 하나의 이데아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자’란 작품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적 요소이자 사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요소 가운데 사상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 종자론이 바로 ‘김일성주의’의 실천이론의 하나임

8)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의 기본』(평양:문예출판사, 1992), p.130.

을 밝히고 있다.

군중예술론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뛰어난 독창적 문예작품은 거의 외부와 소원하거나 고독한 상태에서 창작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군중예술론은 창작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은 문학예술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수준을 전문 작가·예술인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문학예술을 전문예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과정”⁹⁾으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시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¹⁰⁾ 특히 김일성은 “내가 어러번 말했지만 글쓰는 것을 신비화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학과 예술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¹¹⁾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이나 조각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몇몇 사람의 화가나 공예사, 조각가들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들과 농민들도 할 수 있으며 청소년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¹²⁾고 지적하며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광범위한 대중속에서 그들의 발전을 도와준다면 모든 군중

9)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267.

10)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462.

11) 위의 책, 제4권, p.498.

12)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274.

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전분야에서 계급의식과 적개심으로 혁명투쟁을 각오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사상 의식화의 최초과정이자 북한 문화예술의 종자를 받아시키는 힘이 된다.

김일성은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 및 문화예술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제목: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인식단계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철저히 폭로, 인식시켜야 하고, 둘째, 중요단계로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증오하며, 셋째, 결심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¹³⁾

김정일 역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이 사상교양 사업에서 중핵적 요소가 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기초단계, 준비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착취사회,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증오하는 사상 감정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주어야 합니다.』¹⁴⁾

『학생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들이 혁명하려는 사상과 관점, 다시 말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 부시고 사

1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73), pp. 375~378.

14) 「영화예술론」, 노동당출판사, p. 274.

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높은 각오와 강인한 의지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¹⁵⁾

이처럼 혁명적 세계관은 태도변화이론으로 보면 최초 인지단계에서 계급의식과 모순을 인식시키고 감정단계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 대상에 대한 극렬한 증오감을 증폭시켜 혁명의 에너지로 분출시키며 행동단계에서는 결사적인 투쟁을 유발하도록 일련의 인지구조를 변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세계관 형성절차에 있어서 혁명적 문학예술 작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사회의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⁶⁾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은 전문적 창작가라기 보다는 혁명투쟁을 강조하는 김일성의 가치관과 미의식을 인민 대중에 주입시키는 데 대한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북한 문학예술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주었습니다”고 하며 다른 공산권 문예와는 구분되게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혁명적인 것, 계급적인 것, 낡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

15) 정음모,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데 대한 주체의 이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217.

16) 「김일성저작집」 제25권, (노동당출판사, 1983), p. 522.

하는 것, 반제 투쟁 및 근로 인민들의 이익 옹호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⁷⁾

북한에서는 모든 문예의 근본이 되는 창작방법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뿔뿔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¹⁸⁾

17)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104.

18)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364.

제2절 문화·예술분야 활동실태

1. 각 분야별 활동실태

(1) 문학

북한의 문학은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 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⁹⁾

19) 「조선 문학 개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리현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문예학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p. 108-109.

북한 문학의 특징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의 초인적인 모습을 그려내도록 「수령형상창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한 1970년 초반부터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대단원의 운명」등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여 사상 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으로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던 명작들을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던 바, 이는 지난날 친일지주와 소작인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에서 나아가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모범적, 긍정적인 인물로서의 노동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외부의 변화상이 다소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없으나 줄거리가 남녀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권력 승계에 따른 후계체제 강화의 필요성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작품들의 3,000여편이나 창작되었고 김정일 지시에 따라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묘사했다는 전 15권의 혁명역사소설 「불멸의 역사」가 집필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김부자가게 우상

화, 당정책 선전, 체제찬양을 하는 한편, 각종 문학상을 제정하여 인민학교 학생에서 근로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창작하게 함으로서 정치사상적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다.²⁰⁾

(2) 음악 및 가극

북한 음악의 창작과 표현의 기본방침은 한결같이 사상교양과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가운데 첫째,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며 서양음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둘째,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하며 셋째, 기악보다는 성악에 비중을 두고 넷째,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시하는 데 있다.

또 북한은 음악을 우리와는 달리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반 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양식을 따르는 국민가요식의 민요조 선율을 띄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멜로디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가요에서는 당정책선전 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등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이다.

화성은 극히 단조로와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고 지루하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 김영규, 「북한의 문학·예술」, 통일연수원, 1991, pp. 22~32.

최근에는 현대음악에 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동시에 합주토록 함으로써 악기개량에 관심을 보여 주는 한편 이와함께 전통음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극은 음악과 무용, 무대미술이 합쳐진 종합예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바다」를 시초로 하는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 하라」, 「금강산의 노래」 이상 5대 혁명가극의 공연이 주종을 형성한다.²¹⁾

외국의 주요인물을 초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5대혁명가극 중 한 두 개를 관람시킬 정도로 무대장치의 대형화, 연속적 군무의 전개, 대규모의 합창 등 순수성과 호소력은 차치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리얼리티와 긴장감을 전달해 주고 있다.

(3) 무용

북한의 무용이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용이 가극의 한 부문으로 전락되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예술 분야에 비해 가장 활동이 미미하고 음악, 재담(코메디)과 겹들여 종합공연할 때 작은 부문으로 삽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무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의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

21)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899.

나 무용형식에서는 육체의 아름다움, 율동미, 시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우아하고 섬세한 율동미보다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동작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사랑하는 4대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이라고 불려졌던 현대무용이다.

그러나 15년만에 완성하였다는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1987년)」은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동작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시키면 어떠한 무용동작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무용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4) 미 술

북한에서는 미술분야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념비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

다²²⁾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예술부문 중에서도 당의 관심이 높다. 미술의 특성이 직관물을 통한 의미의 전달에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정치사상교양과 노력 동원 등을 목적으로 선전화(포스타), 우상화 동상 조각, 혁명기념물 건축 등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술작품은 대부분 김일성교시에 따라 창작된 것으로 미술에 대해 김일성이 지시한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명의 길과 인민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형상화해야 하고 착취사회의 본질을 실감있게 보여주어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되 사회주의사회에서 누리는 행복을 알게 할 것, 조선을 바탕으로 하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것, 공장과 농촌 등 현장에 직접나가 노동자들과 일을 같이 함으로써 당이 요구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체험적 창작을 이루어낼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미술의 중점분야를 조선회화와 조각에 두고 작품소재는 노동 장면, 항일혁명 활동, 김부자 우상화, 반제 사회주의 찬양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방지하고 당의 방침을 보다 깊게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소품보다는 김정일지시에 의해 수백 개의 대형벽화가 제작되는 등 대작 중심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집체

22)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에서의 김일성 교시, (1966. 10).

적 창조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술가 동맹에서 서예부문이 독립된 분과위원회로 결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서예를 과거 양반 전유물로 대하는 인식이 있는데다 정치선전면에서 이용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5) 영화 및 연극

북한에서는 북한을 대표하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영화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을 대표하는 「조선 중앙연감」에서 「영화연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호소력과 전파력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 부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영화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²³⁾라고,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하고 정서교양도 하여야 합니다”²⁴⁾라고 하며 지적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1973)에서 사상적 알맹이(종자)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

23)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p. 274.

24) 「조선영화」, 1992년 1월호, p. 54.

보다는 감정의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자본주의의 “연출 제일주의”를 배격하고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배우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일정한 세계관과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감정, 생활체험 등을 미적, 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노동계급적 예술가로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중시하여 한편의 영화속에는 반드시 3~4곡의 주제가를 넣음으로서 신과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²⁵⁾

북한 예술영화는 예술성·오락성 보다 매우 단조롭고 도식적인 경향이 농후한 정치선전·선동차원의 내용으로 당이 정해준 영화주제로서 김부자 우상화·충성심 제고, 주민노력 동원, 한·미 모략비방, 인민군 투쟁 찬양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래 북한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전형이 시대적 공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지시아래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제한적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누우쳐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주태마로 변화되었다.

1960년대 천리마 운동 이후 대형화,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 시

25) 『북한영화의 이해』, 통일원, 1992, pp. 6~9.

리즈화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였다. 신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 및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시 50부작을 목표로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97. 12 현재 42부작 개봉)을 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중에는 신상옥, 최은희씨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해아의 밀사」 등 7편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정치성, 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한편 북한에서는 연극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연극인들은 연극보다는 가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북한의 연극은 무용,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연극도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 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일당」 등이 대표작으로 이들 연극들은 모두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으로서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라 한다.

1978년 6월 14일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

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새롭게 「성황당 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 됨에 따라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의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제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 시켰다고 선전한다.

2. 문예단체 현황

북한의 문학예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직·운영하며, 노동당 정책과 유일사상에 충실하도록 하는 직업 예술인 단체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다. 이 조직산하에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 예술가 동맹이 있다.

문예총은 내각 문화성의 행정적 관리체계하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모든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문학예술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 등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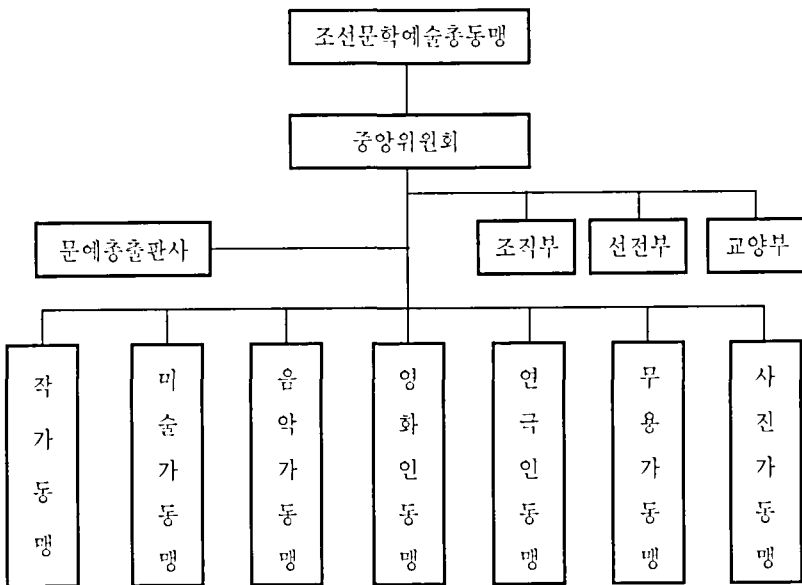
문예총의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문학예술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훈과 역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

된다.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를 비롯하여 1급에서 8급까지 구분되며 급외 등급을 합쳐 모두 11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는 국가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으며, 최고 명예인 국기훈장의 급수가 인정되어 인민예술가는 국기훈장 1급, 공훈예술가는 국기훈장 2급에 해당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들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

<표 7-1>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구



※주 : 각 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에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 지부가 있다.

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문화단체로 환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중 더러는 후보 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급 공연단체로는 1946년에 평양가극단으로 창립된 만수대예술단(약 300명), 그 이듬해 창립된 인민군협주단(약 180명), 70년대 초반에 창립된 피바다가극단(약 380명)과 모란봉예술단에서 개칭한 평양예술단(약 300명)이 있다. 이색적으로 교예(서커스)를 예술의 차원까지 올려 평양교예단(1946년 창설, 180여명)은 전속극장(평양교예극장, 1,800석)을 가지고 있으며 1987년 몬테카를로 국제마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 중앙과 각시도별로 연극단과 예술·가무단이 각각 편성되어 있다(<표 7-1> 참조).

제3절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

1. 전통문화와 공산주의적 도덕

북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해 이념적 해석을 가하여, 소위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라는 새로운 도덕관을 내세워 왔다. 그들은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통해 전통적 도덕관을 철저히 내격하고, 이를 반동적이며 반사회적인 낡은 도덕이라 매도하였다.

공산주의 도덕이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다. 나아가 “공산주의 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²⁶⁾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 품성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원칙, 당성, 인민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도덕개념과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 비록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강조하지만 50대 이상의 세대에는 아직도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상부상조의식이 남아 있다.²⁷⁾ 또한 전통습속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일반주민 사이에서 은밀히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따지거나 관상이나 손금, 궁합을 보는 행위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신세대의 경우는 전통적인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김일성부자를 따르는 충성심이 더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청소년 사회에도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원산, 함흥, 남포 등 비교적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등을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외부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생활양식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점은 바로 민족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문화

26) 『조선말 대사전』, 1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72.

27)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19.

건설이론은 주체의 혁명이론을 구성하는 인간개조이론과 사회개조이론이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에 맞는 주체적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또한 주체적 문화는 인민대중이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민족적 형식을 준수하는 가운데 낡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 인민적인 것은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따라 문화의 확산, 접촉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금세기에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보존시키려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시켜 조화점을 찾으려는 바, 민족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면서 시대에 맞게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상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고전문화 유산은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 두기만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²⁹⁾ 근로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계속 이어받아야 하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거나 공산주의문화를 건설하는데 별로 의의가 없는 것들은 보존해 둔 경우도 있다. 판소리처럼 반인민적인 양반계급이 즐기는 것은 보존해 둔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아예 흔적을 없앤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심청전

28)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7.

29)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로동당출판사, 1992), p. 59.

에서 궁중을 미화시키는 내용들은 ‘혁명에 해롭고 반동적인 것’으로 미리 삭제해 버린다.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6.19) 제하 글에서 “우리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족문화와 관련하여 단군능을 발굴(1993)하고 최고인민회의(93.12.9)에서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과 관련한 의제를 채택한 것, 그리고 동명왕릉과 개성의 왕건릉을 개축 복원한 사업 등을 의미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수집, 복원 및 보존관리, 교육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를 결정한 바, 이는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정통성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결정은 김정일이 남한문화와의 교류와 경쟁을 의식하여 추진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김정일은 “남조선과 문화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민요발굴사업과 연구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³⁰⁾

30) 김정일,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51.

제4절 북한 문화·예술의 한계와 과제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미를 추구하고 교육은 지덕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이나 교육이 모두 정치사상적 교화(indoctrination)에 치중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교육과 사상교양학습을 통해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그들의 문화구조와 문예활동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데 선차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폐쇄적·맹종적 인간을 육성하는 규범으로서, 비민주적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으로 집약되는 공산주의 문화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교화 기능, 문화의 선전 기능은 김정일체제가 이

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1980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북한은 교육과 문화예술에서 ‘주체형의 인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교육과 문화예술을 개편했다. 그러나 ‘전인민의 공사주의화’라는 목표하에 추지해 온 획일적인 정치교화와 사상혁명으로 인해 북한동포의 사상과 가치관, 의식구조 및 행동양태는 우리와 크게 이질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질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폐쇄성·교조성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경우 역시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양식도 상당히 변모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이질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습성에는 5천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만의 특유한 기층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서 공통점과 동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서로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단초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민족성원으로서 공통분모를 찾고 인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이념과 정책, 우리 문화예술의 기준과 구조와는 상이한 그들의 기준과 핵심구조까지 성찰한 연후에 민족동질성의 회복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인간본성에 배치되는 적개심 위주의 인지구조 형성, 정치교화를 통한 사상혁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반동사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부르주아 사상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인간개조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내부에 비인간적 행태에 저항하고 있는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있더라도 개인주의의 추구는 사상혁명으로 막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 욕망이다.

정치교화의 결과로 나타난 획일적인 인간형과 그 한계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북한체제의 변화양상과 그 진전 속도를 보다 정확히 내다보는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이한 정치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남북간의 물리적 장벽만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 필승불패’, ‘오직 한길 따라 충성과 효성’, 「강성대국」 등의 구호를 내걸고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세계사적 추세인 변화의 물결을 완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북한의 문화예술과 교육정책에 분명히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1989년 평양축전은 북한 주민들과 문화계 인사들에게는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아직은 소규모 이나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도 상호간의 입장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 교육·문화예술 이질화의 극복은 그들의 정책

적 변화를 감안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문화예술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파행적 갈등관계와 왜곡된 가치관을 녹여 민족적 본질에 토대하고 그 에너지를 용솨음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예술 형성의 중요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통일문화는 통일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문화와 교육은 통일을 이룬 다음 민족성원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90.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 김문현,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90.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정일, 『주체문학론』, 로동당출판사, 1992.
-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리현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문예학1)』,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리현순, 『사회주의 영화예술 건설』, 문예종합출판사, 1998.
-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 _____,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방법론 연구』, 1998.
-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 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임채육, 『통일문화와 북한문화의 가치성』, 문화방송, 1998.
- 전용선, 『북한사회주의 교육이론 연구』, 한누리, 1993.
- 정윤모, 『혁명적 세계관을 세운 데 대한 주체의 이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통일원, 『북한의 문학예술』, 1991.
- 한중모 외, 『주체의 문예이론의 기본』, 문예출판사, 1992.
- 황정규,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VIII. 북한의 사회구조

제1절	· · · · ·	321
계층구조		
제2절	· · · · ·	339
범죄와 일탈		
제3절	· · · · ·	346
사회통제		

요 점

-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라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970년에 완성된 3계층 51개 부류를 근간으로 하여, 직장배치, 교육기회 제공, 의식주 분배 등 생활기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북한에서는 90년대 들어 뇌물수수, 물자 유용 등 권력형 범죄와 절도, 암거래 등 생계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집단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따르는 등 청소년 일탈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북한에서는 사회통제를 위하여 집단주의와 주체사상 등 이념 주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개 처형과 강제수용을 통한 공포정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과 행정기관이 전통적 사회통제 기관이었으나, 최근에는 군사기관까지 동원되고 있다.
-

제1절 계층구조

사회계층이란 물질적 혹은 상징적 보상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의미한다. 계급이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 다만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지위(소득이나 부)를 계급, 정치적 지위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직업)를 지위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 북한의 계층

(1)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분류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조사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실시된 출신성분 구분 작업과 그 내용을 연대순으로 제시하면 <표 8-1>과 같다. 북한 당국자는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는 계급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4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그리고 67년 4월부터 70년 6월 사이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 사업', '외국귀화인 및 원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제일교포 요해사업', '주민증 갱신사업' 등 필요시마다 꾸준히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 '주민재등록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3년간에 걸쳐 작성한 '3계층 51부류'의 분류는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격이다. 3계층

<표 8-1>

북한의 주민성분 조사사업 연혁

시 기	구 분	내 용
.	중앙당 집중 지도사업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66. 4-67. 3	주민재등록 사업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 성분 분류(직계3대·처가·외가6촌까지 내사)
67. 4-70. 6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주민재등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72. 2-74	주민요해사업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과약,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80. 1-80.12	주민중검열 사업	김정일 지시로 공민중 대조·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80. 4-80.10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 사업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81. 1-81. 4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83.11-84. 3	주민중 갱신사업	공민중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자료: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 275.

51부류는 전주민을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사회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북한 주민의 성분분류 및 대우는 <표 8-2>에 제시되어 있다.

〈표 8-2〉

북한 주민의 성분 분류 및 대우

계 층	부 류	대 우
핵심계층 (핵심군중)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테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애군인 등 12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군 간부 등용 • 타계층과 분리 특례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계층 (기본군중)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 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 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화·방탕한자, 집대부 및 미신승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복잡한군중)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 신자, 출당자, 철직자, 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래, 중노동에 종사 •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 제재·감시·포섭 대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강제이주 격리 수용 - 감시: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집중적 교양 •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주: 북한이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자료: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 276.

① 핵심계층(핵심군중):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계급이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포함하여 약 2십만 명(북한 인구의 약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와 나머지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핵심군중들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을 소유할 수 있다.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며 봉건적 세습신분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동요계층(기본군중): 동요계층은 북한체제의 중간계층으로 핵심계층이나 적대계층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대보건혜택도 불충분하며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③ 적대계층(복잡군중): 적대계층은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계층은 대학진학, 입당, 군 장교 등의 자격이 원천

적으로 박탈된다. 북잡군중 가운데서 특별독재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주민과 격리된 산간지역이나 탄광지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결혼 및 출산제한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계층에게도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는 불리한 정책이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북잡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사회안전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하에 실시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대개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아무 절차도 없다. 사회안전성과 국가안전보위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사회안전성은 주민들의 부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따름이다.

(2) 직업별 · 소득별 계층분류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른 계층 분류가 체제 유지와 김일성의 권력 장악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직업별 · 소득별 계층 분류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도 분단 이후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사회에서 산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사회로 급격히 변동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방 당시 도시 인구가 약 11%에 불과하였으나, 전후복구사업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1970년에는 이미 과반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지

금은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¹⁾ 또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 6·25전쟁 이후의 농업협동화 등으로 농민중심의 계급구조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급구조로 이행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 소위 ‘3대 혁명’의 일환으로 기술혁명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주민의 직업별 분포는 <표 8-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46년 협동농장 노동자(농민)가 약 74.1%였으나, 최근에는 2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사무원의 비율은 1946년 6.2%에서 1987년에는 16.8%로 증가하였다.

<표 8-3>

북한 직업구조의 변화

(단위 : %)

구 분	1946	1953	1960	1987
노 동 자	12.5	21.2	38.3	57.9
사 무 원	6.2	3.5	13.7	16.8
협동농장노동자	-	-	44.4	25.3
기 타 ²⁾	81.3	75.3	3.6	-

※주: a)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식 직업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1946년 자료는 개인농민 74.1%와 수공업자 등 7.2%를 포함하며, 1953년은 개인농민 66.4%와 기타 8.9%를 포함하고, 1960년은 협동단체 가입 수공업자 3.3%를 포함한 수치이다.

※자료: 1946-1960년간은 『조선중앙년감』, 1961, 1964; 1987년은 N. Eberstadt and J.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1)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건국대 출판부, 1997).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농민이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업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자가 완만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사무원(서비스직)의 완만한 증가 현상은 북한 직업구조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경우 직업 분배가 인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즉, 맑스의 이론에 의하면, 상품의 가치는 오직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며, 서비스직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본다.²⁾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전주민의 노동자화’를 추진하였으며, ‘놀고먹는’ 서비스직의 팽창을 억제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 등 이른바 ‘근로인테리’라는 신중단계급의 지위가 사회주의 이념상 핵심계급인 노동자, 농민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직업별 분포(<표 8-4>)를 보면, 지식인 출신이 1967년 21%, 1977년 46%, 1986년 52%, 1998년 59%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자의 비율은 1967년 64%에서 1998년 31%로 점차 하락하였으며, 농민의 비율 또한 1967년 15%에서 1998년에는 9%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소득분포 자체는 비교적 평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편의시설 기관 종사자가 약 70-115원, 광부, 제철·제련공 등 노동자가 130-140원, 그리고 내각 상(相)급이 430-5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은 사적 소유를 인정

2) 김일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테리’를 ‘놀고먹는 사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8권』.

〈표 8-4〉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구성

구 분	노동자(%)	농 민(%)	지식인(%) ^{a)}	계(%)
제2기 (1957)	39.1	31.6	29.3	100.0
제3기 (1962)	56.1	16.2	27.7	100.0
제4기 (1967)	63.9	15.3	20.8	100.0
제5기 (1972)	64.1	13.3	22.6	100.0
제6기 (1977)	42.8	11.0	46.2	100.0
제7기 (1982)	34.6	10.2	55.2	100.0
제8기 (1986)	36.4	12.0	51.6	100.0
제9기 (1990)	37.0	10.4	52.6	100.0
제10기 (1998)	31.3	9.3	59.4	100.0

※주: a) 노동자와 농민을 제외한 지식인·상공인·기타 직업.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소득은 바로 임금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를 보고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택, 식량, 의복 등 생활필수품 또한 직종과 직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에서는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다.³⁾ 따라서 기호품이나 사치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상위 계층일수록 크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 주민의 계층별 소득과 의식주 분배는 「제9장 북한주민의 생활」 참조.

(3) 성별 계층

맑스, 엥겔스, 레닌 등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남녀간의 불평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맑스는 남성은 사유 재산을 배경으로 생산수단이 없는 여성을 억압·착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출현하였으며, 잉여의 발생과 사유재산 제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가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레닌은 좀더 급진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이 가능하며, 이는 여성들이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당국자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였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분단 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여,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 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여 왔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 볼 때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하여 여성 노동력 비율이 1957년 20%, 1964년 39%, 1976년 48%, 1991년 4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⁴⁾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중 여성이 점유하는 비율이 20%(1998년)로서 남녀평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과 임금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해볼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주체형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동원된 결과일 따름이다. 해방과 동시에 ‘조선민주려성 동맹’이 창립되었고, ‘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상 운동에 북한 여성이 대거 동원되었다. 경제적으로 북한 여성은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산업예비군’의 역할을 하였다.⁵⁾ 60년대와 70년대 경기가 비교적 좋았을 때는 여성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였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경

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615쪽. 북한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87년 현재 북한여성 노동자는 7백 15만명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절대수에 있어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N.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4, No.2 (1991), pp. 18-44 참조.

5) 이금순, "북한의 성별 불평등 실태와 전망," 『통일연구논총』(민족통일연구원, 1995) 4권 2호, 197-228쪽; 남인숙,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북한학보』(1996) 20집, 185-236쪽.

제가 침체되고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운영되고, 여기에 여성 ‘유휴노동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른바 ‘밥공장’이나 ‘반찬공장’ 또는 탁아소와 유아원 증설은 여성해방이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 여성은 성별 직종격리(sex segregation of occupation), 즉 직종에 따른 성별 노동력 분포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여성들은 주로 농업(전체 노동력의 55.5%)과 경공업(전체 노동력의 70%)에 집중되어 있다.⁶⁾ 이는 북한여성들이 방직공장 수리공, 양수기 운전공, 관리일군, 공장·기업소의 통계원, 부기원, 경리원과 같이 ‘여성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여성의 직종’에 집중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하급학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학교 80%, 고등중학교 35%, 기술계통 학교 30%, 대학교 15% 등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노동당 중앙위원의 경우 1990년 현재 6명으로 전체의 3.3% 밖에 안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990년 제9기)은 20.1%이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설회의의 경우 2명(13.3%)에 불과한 실정이다.⁷⁾ 내각의 경우 정권수립 이후 상(相)급 이상이 260명이었으나 이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6) 성별 격리와 관련된 자료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614-617쪽 참조.

7) 제10기(1998.9) 대의원의 남녀수와 비율은 제9기와 동일하다.

성별 임금의 차이는 자료의 제약상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경공업과 인민학교 교수, 보육원, 교양원, 간호사 등의 임금이 북한 임금 체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노동인 경우도 남녀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노동(가사노동) 또한 거의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여성은 공식적으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환동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상당한 경우 가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 밖에 나가 하소연해도, “여자가 뭔가 잘못 했겠거니”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북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참다운 인격체로서 사회참여를 장려하였다기 보다는 노동력 착취와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였으며, 북한사회에서 전통적 가부장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계층 이동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 이동이라고 한다. 수직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을 지칭하며, 수평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간 또는 직업간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 중 북한 주민이 성취한 계층 이동은 주로 수평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재편되었다. 특히 해방 당시 거의 3/4 을 차지하던 농민이 약 1/4로 감소하고 대신 노동자와 사무원이 각각 57.9% 와 25.3%로 증가하였다.⁸⁾

그러나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북한 주민의 계층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 이동은 성분 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되며, 거주 지역과 직업은 주로 성분정책에 의하여 배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는 70년에 완성된 '3계층 51개 부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이기는

8) N. Eberstadt and J.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하지만 충성심이 강한 경우 자녀에 한해 기본계층은 핵심계층으로, 그리고 적대계층은 기본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분정책의 경직성 내지 불합리성 때문에 복잡계층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왔고, 1970년대부터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끊임없이 융통성 있는 성분정책의 적용을 강조해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은 동치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하였다.⁹⁾ 인덕정치란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실시해나 가는 것”으로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는 광폭의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과 수령을 믿고 혁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의 품에 안길 수”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급적 토대를 따지지 않고…기본군중뿐 아니라 가정 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분에 따른 북한의 차별적인 계급정책은 북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계층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

9) 『로동신문』, 1993, 1. 28.

발전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급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 국군포로 등은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불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구조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 목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 계층구조의 특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계층구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출신 배경이 계층적 지위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회 성원은 출생 후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향상되거나 하락한다. 이와 같은 계층적 지위를 '성취지위(achieved status)'라고 하며, 유연한 계층이동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개방체제(open system)'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계층구조와 계층이동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인위적 계층구조의 결과일 따름이다. 즉, 상위 계층일수록 고등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

한 상위계층일수록 지위가 높은 직업을 배정 받으며, 또한 소득수준도 높게 된다.

둘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체제(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핵심적 지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지위는 후손에게도 전이된다. 반면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적 능력에 관계없이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본계층이 핵심계층으로 또 적대계층이 기본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성'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북한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력 동원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강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공적·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 여성은 공식적 활동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통적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여성보다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엄격한 성분 정책상, 북한 여성은 혼인에 의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결혼도 비슷한 성분을 가진 남녀간에 이루어지며, 성분이 나쁜 여성은 남편의 직장배치나 진급시 이혼당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 빈농, 고용농 등에게 무상분배 하였으나, 중국적으로 국유화(집단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등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기관의 통제하에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제2절 범죄와 일탈

범죄를 규정된 법을 벗어난 행동으로 정의할 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탈행동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때 사회 규범 자체에 대한 정의가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일탈 행동 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전통적 가치나 규범, 그리고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동과 직장 선택, 배급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문을 당과 행정기관에서 관장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일탈행동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 상 신문·방송 등에도 북한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범죄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개량화 작업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탈 현상이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신문·방송 등 매체의 논조와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1.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

북한의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형법 제1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혁명성(사회주의 혁명)과 계급성(노동자 계급)을 내포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북한의 범죄를 분류하면 <표 8-5>와 같다.

2. 최근의 범죄와 사회일탈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富)의 축적을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권력형 범죄) ③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풍조(경제범 또는 생계형 범죄) ④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유약(청소년 일탈)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¹⁰⁾ 이는 범죄와 일탈행동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중 정치범은 사회통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권력형 범죄, 생계형 범죄, 그리고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부하직원과의 성관계, 물자 유용 등이 포함된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를 일컬어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제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 무단 이동,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당·보위부·안전성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10)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1998, 62권; 범죄는 그 주체와 대상, 방법, 동기와 결과에 따라 복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분류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량 도둑은 경제관련 범죄 또는 일반범죄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나라의 쌀독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을 통하여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권력형 비리는 마스크를 통해서도 간접확인되고 있다.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되고 있다”거나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되는 해독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은 북한에 권력형 범죄가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2) 생계형 범죄

생계형 범죄는 절도, 암거래, 노동자 태업, 매매춘 등 생계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범죄로서, 최근 악화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쩍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훔치는 물건은 술, 담배, 에틸알콜, 사카린, 신발, 속옷, 쌀 등 일상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전화용 동선을 훔쳐 강냉이와 교환하기도 하며, 연유·석탄·시멘트 등 연료 및 자재를 완성품이든 반제품이든 가리지 않고 유용한다.

북한 당국자도 “국가사회재산을 아끼지 않고 망탕 다루면 아무리 물자를 대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물자 절취자를 ‘반당분자’로 규정하였으며, “국가재산을 탐오·낭비하는 것은…당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엄중한 해독행위”라고 경고한바 있다. 특히 1997

년 8월에는 「난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라는 포고령(사회안전성)을 선포하여 곡식 절도, 양곡 거래, 양곡 탐오약취 및 허실 행위를 금지하고 “엄중한 자는 총살에 처한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절도 행위를 쉽게 근절할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 국자는 공장·기업소 종사원을 교육할 때 “공장 물건을 훔치는 자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3) 청소년 일탈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는 모방심리를 통하여 또래집단간 급속히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9년 개최된 ‘평양축전’을 계기로 청소년들 사이에 자본주의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주의권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자아상실’을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이를 급속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는 주로 집단주의 사상이완과 자본주의 국가형 유행, 그리고 폭력, 폐싸움, 강·절도, 부녀자 희롱 등 성인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이완되면서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조되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년동

맹'조직 이탈자가 급증하자, 조직이탈자를 대상으로 '청년돌격대'를 조직하고, 건설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조직사상카드', '조직생활 유리자 도표' 등을 작성하여 집중관리하기도 한다. 『청년전위』(1998. 3.3)는 대학생들이 "초급청년동맹 생활총화에 빠지고도 개별총화를 하지 않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아침독보에도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잦다"며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 이완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형 생활양식은 복장, 머리모양 등 외형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청바지와 바지치마, 풍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거나, 장발 등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반지를 끼거나, 문신('떡물로 살 속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는 것'), 눈화장('눈 둘레를 색소로 물들이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혁명가요를 개사-예를 들면 "사회주의 제일 좋아"를 "외국제가 제일 좋아"로-하여 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가요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간부 자체를 중심으로 은밀히 불려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 <사랑의 미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등이 인기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문화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증가하게 되자, 북한에서는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유행'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르조아 잡벌레, 황색병균이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공세를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3절 사회통제

북한에서는 사회통제론을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적인 통치체제를 미화 분석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고안해내는 부르주와 사회학의 반동리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¹¹⁾ 여기에는 불평등과 ‘사적 소유’가 사회 불안의 요인이며,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통제의 필요성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적 자질에 의한 사회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성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체제구축과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체제는 너무 많은 적을 양산했다”.¹²⁾ 따라서 북한 주민의 저항과 이탈

11)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1985, 355쪽.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는 끊임없는 체제 동조 이념 주입 그리고 공식적 사회통제를 들 수 있다.

1. 체제 동조 이념

(1) 집단주의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사회통합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는 당의 혁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주장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김정일은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¹³⁾

“집단주의”는, 북한에서 발간된 『철학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¹⁴⁾ 또한 최근 개정된 헌법(1998.9)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

12) 서재진, “남북한 계급구조의 변화와 사회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경남대출판부, 1996), 93쪽.

13)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8, 97쪽.

14) 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539쪽.

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이념은 정치경제적으로 ‘군중로선’으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적 미풍’으로 나타난다.¹⁵⁾ 이른바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그리고 최근의 ‘새로운 천리마 속도, 강행군 속도’운동 등 군중노선은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념적 동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을 장려하고,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분조관리제 도입과 텃밭 경작 허용 등 개인주의적 요소를 도입 또는 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 정신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노동신문」(1998.2.3.)이 사설을 통해, “우리는 사소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집단주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주장은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지금도 집단주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부단히 집단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그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15) 이은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법문사, 1993); 김병로·윤미숙,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구조와 위기관리 메커니즘,” 『통일문제연구』(1997), 9(1): 243-267.

집단주의적 가치는 유아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의 어린이는 태어나서부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2년 후 모두 탁아소에 수용되며,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다음 <표 8-6>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집단화하기 위한 조직체의 일부이다.

<표 8-6>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가입대상	조직규모	구성방법·활동	창립일
소년단	어린이: 7-13세	약 30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 청년동맹의 지도, 집단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a)}	청소년: 14-30세	약 60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직장단위 •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6. 1. 17
민주여성동맹(여맹)	여성:31-60세	약 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 11. 18
농업근로자동맹(농맹)	협동농장원:31-65세(여:60세)	약 1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 	1946. 1. 31
직업총동맹(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 (여:60세)	약 16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 9개의 산별직업동맹 •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 지도 	1945. 11. 30

※주: a)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이 1996년 1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

※자료: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 84.

(2) 주체사상

북한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주체라는 개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명제의 핵심 용어로서, 다분히 맑스의 사적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연장하여 인민과 당과 수령간 관계를 보면, 당은 인민을 대표하여 결성되고 정책을 수립하며, 수령은 당을 대표하여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즉, 인민-당-수령 체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령과 당은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끊임없이 변질·왜곡되고 급기야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당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게 된다.¹⁷⁾ 따라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며, 북한 주민은 수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

16) 『김일성 저작집 29권』, 282쪽. 주체사상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제2장 북한의 정치」 참조.

17)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신문을 예로 들면, 북한 주민은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령도에 따라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하며, “김정일 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신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기르자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3) 최근의 변화

최근 ‘민족’이라는 개념과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이념으로 부상하였다. 김일성도 90년대 들어 “나는 공산주의자일뿐 아니라, 민족주의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김정일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주요 이념적 요소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입시킬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설과정 중 단 한번도 문제를 야기한

18) 『로동신문』, 1998년 2월 16일과 6월 19일.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중국적으로 ‘대동강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대동강문화는 1998년 3월 11일자 노동신문에 등장한 후 1998년 전반기에만 노동신문에 4차례에 걸쳐 해설 기사를 실었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싹튼 유서 깊은 력사의 성지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처럼 해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민족을 ‘김일성·김정일 민족’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이 출생한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며, 1999년은 주체88년이 된다.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로서 1997년 제정하여 1998년 첫 공식행사를 가졌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 어느 체제-자본주의 체제든 동구 사회주의체제든-보다도 우월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이를 대표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통제기관

북한의 사회통제는 전통적으로 당,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악화되고 사회체제가 이완되면서, 군이 직접 사회통제에 가담하게 되었다.

(1) 당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권력기관이며 북한 사회의 전분야를 조직하는 중추기관이다. 모든 기관에는 당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나간다. 일반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당의 하부조직으로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가 있고 말단에는 당원 5~30명까지 통제하는 당세포가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2) 행정기관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기관으로는 국가

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들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른바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⁹⁾ 보위부는 또한 김정일 호위, 각급 행정기관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의 감시, 북송 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들의 동태 감시는 물론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체제 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 분야의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²⁰⁾ 보위부는 중앙으로부터 도(직할시)·시(구역)·군 및 리·동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상주시키며, 기관·기업소는 물론 군부대의 중대단위에도 요원을 파견한다.

사회안전성은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 보호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또한 개개인의 신원조사를 하고 사생활을 감시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1977.12)에서 주민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신설한 사찰 기관이다. 이 기관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준법분위기를 확립토록 하는 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다.

19) 국가안전보위부는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을 위해 사회안전부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승격시켜 국가정치보위부 확대·개편했고, 1982년 4월 국가보위부로 개칭했으나 최근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20) 북한연구소, 앞의 책.

이 외에도 북한 주민의 생활은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된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규제토록하는 통제 제도이다. 5호담당당제는 1958년 7월부터 7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인민반(도·시)과 분조(농촌)담당제로 그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인민반은 통상 20~30세대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를 하며,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 안전 사고 방지 외에도 목욕, 이발 등 시시콜콜한 일상 생활까지 통제대상으로 삼고 토론과 자아비판을 하게 한다.

(3) 군사 기관

김일성이 “총창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주장했듯이, 군사기관은 당의 지도 밑에서 대남적화 임무를 전담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과 사회일탈의 증가 등 체제 위기 요인이 증대되자, 군대가 직접 사회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군 요원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도 군 요원을 상주시키고 대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7년 5월부터는 인민무력성이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21) 북한연구소, 앞의 책, 233쪽.

고 있다. 이는 당국자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조치로서 민간 기관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3.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을 통한 사회통제

북한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듯이, 공개처형과 강제수용 등 공포정치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북한에서는 1970-92년 동안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적어도 23명이 공개처형 되었다.²²⁾ 특히 90년대 들어 식량난이 악화되고 사회주의이념이 약화됨에 따라 일탈 행동이 급증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1995년 말부터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 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처형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고, 1997년에도 서관희 노동당 농업담당비서가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통제구역’(특별독재대상구역)은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통한 사회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수이다.²³⁾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처형하거

22)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97-12.

23) 통일원, 「95 북한개요」, 183-284쪽 참조.

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 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 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활동과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함과 때를 같이하여 비판자와 정적들을 숙청,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는데, 현재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10여개의 수용소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통제구역은 <표 8-7>과 같다.

통제구역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 위반자, 북한 탈출기도자, 일부 남북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종파 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저명인사 가운데는 1984년 정부전복혐의로 김창봉, 김봉학, 김도만 등이 수용되었으며, 이용무, 유장식(전 당중앙위 후보위원), 박금철(전 부수상 및 정치국원), 허봉학(전 대남공작기관 책임자), 김광협(전 당서기국 서

<표 8-7> 북한의 통제구역(정치범 수용소)

지 역	위 치	관 리 부 서
함 경 북 도	청진시, 회령시, 화성군	국가안전보위부
함 경 남 도	단천시, 요덕군, 덕성군	"
평 안 남 도	개천시, 북창군	"
평 안 북 도	천마군	"
자 강 도	동신군	"
계	10개소	20여만명 수용

※자료: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 284.

기) 등도 통제구역에 수용되었다.²⁴⁾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인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6시 작업장 출근, 7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이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대다수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뱀, 개구리, 쥐, 그리고 새들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영양보충 육류라고 한다.²⁵⁾

특별독재대상구역 내에 또다른 수용소인 구류장을 설치하여, 규율을 어긴 자, 도둑질한 자, 성행위를 한 자, 그리고 보위원이나 감독의 지시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군인들의 격술훈련 모형이나 사격목표로 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이 중 이용우는 1977년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후 1988년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복귀했고, 1998년까지 교통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25) 북한연구소, 앞의 책, 249쪽.

수용소를 탈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4m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곽에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장경비원이 경비견을 대동하고 부단히 순찰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면될 때까지 무한정 갇히게 된다.

참고문헌

-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건국대 출판부, 1997.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12, 1997.
- 김병로·윤미숙,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구조와 위기관리 메커
니즘”, 『통일문제연구』 9(1): 243-267, 1997.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해당 권.
-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8.
- 남인숙,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북한학보』 20: 185-236, 1996.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해당 일자.
『로동신문』, 해당 일자.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1995.
- 서제진, “남북한 계급구조의 변화와 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출판부,
1996.
- 이금순, “북한의 성별 불평등 실태와 전망”, 『통일연구논총』 4(2):
197-228, 1995.

-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987.
- 조선중앙년감, 해당 권.
- 『청년전위』, 해당 일자.
- 통일원, 『'95 북한 개요』, 1995.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 Eberstadt, Nicholas,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4(2): 18-44, 1991.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Ⅸ. 북한주민의 생활

제1절	365
주민생활 규제원리	
제2절	367
소비생활	
제3절	389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제4절	402
가정생활과 의례생활	
제5절	418
종교생활	

요 점

-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개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면보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 개개인의 생활 자체가 개인의 가치판단 및 선택에 의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회주의원리와 김일성주의에 규제되어 있는 것이다.
 -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더 이상 과거처럼 철저하게 통제·감시받지 않는다고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해지고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 서서히 침투하면서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경제생활의 경우 배급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주민들 개개인간의 사적 교환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지향적인 경제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20%대로 낮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집단주의적 직장생활방식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적 노력영웅이 되려는 노동의식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
 - 가정생활의 경우 사회주의 이념과 달리 가부장적 가정윤리가 가정생활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도 이에 종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종교생활의 경우 최근 종교가 대외선전을 위해 어용적으로 부활되고 사회통제가 이완됨에 따라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종교욕구가 다시 살아나는 반면 생활고로 미신이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제1절 주민생활 규제원리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본경제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집단적 소유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물자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처음부터 계획된 물자를 배급받고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물질적 욕구는 물론이고 문화적·사회적·종교적 욕구 등 모든 욕구충족이 당과 국가가 정해 놓은 원칙과 조건에 의해 규제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에는 사회주의적 기본경제법칙 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도 있다. 그것은 당과 국가, 수령을 유기체적인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고 인민정

권을 한 가계내의 호주(戶主)로 정의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 및 욕구 자체는 수령과 인민정권의 영도에 따라야 하고, 인민정권과 수령은 주민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리(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이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간존중의 사회주의사회다”라고 하며 개인의 자율적 삶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개개인의 생활과 욕구는 최상급 호주인 수령의 계획과 지도에 따라야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규범원칙과 실제 생활현상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의식 및 가치관에도 공식규범과 다른 개인주의적인 사적 규범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공식적·제도적으로 주장되는 주민생활실태와 아울러 실제적으로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민생활실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소비생활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크게 4가지 양태로 요약된다.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이 그것이다. 90년대 들어와 북한은 계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NP도 계속 하락하여 1997년 현재 741달러로 추정되는데,¹⁾ 이는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1) 그런데 북한은 '97년 6월 27일 유엔분담금 조정을 위해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들의 '95년도 1인당 GNP가 239달러로 '69년의 911달러에서 무려 73.7%나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우선 북한 외교부가 '96년 국제농업개발기금에 통보한 719달러라는 수치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함께 제출한 북한 원화표시 GNP수치가 '91년 이후 자신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한 재정규모보다 적게 나타나 있다.

1. 소득수준

주민들의 실제 개별소득수준은 공식적인 분배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분배형태는 1차적 분배형태와 2차적 분배형태를 보인다. 1차적 분배형태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로 임금형태로 지불되는 분배형태이다. 그것은 <표 9-1>의 계층별 임금수준으로 나타난다.²⁾

이 표를 보면, 일반사무직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60원에서 100원 정도이고, 당·정무원·군간부·인민배우들의 임금수준은 최저 200원에서 500원으로 계층별 임금격차가 최고 10배를 보이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임금수준은 대체적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중에서도 위험한 직종의 노동이, 또 사무직보다 일반노동직의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임금을 차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차적 분배란 국가세출을 통하여 보조금지불형태로 각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소비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 주택, 의료, 식량 등에 대한 지불을 말한다. 북한은 “노동자들은 먹고, 입고, 집을 쓰고 사는데서만 한해 동안에 매 세대에서 1,300~1,500원의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100~125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³⁾라고 주장하고

2) 이 표를 북한이 92년 12월 13일 발표한 생활비 평균인상을 43.4%를 적당하게 재구성하면 그 편차가 85원~500원으로 나타난다.

3)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1972

있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NP 중 이 부분은 1/3정도만 차지한다고 한다. 2차적 분배가 갖는 적극적 의미는 소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

〈표 9-1〉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당·정기관	- 당·정무원부장 ^{a)} - 정무원부부장, 도 인민위원장 - 도 인민위원회부위원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300~350원 250~300원 170~200원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지배인 - 1~2급 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150~200원
노동자/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 일반 경노동자 - 사무원	90~100원 75~ 80원 70~ 80원 60~ 70원
교 원	- 대학교원 - 일반교원	200~250원 80원
군 장교	- 장성급 - 영관급 - 위관급	250~400원 120~215원 84~110원
서비스종사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 의 사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50~ 60원 120~250원 200~500원

※자료: 통일원, 『'95북한개요』, 1995, p.286.

※주 a): '98년 9월 헌법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부장이 상상으로 바뀌었으나 이전 자료이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각하여 <표 9-1>에 나타난 소득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제도적으로 300원의 임금을 받는 부부장급 배우자는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게 하고, 70원의 소득을 받는 일반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70원의 임금을, 190원의 임금을 받는 대학교원의 배우자에게는 65원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득의 평준화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계총소득(가장소득 + 배우자소득 + 미분가자녀소득)면에서 소득격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이렇게 제도상 평준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경제생활 수준 자체도 현실적으로 평등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민의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들이 국가의 배분에 따라, 심지어 최고통치자의 “시혜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배급됨으로써 실제로는 극심한 소비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 영도에 따라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함 정도가 정확히 일치되어 있다.

2. 소비수준

북한사회에서 주민의 소비수준은 개인소득 및 임금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수준은 전적으로 개인소득 수준에 달려 있지만, 북한처럼 물자가 항상적으로 부족

한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에서는 어떤 물자라도 어느 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식생활 실태

북한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식의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공급등급을 매일공급대상자, 1주공급대상자, 2주공급대상자, 인민반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한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식량배급표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한다. 구체적으로 식료품배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2>에서 보면 모든 주민에게 식량을 계층이나 지역간 차이 없이 동일하게 1인당 700g으로 배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백미와 잡곡의 비율면에서 차이를 보여 특권층은 9:1내지 8:2이지만, 일반주민들은 2:8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받는다. 특권층은 잡곡을 일부 배급받는다 하더라도 옥수수가 아닌 밀가루, 콩, 팥 등 고급 잡곡을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옥수수로 받는다. 일반주민들

<표 9-2>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당성분	공 급 량	공급처	비고
매일공급 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 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서비스요원 등	쌀 700g(백미10:잡곡0) 잡곡 4가지, 육류 15~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공급 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 원부총리, 제1호 부 고급장교, 장성급장 교 등	식량 700g(백미3:잡곡3) 잡곡 3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 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 비슷)	당재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공급 대상자	정무원부장, 부부장,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정무원각부처 국장, 과장, 항일투사유가 족, 영웅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7:3 또는 5:5) 육류 1kg~6kg, 생선 1kg~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카드 제시(1호~ 4호 공급소)	관직 소유자
인민반 공급대상자 (15일마다 배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g(2: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에 1kg(실제 3~4개월), 육류 명절 특별배급(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 없는 일반 인민

※자료: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94, p.151 수정 정리

은 그나마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700g을 전부 받지 못했다. 700g에서 월 4일분의 애국미·전쟁비축미 등을 공제했기 때문에 실제 배급량은 547g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유치원 이하 아동 및 무

직자는 300g, 인민학생, 고등중학생, 대학생은 각각 400g, 500g, 600g을 배급받지만 체제유지에 절대적인 특수군인들은 800g을 받는다.

배급하는 식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 가격(쌀은 kg당 8전, 잡곡은 kg당 6전)을 적용하고 있다. 부식도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다. 주요 공급품목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부들은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필수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ℓ,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배급할당량의 50~70% 정도만 공급받으므로 생일잔치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국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 소금은 8월 초 양배추가 출하될 때 1인당 1kg, 10월말 김장 때 2kg이 공급되는 것이 고작이어서 가장 품귀현상을 빚는 부식이다. 배추·무우는 김장 때 가구당 60~70kg 공급받고 모자라면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한다. 생선은 월 1인당 1kg(명태), 돼지고기·닭고기는 연 5회 가구당 1kg을 배급받지만, 대부분 김부자 생일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공급받는다.

그러나 '95년도 이후부터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러한 공식적이

며 제도적인 배급체계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평양 이외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거의 몇 달씩 식량배급이 안되거나 중단되기도 하여, 일부 지역별·계층별·연령별로 통제된 기아(controlled famine) 현상⁴⁾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나마 식량사정이 나았던 평양마저도 97년의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경우 1인당 하루 배급량이 100~200g, 엘리트노동자의 경우 200~300g 정도로 줄어들고, 정규군인들에 대한 배급도 일선 전방부대군인 및 특수부대군인들을 제외하고 하루 두끼의 밥과 한끼의 죽으로 실시하는 ‘2+1식단체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전년도보다 증가된 식량 증산으로 인해 98년도에는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평양주민의 경우 1인당 350g씩 거의 한달 분량을 제대로 공급받고, 지방주민들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한 달에 보름내지는 열흘 정도 1인당 평균 120g씩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해진 식량난은 이제 북한고위 집권층도 공공연하게 언급할 정도로 되어⁵⁾ 기관별·직장별·행정단위별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에 의해 배급제도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⁶⁾

4) 외부에 알려진 북한 기아현상은 ‘절대적 기근’(absolute famine)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WFP대변인이 1997년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프래드 에커드 유엔사무총장이 1997년 10월 15일 밝혔듯이, 1997년도의 부족한 식량절대량(약 200만톤 정도)이 1996년도에 이어 1997년, 1998년에도 외부로부터 대량 지원되어 거의 채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아는 배급체계의 붕괴 및 왜곡, 극심한 수송난, 관료들의 부패로 한정된 지역 및 계층·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1996년 12월 7일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행한 비밀연설에서 “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쌀은 공산주의”라는 구호와 ‘농업제일주의정책’을 내세우고 ‘하루 두끼 먹기운동’, ‘하루 한끼 먹기운동’,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 ‘여름에 남새밥(야채밥) 겨울에 김치밥 먹기운동’ 등을 전개하거나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⁶⁾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96년부터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고하기도 하고 98년도에는 이모작실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황식품인 감자·고구마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식량배급제에 포함시키고 심지어는 도토리까지도 식량개념에 집어넣기도 하며 장마당에서 식량거래를 묵인하는 등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⁷⁾ 농업생산방식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앞의 북한의 경제부문에 있어서 지적한 바와 같이 99년도에도 약 160여 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식량기구는 사람의 하루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곡물소비량이 400g(1천 2백 칼로리)이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곡물소비량이 이에 못미치고 있으니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⁸⁾ 유엔아동기금이 1996년에 발행한 백

6) 대용식품으로는 옥쌀, 혼합곡수, 냉동강냉이곡수, 남새밥, 현채, 숙도전가루, 콩깻묵식품 등이 권장되고 있다. 「내외통신」, '96. 5. 2, 1003호

7)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1996년도에 식량부족 해결의 방침으로 3개월은 국가가, 3개월은 직장 자체에서, 3개월은 수입 및 원조로, 3개월은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8) WFP, UNICEF, EU에서 파견된 18개팀 전문가들이 '98년 11월 하순경 3주동안 북한 8개도를 돌며 7세이하 어린이 1,800명의 영양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세이하 아동의 62%가 발육부진 상침이었다고 한다.(1998. 12. 10, 뉴욕타임지)

서에 의하면,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인구 1천명당 31명꼴로 남한보다 3배나 높고 모성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70명꼴로 남한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도 영양 결핍으로 청소년들의 발육이 부진해지자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3~4cm를 낮춘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주민들의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북한당국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마늘섭취를 장려하거나 토끼·닭·염소 등 ‘꿀먹는 집짐승 기르기운동’을 벌여 다양한 단백질섭취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2) 의생활실태

북한주민들의 의생활실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이라는 구호 아래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79년 4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린 후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없는 옷

9) 경희대 조여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하루 두끼를 먹는다고 상정하여도 북한주민들의 평균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남한주민의 6.9%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남한의 남성은 하루 290g, 여성은 131g의 동물성식품 섭취를 하는 반면, 북한의 남성은 20g, 여성은 33.8g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 당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헤어 스타일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그 뒤 「평양시 피복연구소」 주관하에 춘추의류전시회·평양시 옷전시회 등이 열리다가 95년 4월에는 「세계체육문화축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패션쇼까지 열렸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은 8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전제아래 의복의 1차적 기능(몸의 보호기능)만 강조하다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의 제2차적 기능(멋의 창조)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¹⁰⁾

한 탈북 여성(96년 6월에 귀순)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여성들이 ‘삼각머리’, ‘채양머리’, ‘오사리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여성들은 머리에 신경을 못써 6개월에 한번 정도 미용실에 들러 커트나 파머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의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려든 1만 5천여명이나 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옷차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0) 「천리마」나 「조선여성」같은 잡지에 피부미용 정보, 화장법 등이 실리거나 심지어 헤어스타일링 무스에 대한 안내가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또 북한은 '87년 북일 합작의 '너와 나 미용연구회'와 화장품 공장을 설립해 다량의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초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 중심이고 색조화장품의 생산·유통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이 80년대 들어 다양한 양복·양장차림으로 변화하고 유행도 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주로 평양 등 대도시 특권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차림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김일성민족’다운 옷차림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초반까지 권유되었던 색깔있는 옷차림에서 다시 단색 위주의 옷차림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다.¹¹⁾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사상의 침투를 우려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허용되었던 다양한 머리모양도 철저히 단속하여 여성들의 경우 피머를 해도 되지만 뒤머리를 길게 하거나 풀어 헤치는 스타일은 안되며, 남자고등중학생은 앞머리가 2~3cm를, 대학생의 경우 3~4cm를 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어겼다가 ‘불량청소년 그루빠’에 단속된 청소년은 3~6개월씩 ‘노동단련대’에서 교화훈련을 받게 된다.

공식적으로 식량과 마찬가지로 의류역시 배급제로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급되는데, 그 실태는 <표 9-3>과 같다.

· 중앙공급대상인 당·정간부들에게는 기성복이나 양복지가 공급되고 최상위 간부급에게는 고급모직물이 지급되지만 하위로 내려갈수록 반모직, 대마직 등 질의 차이가 나게 공급되고 있다. 중앙공급대상자는 지정된 상점에서 양복, 모직물 심지어 모피까지 살 수 있는

11) '97년 7월 「로동신문」에서 “옷차림에는 민족성, 애국심 그리고 인민들의 강인한 성품들이 잘 나타난다. 모든 인민들은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우아하면서 소박한 옷, 조용하고 집잡으면서도 쾌활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9-3〉

계층별 의류배급체계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가 격
4호대상 이상 간부	연 1회 2년 1회	양복지 1벌 기성복 1벌 내의류 무제한	반액공급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1벌	임가공급 또는 의류특배
학 생	연 1회	교복 1벌	임가공급
노 동 자	연 1회~2회 연 1회	작업복 1벌 런닝, 내의 3매 양말 4주	무상공급

※자료: 통일원, 『95. 북한개요』에서 정리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공급대상인 노동자들에게는 ‘로동용 물자’로서 ‘주체직물’이라 부르는 포플린, 광목, 스프 등의 직물과 작업복이 임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사무원, 부양가족, 농민들에게는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각자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국영상점이나 직매점보다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의복외에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구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이를 암시장에서 몇배의 가격을 주고 사서 쓴다고 한다.

(3) 주생활 실태

북한에서 주택은 사회주의 헌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0.3%(4호 주택의 경우)의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다. 주거지역은 직위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되고, 주택형태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하에 주민동원의 용이성, 노동력의 조직화·통제 등을 위해 주로 집단거주형 형태를 띠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일자형으로 인건된 단층주택, 연립주택(2·3층), 문화주택, 한옥식 구옥, 하모니카 아파트¹²⁾ 등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초고층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다. 획일적 주택정책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규격화·집단주의화하여 주민들의 개성적인 주거욕구를 치음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계층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사정을 보면 <표 9-4>와 같다.

전체 주택에서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특호·4호가 15%, 중급 계층이 거주하는 3호·2호 주택은 25%,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은 60%를 차지한다. 당·정 고위간부급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 1인당 거주공간은 13.2㎡이지만, 일반주민들은 각각 22.3㎡,

12) 하모니카 아파트란 1950년대에 설립된 조립식 아파트로서 각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 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단일 복도를 따라 당 한칸, 부엌 한칸이 달려 있어 나온 이름이다. 원래는 회랑식 아파트라 부른다.

〈표 9-4〉

계층별 주택배급체계

구분	주택형	가구구조	직급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다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온방	중앙당부부장 이상 정무원부부장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수세식변 소, 냉온방, 베란다,	중앙당 과장급, 정무원 국장이상,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방2개, 부엌, 창고	기업소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 부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 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방1~2개, 부엌, 단층, 2~3층 인립주택 방2, 부엌, 창고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원

※자료: 통일원, 『'95북한개요』.

4.5m²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식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일반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거주공간은 7~8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은 쉽게 주택을 배정받는 반면,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율은 68%이지만 일반 주민들의 주택보급율은 평균치에 못미치는 57% 정도로 알려져 있다.¹³⁾ 주민들은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

13) 선한승,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공보처, 1994년,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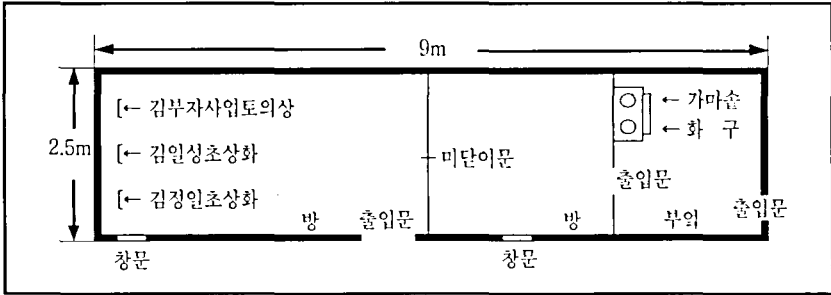
하고 입주증을 받기까지 보통 1~3년이 걸린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4~5년이 걸려야 주택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부모 집에 같이 살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살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주라는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87~93년) 동안에 23~30만호의 주택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5만세대 건설에 그침으로써 주택의 질적 문제 못지 않게 양적 문제도 안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음성적인 매매거래가 목인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세칸짜리 집을 지닌 사람이 돈(신의주에서는 7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을 받고 한칸짜리 집과 바꾸거나, 땅은 국가 것이지만 처음부터 개인이 거주하여 '개인집'으로 인정된 개인집을 국가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마음대로 파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집'을 거래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받지 않고 개인끼리 합의본 것으로 보고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식량난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주택을 팔고 식량을 구입하는 행태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그림 9-1>을 보면 방 2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데, 난방 및 취사연료는 대부분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그림 9-1〉

일반 노동자주택의 내부구조



※자료: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제2권, 자료원, 1995년, p.260

※주 : 1)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소씩 설치

2) 거주 공간은 약7평 정도됨($(9 \times 2.5) \div 3.3 \approx 6.8$ 평)

3) 이 그림은 김만철씨가 진술한 방 2칸, 부엌 1칸짜리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구조이다.

나오는 폐열로를 사용하는 난방은 대도시의 고층아파트나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이 경우 가정연료 역시 배급제에 의해 할당받는데, 구공탄세대의 경우 월 60~70장, 석탄세대의 경우 연 2~2.5톤을 공급받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물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보통이고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농가의 경우는 공동수도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세간살이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

봉기·사진기(혹은 녹음기)·선풍기(혹은 직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 및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구 사용이 최소화되어 있다.

3.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subsistence material) 확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수적이다. 기초 생필품의 무상 및 염가 배급은 북한당국에서 볼 때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이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 생필품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국가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별적인 개충별 물자의 배급체계는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볼 수 있었던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특권층의 전횡을 가져오고 일반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요소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와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은 위로부터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 순응에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

는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도 사적인 '2차경제' (the second economy)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부차적으로 존재한다. 텃밭·부업밭의 경작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약간의 물품들을 서로 물물교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농민장'¹⁴⁾이라 하여 일부 협동농장에서 남은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상설화하여 매일 열리다시피 하거나 다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나진·선봉같은 경제특구에 좌판 상행위가 '가내방' (가내작업반 가판대)이라 하여 7~8%의 수수료를 받고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간한 소토지경작,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 확대 등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던 것을 '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교역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였는데,¹⁵⁾ 경제난으로 접경지

14) 농민시장은 1950년 북한당국이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1-11-21일에만 허용한 것으로 협동농장원 농민들이 생산한 돼지고기, 참깨,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자유판매가격에 의해 매매한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사정에 따라 농민시장의 규제와 허용을 되풀이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5) 현재 북한-중국간 변경무역은 양국 정부가 정한 11개의 통상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1류 통상구는 집안-만포, 삼합-회령, 단동-신의주, 도문-남양이고 2류 통상구는 권하-원정리, 고사자-셋별, 개산둔-중성, 남평-노덕리, 승선-무산, 장백-혜산, 임강-중강진 등이다. 주민들 사이에 보따리 형태로 이루어지는 변경무역은 연간 약 3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97년 북한-중국간 공식무역액이 6억 5천5백629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변경무역이 공식국가무역의 약 46.2%정도로 엄청난 비중임을 볼 수 있다.

역 농민들이 물물교환형태의 구상무역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예 나진·선봉-훈춘간 접경지역인 원정리에 국제교역시장을 개설하고 완전히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북한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시책은 이미 주민들간에 만연되고 있는 사적 거래를 할 수 없이 양성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전주민의 상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존자료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필품이나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고 구입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생필품은 물론 개인이 만든 떡, 술, 엿, 사탕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래되고 있으며 단속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¹⁶⁾ 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물론 당간부까지 망라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

16) 전문적인 보따리장사꾼들은 주로 노동불능자, 퇴직자, 가정주부들이 추축을 이루지만, 이 중에는 뇌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받은 자와 휴가·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약 70~80만명선으로 인구의 3~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 십배에 이르고 갈수록 인플레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 실정은 <표 9-5>와 같다.

<표 9-5>를 보면 생존에 필요한 쌀, 의류의 가격은 대부분 평균 80원 수준인 노동자 한달 임금보다 아주 높다. 이렇게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비화폐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폐는 휴지조각이고, 재화가 화폐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강냉이

<표 9-5> 주요 생필품들의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비교

구 분	품 목	단 위	국정소매가	'92년 암시장가	'97년 암시장가
식료품	쌀	1kg	8전	20원	80~200원
	돼지고기	1kg	7원 60전	60원	300원
	두부	1모	9전	3원	18원
	달걀	1kg	22전	3원	17원
일용품	치약	1개	1원 70전	7원	
	양말	1족	1원 50전	5원	100원
	운동화	1족	2원 60전	35원	300~500원
	양복	1벌	120원	350원	
기호품	소주	1병	2원 40전	2원 40전	40원
	담배(평양)	1갑	1원 60전	1원 60전	35원
공산품	컬러TV	1대	1,350원	2만원	3~4만원
	라디오	1대	100원	750원	
	녹음기	1대	100원	800원	6천원~7천원

※자료: 통계청, 『남북사회상비교』, 1996년 11월에서 주로 정리

※주 : 1) '97년 암시장가격은 최근의 탈북자들 증언에 의함. 암시장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는 국제화폐다”라고 할 정도로 강냉이가 무엇이든 다 교환할 수 있는 물품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암시장규모의 이와 같은 확장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집단주의보다 사적 동기에 의해 영위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경제를 대체하기보다 배급기구의 마비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 수준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다. 물론 배급체계를 위협하는 암시장의 성장은 북한당국에 대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북한당국은 선전매체물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상 침투반대투쟁’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주민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의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사상교육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 하겠다.

제3절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북한주민들에 있어서 직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거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가능한 인력은 거의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8% 수준으로 추정된다.¹⁷⁾

이 수치는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 미국 등 5개 선진국가 및 남한(95년 62%)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준으로서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체제가 최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7)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1996, p.27. 북한에서는 노동가능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보는 우리와 달리 16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가능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72.5%로 나타난다.

1. 직업의 선택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극대화와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경제전체적으로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노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고, 개인의 직업선택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계획방침보다 당성과 출신성분이다. 어떤 부문에 얼마 만큼 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세있고 사회적 신분상승과 관련된 직업은 출신성분 기준에 따라 선택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능력, 학력, 소질, 희망 등은 이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에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능력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 탈북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의 선택에서 약 46% 정도가 상부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10% 정도만이 개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개인은 배치된 직업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배치 후 직장이 동이나 변경에서도 계속 관철된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11년간의 의무교육이 끝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만 16세부터 이루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은 직업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대개 적성에 맞는 일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취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진로는 당의 계획과 출신성분, 당성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첫번째 고민으로 꼽는다고 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군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졸업학생 중 5%밖에 안된다. 대학은 능력외에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진학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당성과 출신성분이 개입된다.

따라서 ‘직통생’(고등중학교 졸업후 직접 고등교육기관으로 진급한 학생) 이외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거나 취직을 하는데, 직장은 시·군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시·군내 기업소나 공장, 서해안 간척지, 탄광, 협동농장 등으로 배치한다. 물론 2년간의 직장경력 과 3년간의 군대경력 이후 대학입학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든 ‘뒷받침’(친척 중에 당간부가 있거나 아버지가 돈이 있거나)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소수에 불과하다. 일단 직장이 배치되면 시·군 노동과에서 파견장이 나와 데려간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경우는 이와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우선 전문학교나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시·군보다 높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주로 기사장이나 작업반장 일을 담당한다. 대학졸업생들의 경우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한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학 당위원회에 내각 5사무국의 지도원들이 와서 개별 학생들을 면담하고 희망사항을 묻지만, 대부분은 이미 졸업생들의 출신성분, 학업성적, 사상, 재학중의 정치활동 등을 참작하여 각 도별 직장배치를 한다. 만일 당의 배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지만 당간부 친척이 있을 경우 좋은 자리로 배치된다.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지적된 도(道)에 갈 때까지 알지 못하고, 해당 도에 가서야 알게 된다.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10조는 “국가는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엘리트노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2. 근로환경 및 휴가제도

(1) 노동자의 분류

북한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사무원) 모두 통틀어 근로자라 부른다. 모든 근로자들은 각 사람의 직장생활내용, 즉 노동경력, 기술

자격, 표창, 휴가관계 등을 모두 기록한 노동수첩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우선 노동의 '질'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함은 '기능급수'에 따른 분류라 한다. 기능급수는 각 노동부문별, 직종별에 따라 최고 8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9-6>과 같다.

<표 9-6> 기능급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단순노무자	일반노동자	무기능자
기 능 공	특정작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숙련·경험을 가진 노동자	1급-8급 기능급수
기 수	고등기술학교·고등전문학교 졸업생 또는 기수검정시험 합격한 기술자	자격시험 취득
기 사	독자적인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주로 대학졸업생)	자격시험 취득

노동의 '양'에 따른 분류는 '로동분류'에 따른 분류라 한다. 이것은 노동강도에 따른 분류로서 규정상 보수 및 식량배급 등에 차등을 두기 위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기능급수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동분류'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는 <표 9-7>과 같다.

〈표 9-7〉

노동분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분 류	대 상 자	대우(식량)
1부류 노동자	조립 등 단순 노동자	1일 700g
2부류 노동자	각종의 노동자(전체 노동자의 70%)	1일 700g
3부류 노동자	건설 등 중노동자	1일 800g
4부류 노동자	기관사, 광부 등 위해노동자	1일 900g
특부류 노동자	직접 건강에 해로운 위해노동자 (용해공, 염산제조공 등)	1일 백미900g

(2) 노동시간 및 휴가제도

북한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원칙으로 함을 사회주의노동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경우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모든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표 9-8>은 북한노동자 및 주부인 여성노동자, 학생들의 하루 기본일과표이다.

<표 9-8>을 보면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로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라하여 정치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작업총화 후 학습시간이 보통 2

〈표 9-8〉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표

구분 일과	노동자 사무원	학 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	06:50-07:0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장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 (수·목) 생략
독 보 회	07:00-07:30		
작 업 준 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점 심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침	13:00-14:00		
오후작업(수업)	14:00-18:00	14:00-16: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작 업 총 화	18:00-19:00	16:00-18: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노력동원, 군사훈련 및 조직활동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주부 18:00-19:00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넘다고 할 수 있다. ‘곽밥’(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평균 10시간인데, 이나마도 작업량의 초과달성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작업량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되어야 할 것이 늘 강조되기(사회주의 노동법 제20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외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시간외노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지시된 계획량을 다하지 못하면 기본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추궁을 당하고 김정일생일 때 특별선물을 배정받지 못한다. 초과달성했을 경우 기본임금에 가산된 추가임금을 받는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보다 출퇴근시간이 빠르고,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에 2번 각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사회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종업원 100명이면 결근 0명, 노력동원 0명, 환자 0명, 무단결근 0명식으로 보고되고 장기 무단결근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휴가에 대해서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매달 생리휴가와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보조금이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준다. 때에 따라서는 7일, 12일의 보충휴가와 ‘사절’이라 하여 상사의 허락받고 법정휴가외의 무급 개인휴가도 쓸 수 있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이러한 휴가외에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도 주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휴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로 정해 있는 것

〈표 9-9〉

북한의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 기 휴 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 충 휴 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 외 7~12일	"
산전·산후휴가	임 산 부	150일	"
임 시 휴 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 기 간	무급휴가

※자료: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98.

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예컨대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강원도는 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휴가와 휴일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 계획의 완수와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으로 인해 휴가를 쓰지 못하며, 1년에 한두번씩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속도전전투” 같은 때는 휴일도 없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이러한 노동실태도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율이 한달 평균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 및 기업소내부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각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계와 노동자들을 놀릴 수밖에 없자, 통일거리 건설이라든가 사리원칼리비료 연합기업소 건설, 원산-금강산간 철길공사 같은 대형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려 하고 강제휴가를 권장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유희노동력의 존재는 자본주의사회 입장에서 볼 때 잠재실업이나 위장실업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을 제로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실업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북한은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적 열의’와 ‘애국심·충성심’으로 ‘주인답게’,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에 있어서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도덕적 동기 유발에 의한 노동의식의 제고는 북한이 '60년대까지 양적인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주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초창기 혁명적 열기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이 굳어지면서 정

치도덕적 유인에 의한 노동의식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미래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의욕을 갖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날림 노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주어진 ‘노르마’(개인노동할당량)에 대항하는 작업장내 사보타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¹⁸⁾

이러한 점은 협동농장원에서도 발견되는데, 협동농장 일보다 개인의 텃밭이나 소토지에서 일할 때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실제 이곳에서 나는 소출생산성이 3배나 되어 최근 북한 당국이 할 수 없이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런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상금이나 장려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한에서처럼 일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할 정도이다.¹⁹⁾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총량적으로 볼 때 북한노동자의 평균생산지수는 1986년을 100으로 놓을 경우 1994년도에 68.7로, 약 31.3%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²⁰⁾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18) 북한 원산농업대학 강사를 지낸 이우홍 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도 느릿느릿하고 얼빠진 사람들 같은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동호,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년, p. 158.

19) 통일연수원,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년 5월, p. 61.

20)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05.

임금만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부업이나 개인장사에 몰두하기 위해 과거에는 ‘혁명적 열정’으로 인해 자진반납했던 휴가를 적극 이용하려 한다고 한다. 기업소·공장들도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외화벌이사업’에 더 몰두하여 한달 노임보다 더 많은 수입획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96년 8월호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배치받은 청년들이 작업반에 나오지 않고 노동을 태만히 하자 직장·작업반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요원이고, 그 다음이 기술자, 교육직, 군인, 체육연예인, 상업일꾼, 농수산업이었다. 노동자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는 달리, 육체노동직이 경멸되고 정신노동직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요즈음은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엘리트계층들의 경우 당·정업무직종보다는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을,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 운전기사, 사진기사, 군대후방일꾼, 식량배급소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모공(어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현재 ‘사회주의적 노력영웅’이

되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직 국가노동정책 및 노동조직체계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직 국가의 노력동원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이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아직 크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한 노동이동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주민들은 이제 다만 “숨은 영웅을 따라 배우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장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눈뜬 정도인 것이다.

제4절 가정생활과 의례생활

1. 북한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1) 1950년대까지의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

사회주의사상은 기존 사회를 사적 소유제에 입각한 신분사회내지 계급사회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봉건적인 가부장질서가 가족제도로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서 사적 소유제의 철폐, 계급관계의 철폐와 더불어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철폐, 성차별의 해소, 여성해방이 동시에 요구된다. 레닌은 일찍이 “여성을 공적 서비스와 정치생활에 끌어내지 못하면 민주주

의는 물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 소련과 중국은 초창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당시 이러한 구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혼인법과 남녀평등법의 제정, 육아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시도하고 ‘가족소멸론’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이후부터 다시 가족강화책을 시행하여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의 의의를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당시 까지 유지해 왔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게 발견된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산과 토지의 동등분배권, 일부다처제와 매매결혼의 금지, 공창 및 기생제도의 금지 등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철폐하였다. 당시 가족정책의 목적은 무엇보다 봉건적 가족제도의 물질 기반을 와해시켜 봉건적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데 있었다. 그 이유는 봉건적 가족제도가 친족·문중·혈연 중심으로 개인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사회나 국가보다 가족공동체에 놓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연대감은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 60년초에 이르기까지 가족안정화정책을 시행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가족정책의 기본 구도는 맑스-엥겔스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2) 1960년대의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북한사회주의 이념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가정의 혁명화’, ‘여성의 혁명화’, ‘여성의 노동계급화’ 라는 구호 아래 가족을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정책을 전개하였다. 가족소멸적인 맑스-엥겔스적인 가족이념을 탈피하고 주체사상 이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가족강화책을 전개한 것이다.

‘여성의 혁명화’와 ‘여성의 노동계급화’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나온 것이다. 당시 북한은 탁아소·보육원의 설립, 가사노동의 사회화, 즉 공동세탁소, 밥공장, 반찬공장, 공동식당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최근 경제난으로 이런 시설의 효과가 크진 않지만, 탁아소·보육원 설립만은 구소련보다 월등하게 구축되어 1995년 12월 현재 3만 7천여개로 약 350만명의 취약전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식량난으로 탁아소·보육원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아가 급증함에 따라 고아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가정의 혁명화’는 사회전체의 혁명화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교양기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70년대에 공식적으로 김일성주의가 등장하고 부자세습체제가 공식화되면서부터 핵심적인 가족정

책의 이념으로 변모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 자체가 ‘가족주의적 국가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논리로서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당을 호주로, 수령을 어버이로, 인민을 수령의 자녀로 하는 ‘국가주의적 가부장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출발점을 가정에서부터 혁명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족은 세대를 재생산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가 아니라 당과 국가조직의 세포단위로 분명하게 규정된다.

(3) 1970년대 이후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

70년대 이후 김일성주의와 부자세습체제의 확립을 위해 전개된 북한의 가족정책은 소련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강화책이지만, 이들 나라보다 더 혈연적 유대관계와 효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봉건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구축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의 강조는 초기 여성해방을 지향하였던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창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당시에는, 기존의 낡은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인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노동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여성노동력의

사회화는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김정숙의 항일경험담과 같은 ‘혁명적 여성상’을 강조했다. 여성들의 권리 역시 남녀평등법에 의거한 ‘법적 권리’로 강조하였고 ‘은혜’나 ‘시혜’로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²¹⁾

그러나 김일성주의가 체제의 이념으로서 확립되면서 ‘공산주의적 어머니’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적 어머니’란 노동현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녀와 남편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어머니 ‘안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위대한 수령”을 길러내고, 사회주의혁명 가정을 육성한 ‘강반석녀사 따라 배우기 운동’이 여성들에게 독려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김일성의 음덕에 감사하고, 이에 충성하는 혁명가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길러낼 의무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여성관이 다시 살아났으며, 여성들에게 이중의 짐이 주어졌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힘차게 투쟁하는” 노동전사이면서, “알뜰한 주부이며 자애로운 어머니”가 곧 바람직한 여성상이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이념은 퇴색하고 전통적 가치관과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부장이념이 새로운 논리로 되살아나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 모두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일정권이 새롭게 출발한 직후인 98년 9월 28일 61년이래²²⁾ 37년만에 제2차 어머니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첫째 여성들의

21)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2년, p.131

다산, 둘째, 자녀들을 김정일의 충신·효자로 육성하기 위한 가정별 교양사업 강화, 셋째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 넷째 가정차원에서의 군지원사업 강화 등을 적극 강조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강조된 내용들은 사실 그 목적이 경제난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청소년계층들의 부랑(꽃제비) 및 일탈현상 증대,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동력동원문제, 재정난으로 인한 군지원의 곤란 등을 말단사회조직인 가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가정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해소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내용들은 60년대 초반 강조되었던 사회주의혁명의 세포조직으로서의 가정 개념을 김정일 충성의 기층단위로 재개념화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맞게 ‘가정의 혁명화’ 개념을 새로이 조명한 것으로서 여성들을 이전보다 더욱 더 봉건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속박당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육아의 사회화라는 면에서 제도상으로는 성차별이 없고 평등한 여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없는 개인숭배와 장자에 의한 세습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강화되고, 여성은 국가조직내에서 상위 가부장이념과 가정내의 하위 가부장이념이라는 이중적인 억압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은 사회적 노동과 가

22) '61년 열렸던 제1차 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은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연설에서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으로 준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양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당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경제적으로는 제1차 7개년계획이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적극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 시점이었다.

사노동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노동의 질곡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생활과 여성의 위치

(1)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의 형성은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한 가족법 제9조에 의해 법정결혼연령을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71년 6월 21일 개최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 연설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시한 뒤 사회관습적으로 만혼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남자는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여자도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자의 경우 28~29세, 남자는 30~31세로 결혼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80년대 이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여자는 23세, 남자는 25~26세가 결혼적령기로 치부되어 관행화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도 시대사조를 어찌할 수 없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한다.

배우자 선택 방식은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율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실질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전통적 관념, 사회주의이념, 현실적인 요소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한다. 전통적 관념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이상적인 배우자 여성을 “마음씨가 좋고, 소박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 공대 잘하고, 아들·딸을 잘 기르고 갈라진 민족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경우 “양심껏 일하고 사려깊으며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상적인 남성배우자로 여긴다.²³⁾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라서는 일생을 동지로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 품모를 갖춘 사람을 이상적 배우자로 여긴다. 현실적 요소는 학벌, 직업, 가정성분, 도시거주 등이 주요 선택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대체로 여성들은 당·정관료이며 학벌과 성분이 좋아야 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주요 기준이지만, 남성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당원이 아니어도 출신성분이 좋고 생김새가 그만이면 된다.

그러나 최근에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이념적 기준, 즉 ‘붉은 가정의 탄생’을 위한 동지들의 만남이라는 기준은 서서히 퇴조하고 현실적 기준이 우세해 가는 추세라 한다. ‘뒤틀돈’이 잘생기는 서비스직 및 상업요원, 대외사업종사원 등이 남녀 모두에게 인기라는 것이다.

가족의 해체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

23) 남인숙,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1993년, p. 242.

에서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956년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하여 합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면 시·군재판소에 50원짜리 수입인지를 첨부한 이혼청구서를 내면 되는데,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계속할만한 정치·도적적 기초를 상실한 경우로서 사회와 혁명에 이로운 때는 용인하고 해로운 때는 부인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반당분자, 반혁명분과, 종파분자,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이다. 그 다음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행, 건강상의 이유이다. 이혼판결시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의 양육은 남자나 여자가 하는데, 여자가 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혼여성은 직장생활에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이혼여성과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제 이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 및 친족관계

북한은 1946년 7월에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철폐했다. 따라서 이후 가족형태는 모든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장적인 확대가족형태는 소멸되고 핵가족 및 2세대중심 가족형태로 발전

해 왔다. 가족구성원은 대개 3~6명으로 3세대 가족은 약 20%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세대 중심의 가족에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관계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느냐 수평적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에서는 형식상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육아 및 일부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남녀평등질서가 구축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본 것처럼 80년대 이후 확대된 가부장적 가족정책으로 가정내에서는 가부장적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편은 주인이며 부인은 아랫사람인 것이다. 북한의 선전자료는, “여성들이 -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면 - 남편도 더 존경하게 되고 생활도 더 알뜰히 꾸미게 되며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²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범적인 혁명전사요 노력일꾼인 여성은 가정에서도 아내·어머니·며느리 역할을 잘한다고 하며, 여성들에게 슈퍼 우먼이 될 것을 주장하고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간의 긴장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룩되었으며, 여성들은 해방되었다는 선전과 달리, 북한여성들이 사회주의이념과 가부장이념 양자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부모자식관계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는 부자세습제로 김정일의 효를 강조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가족법 제28조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

24) 「조선여성」, 1989년 4월, p. 5.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통치차원의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북한에는 부모의 자식사랑과 자식의 부모공양, 효라는 덕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8년 현재 북한노인들은 아들부부와 거주비율이 45%, 딸부부와 거주비율은 24%, 노인부부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17%, 양로원입주 비율은 14%로 부모공양비율이 69%정도로 높게 나타난다.²⁵⁾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성의 경우 만 55세, 남성의 경우 만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령연금과 하루 300g의 식량배급만으로 인명해야 하므로 결국 노인들의 삶의 유지에 필요한 그 이외의 부양비용을 자식들이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노인부양비용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자식관계는 권위적 관계인데 특히 부권의 권위가 강하게 존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인데, 가족법 제30조에는 아들이 없거나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타인의 자식을 입양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정해 놓고 있다.

최근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북한의 여성들은 자식을 적게 낳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스스로 피임도 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71년 김일성이 자녀수는 3명 정도가 좋다는 교시를 한 이후부터 명시적인 산아제한정책은 아니지만 2명 이하로 출산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징집연령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25) 「내외통신」, 1993년 9월 16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4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출산을 장려하고 간염·결핵 등 환자외에는 임신중절, 피임수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유교전통이 사라지면서 가족을 넘는 친족관계는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혀진 것은 여타 자본주의국가들처럼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보다 문벌·문중·가문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인지되는 친족은 대개 6촌 이내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4촌만 넘으면 ‘먼 친척’으로 치부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향렬이나 촌수를 따지는 풍습이 아예 사라지고 없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신의 본(木)이 어디고 선대에 어떠한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친족관계의 제한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여행의 제한 때문이었다. 친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현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장례·혼인·제사·회갑잔치·돌잔치 등 전통적인 풍습을 통해서이다. 북한에서는 가정의례 자체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 하여 간소화하고 제한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아졌다. 최근에 와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3대 가족의 거주형태를 ‘조선의 미덕’이라 하여 권장함으로써 직계가족이 2대 중심에서 확대되는 경향이라 하겠다.

3. 의례생활

(1) 장례 및 제례의식

가정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느 한 가족에 정서적·현연적 귀속의식을 갖게 하는 가정생활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정착에 장애가 되는 봉건적 잔재라 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규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북한은 친족들이 모여 장례나 제사의식을 치르는 것을 물자의 낭비, 봉건잔재, 중파주의나 분파주의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했었다.

60년대 말경까지는 문중 차원의 확대 제사는 규제했지만 직계존속에 대한 제사는 전통적 방식으로 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것도 1974년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소위 ‘사회주의적 제사’ 방식을 제기함에 따라 변질되어 나갔다.²⁶⁾ 그 결과 추석성묘와 직계가족의 탈상제 정도는 묵인하지만 전통적인 유교적 제례방식과 달리 변질된 내용의 제례가 일반화되었다. 그것도 음력명절, 한식, 추석 등 전통명절을 무시하면서 기제사 정도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전통명절들이 부활되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 기념하는 것이 다시 활성화되었다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게다가

26) 김일성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낡은 습성 중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삿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로동신문』, 1974년 11월 3일자.

가 최근 김일성의 3년 탈상제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제례행위에 대한 갖가지 규제는 무의미해졌다.

제례음식은 물자의 부족으로 대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성의껏 힘닿는 범위내에서 마련한다고 한다. 제례시에는 축문을 읽거나 큰절을 하지 않고 다만 서서 묵념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례식 때 문상객들이 부의금을 내고 두 번 절하고 만상주가 곡을 하는 식의 전통적 의례방식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장례는 3일장이 거의 없으며 보통 1~2일장을 하는데 그것도 요즈음은 경제난으로 당일날로 치루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시신은 일반주민들의 경우 나무판자에 시신을 누고 형겅으로 싸는 것으로 관을 대신한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상여를 썼지만 요즈음은 소달구지나 트럭으로 운구하며 장지는 거주지 주위의 지정된 묘지를 쓰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갑잔치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주민들은 몰래 치러왔는데, 1961년 김일성이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교시를 내린 후부터 사라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다시 부활하여 당국의 묵인 아래 치러지고, 음식은 친척이나 이웃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는 쌀 및 부식물로 간소하게 기념하는 정도로 차려진다고 한다. 돌잔치도 아직 잔존하는데, 다만 탁아소에서 공동으로 치러진다고 한다.

(2) 명절

북한에서 명절은 남한처럼 전통민속명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 외에 국가경축일, 국제기념일까지 모두 통틀어서 하는 개념이다. 설, 한식, 추석 등은 따로 ‘민속명절’이라고 부른다. 군창건일과 전승기념일은 96년도에 추가되었는데 아마도 김정일이 군부에 의지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가장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부자의 생일날이다. 북한은 이 날들이 최대의 명절임을 부각하기 위해 연휴로 하고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달 동안을 축제기간으로 정해 놓고 혼인식도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 민족 4대 명절인 음력설,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 부활되었다. 민속명절을 부활한 것은 이산가족찾기사업, 해외동포들의 방문, 80년대말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의 우월성’ 등의 선전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날 쉬면 ‘대휴’라 하여 정무원이 고시한 그 전후의 일요일에 보충노동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반쪽 휴일이라 할 수 있다.²⁷⁾

북한주민들은 4대 명절에 성묘하고 벌초하는 풍습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전통의례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다면, 설날에 세배를 하지 않고 조상에게 큰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례를 집에서 지낼 경우 김일성부자의 초상화앞에 먼저 절을 올리고 조상을 추모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명절

27) 그런데 음력설만은 '93년 이후부터 따로 고시한 노동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력설이 완전 공휴일로 격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날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9·9정권창립일, 10·10당창건일 등 국가명절이며 민속명절이 아님을 유의해 둘 필요도 있다. 그 이유는 이 날들에는 사탕·과자·돼지고기 등 특별배급품이 나오지만, 정작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후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명절날에는 아무 것도 만나와 그냥 지내는 '깍뎨기 명절'이기 때문이다.

제5절 종교생활

1. 북한의 종교정책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당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남은 사상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²⁸⁾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보고 있다. 이러한

28)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1985, p. 490.

종교에 대한 성격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종교의 본질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념과 동일시한다. 종교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영적 세계와 정신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관념적인 형이상학적 신념이다. 반면 미신은 이러한 논리체계 없이 막연한 신비주의와 몽매주의, 심할 경우 환각주의에 기초해 있는 비현실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분명한 것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

둘째, 종교의 기능을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나 이용물로 보는 점이다. 오랜 인류 역사에 이런 현상이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종교는 왜소한 인간적 존재를 벗어나 초월적인 ‘그 무엇’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 내재해 있는 또 하나의 욕구인 본능에 규정되지 않고 정신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위대한 문명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규정은 관념론은 ‘해로운 것’, 유물론은 ‘유익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종교를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기 때문에 사상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북한이 80년대 이전까지 종교제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민들을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가 북한에 전혀 없음을 자랑하게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전향적인 종교정책을 펴게 된다.

1985년 고향방문단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베나 미사를 보고,

1988년과 89년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동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 보현사가 재건되어 아주 제한적이고 관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허용했다. 그리고 구약, 신약성서와 한글 팔만대장경, 만야심경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결국 북한은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제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북한은 종교인들의 해외활동 및 남한종교인들과의 접촉, 해외동포종교인 및 남한종교인들의 방북 등을 적극 허용하고 노동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도하는가 하면 나아가서 새로 개정된 「조선말대사전」이나 출판문헌들에서 과거의 극히 적대적이며 노골적인 종교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북한의 이러한 전향적인 종교정책의 변화는 첫째, 남한종교인 및 해외동포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구축의 의도, 둘째 종교를 믿는 북한주민들이 고령화되어 극소수이고 이미 대다수 청소년 및 장년층들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 셋째 대외개방 및 해외이미지 개선에 종교의 적극적 활용, 넷째 주체사상과 종교의 친화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현재의 종교실태

북한이 1950년에 펴낸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해방 당시 북

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명, 총계 약 200만여명의 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 북한 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교구 4개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종교탄압정책으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월남하고, 전쟁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배교함으로써 현재에는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북한의 종교정책에 따라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교인수는 불교신자 약 1만명, 기독교신자 약 1만명, 천도교신자 약 1만5천명, 천주교신자 3~4천명 총 3만8천여명으로 인구의 약 0.2% 수준이다 (<표 9-10> 참조). 이 중 가장 많은 신도수와 교당을 지닌 종교는 천도교로서, 천도교위원장인 류미영은 김일성 장의위원회 273명 중 39위로 올라가 있으며, 천도교 청우당은 북한내 유일한 종교단체적 성격을 띤 정당으로서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청우당원은 22명이고 지방의회 대의원으로 300여명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6·25 이후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천도교 청우당이 노동당의 우당으로 활동함에 따라 조선천도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대남공세 차

〈표 9-10〉

북한의 종교실태

종 파	신 도 수		교 직 자 수		교 당(사찰) 수		비 고 단 체 명
	해방후	1994년	해방후	1994년	해방후	1994년	
천도교	150만명	1만5천명	--	--	99개	약 800개	천도교청우당
불교	37만명	1만명	732명	3백여명	518개	약 60개	조선불교도연맹
기독교	20만명	1만명	908명	30명 (목사, 전도사)	2,000여	2개	조선기독교연맹
천주교	5만7천명	3~4천명	262명	--	교구4개	성당1개	조선천주교인 연합회
총 계	2백12만명	3만8천여명	1,902명	330여명	2,617여개, 4교구	861개	

※자료: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공보처)의 내용을 수정 정리.

원에서 발표됨으로써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종교 본연의 활동은 아니었다. 종교 본연의 활동은 1986년 천도교 창도 기념일인 ‘천일절’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재개되었으며, 이 기념의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단군능에서 단군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이른바 민족종교로 부각되어 다른 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북한 주민에게 종교본연의 활동보다는 정당단체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²⁹⁾

29)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 현황”,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34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의 종교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 협력과제』, p. 5.

불교의 경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인민들의 문화휴식처 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사찰이 복원됨에 따라 그 활동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종파는 조계종이지만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절에 상주하지 않는 대처승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찰은 현재 종교적 의미와 기능은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³⁰⁾ 즉 불가의 3대 기념일인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에 예불을 집전하고 법회도 열리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신자들에 의한 신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승려는 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선사, 선사, 대덕, 중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89년 김일성의 지시로 광범사내에 설립된 불교학원에서 양성된다고 한다.

천주교의 경우 1988년 6월 30일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가 표면화되고 활동이 재개되었다. 천주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 북한이 단행한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로 인해 그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고, 또 바티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천주교의 특성상 북한 당국이 처음부터 어용화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활동 재개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1989년 평양에 장충성당이 설립됨에 따라 성당이 하나 있으나 신부, 수녀가 한 명도

30) 임순희,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상),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8.

없기 때문에 신자들만으로 그것도 40대 후반 이후의 100~150여명 신자만으로 주일공소예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개별적으로 혹은 몇몇 신자들끼리 모여 종교 본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천주교신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말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조선 기독교연맹에서 이름을 바꾼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인 강양육이 6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이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북한의 다른 종교에 비해 일찍이 해외에 그 존재를 알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대외선전적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가 종교 본연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북한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88년 봉수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두번째로 평양에 철골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이 두 교회에서 계기가 있을 때 100~300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방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50대 이후의 노년층으로 어린아이는 전혀 없고 청년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성직자로는 30여명의 목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1972년 설립된 평양신학원이라는 신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1983년, 1984년 각각 출간하고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여 신학도 강의되고 있다. 조선 기독교도연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독교신자는 1만여명 있고, 5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한편, 이런 대외적·정치적 목적하에 어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외에 종교 본연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약 100~500개의 지하교회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1950년 당시 북한의 기독교신자가 10만명 이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 북한의 종교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 북한에는 그간의 종교 탄압정책과 어용적인 종교정책으로 종교의 부재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점차 통제력이 이완되고 있는 사회변화로 인해 종교가 소생기에 접어들고 있음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북한은 일찍이 혁명가극 성향당에서 “종교도 미신도 없어진 단 하나의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하였지만, 이제 사회변화의 압박으로 종교의 자유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3. 북한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들은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

31) 이 점은 몇몇 방북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미국무성 종교자유자문위원회에서는 북한 전역에 소규모의 가정교회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류성민, 앞의 글, p. 5에서 인용.

어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간의 북한당국의 선전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탈북자들이 ‘목사’나 ‘신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든가, 예수나 부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종교는 “정신나가고” “얼빠진”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방북 종교인들에 따르면, 가까운 곳에 사는 평양시민들이나 안내원조차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천주교와 천도교를 구분 못하든가 신부와 스님,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안내받는 스님을 ‘중선생’이라고 호칭했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면서 종교 자체에 대해 무조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모순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무조건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 적대심을 갖는 것은 11년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종교는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식민지적 침략의 침병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북한은 기독교를 “철천지 원수”인 미제의 스파이라고 가르친다. 늘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놓치지 않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침병으로 보내어 그 곳 주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두번째 이유는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은 대체로 50~60대 주민들이다. 이들은 해방직후나 전쟁후 많은 종교인들이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세대이다. 현재 북한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하 주민들은 철저하게 출신성분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운명이 달라지는 북한의 사회여건상 종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환각을 갖게 하는 미신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믿을 바 못되는 몹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징작 '점'(占)을 본다든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는 토속신앙으로서 일종의 풍습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집안에 불상사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곤경을 겪을 때 그 해결책을 미신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고,³²⁾ 이러한 점은 당간부들의 경우가 더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불안으로 점집이 더욱 성행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95년까지 1개 시·군에 불과 30여명에 불과하던 점쟁이가 96년 이후에는 100여명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점쟁이들의 복채가 엄청나 궁합의 경우 100원

32) 여만철씨와 최순영씨가 북한을 탈출하기 전 점을 보고 길일을 잡아 탈출했다고 한다.

이며 미래에언이나 묘자리의 경우 액수가 엄청나서 일반주민들의 평균소득을 몇배나 상회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정주부들까지 가짜 점쟁이로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은 손금을 보거나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복채만 마련되면 점을 보러 가는 모습도 나타나는다. 이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종교없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종교욕구는 갖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경제동물(homo economicus)이면서 종교동물(homo religious)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삶을 영위하지만 영적이며 정신적인 추동력에 의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현재 북한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관제적 종교활동이 있고, 극히 일부 주민들만이 음성적으로 개인의 종교생활을 지키고 있지만, 종교욕구 자체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주민들은 종교적 욕구를 김일성주의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강정구의,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5.
-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 남인숙,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1993.
-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공보처, 1994.
- _____,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현황”, 숙명여자
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34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의 종교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 협력과제』,
1998년 10월.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1995.
-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 _____,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공보처, 1994.
- 손봉숙, 『북한의 여성 - 그 삶의 현장』, 공보처, 1993.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 이영선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이종석, 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통일연수원,
1996.
- 이태욱, 『북한경제와 주민생활』, 공보처, 1993.

임순희, “북한 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상), 민족통일연구원, 1996.

조동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한국개발연구원, 1994.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주강현, 『풍습으로 본 북한의 주민생활』, 공보처, 199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1996.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북한사회의 이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X. 북한의 변화 가능성

제1절	433
북한의 변화방향	
제2절	438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요 점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기존노선의 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경우에는 제3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도 이념이나 제도와 같은 중심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대외개방과 경제영역에서 개인적 경제활동이 싹트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 북한은 앞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남정책은 기존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1절 북한의 변화방향

1997년 10월 8일 김일성 사후 3년 이상 비어 있던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에 김정일을 추대함으로써 북한체제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김정일시대의 문을 열었다.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를 앞두고 과연 김정일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한체제를 장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일단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김정일의 후계자 계승은 안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998년 9월 9일 북한정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헌법상 주석직을 폐지한 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및 당총비서를 겸임하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면서 유일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완만한 속도로나마 이미 변화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그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가? 현재 북한체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변화는 권력정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체제변화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체제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현상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농업비중이 높고 공업 비중이 미미했던 나라들이 발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해 온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의 경우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처럼 국가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중공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기회있을 때마다 기존노선의 고수를 천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북한체제에 있어서 변화는 비록 제한적 형태의 개혁이라 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체제 전반

의 문제가 서서히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에서 조기붕괴론이나 연착륙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북한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든 변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자신들의 체제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은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로 표현된다.

그러나 북한도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고수하는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는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세계체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1996년 4월 22일 미국을 방문한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우가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은 수출제일주의정책을 펼 것이며, 자본주의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단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한 것이나 최근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에 합의하는 것 등에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약한 형태로나마 시장경제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급제도의 일부 붕괴로 농민시장이 확대되는가 하면 그 결과로 물물교환이나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생필품 구입 등의

사적 거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국영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상점 및 직매점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로 평양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는 일일시장인 장마당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서는 식량이 국정가격보다 약100배 정도의 고가로 거래되거나 수요·공급의 균형점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달라지는 등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당국은 중요한 시기마다 군사우위정책을 더욱 강화해 왔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주로 군부대 방문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사상 더하기 총대'가 혁명전쟁 승리의 철학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도 했다. 경제건설도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기초위에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집권층은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면 인민대중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회주의를 배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집권층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붕괴가 사상의 문제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가능성은 경제·사회영역에서 일부 제한된 지역개방과 부분적인 자본주의적 교환활동,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물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집단주의적 경제행동의 이완 등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으나 집권층이 '위로부터의 혁명'과 '사상의 공고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짧은 시간 안에 체제 전반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북한지도부가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개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경제위기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1. 김정일 정권기반의 확립

지금까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 후계자는 전임자와 달리 나름대로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였다. 예컨대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기치 아래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였으며, 덩소평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정당화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식 통치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정권기반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과거처럼 최고통치

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바탕으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는 수령이 되어 1인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독재정치를 고수하려고 할 경우,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우상화교육 때문에 무조건적 충성을 해왔으나 김정일체제하에서는 물질적인 유인(誘因) 없이 주민들의 충성을 장기간 유도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도 “사회주의 사회의 새세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주로 당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말을 남기는가 하면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주체사상의 구현과 혁명전통옹호계승 등을 강조하고, ‘인덕정치’(仁德政治)와 ‘광폭정치’(廣幅政治)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1996년부터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통치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도 김일성의 후광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김정일은 정치·군사·경제·외교문제와 관련된 현실적 통치방식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은 총비서에 추대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내놓지 못한 형편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한 바가 없다. 앞으로도 김정일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

명전통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건을 위해 합리적·실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과 체제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2. 경제난의 해결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한두 해 심각한 자연재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독려하던 당의 지령과 정치적·도덕적 자극에 의한 경제운영이 한계성을 드러내고 1970년대 차관도입 이후 외채의 누중,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상실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공급에 대한 국제 가격 책정 및 경화결제 요구와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화무역 거래방식 요구가 북한의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해 왔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내세워 온 북한의 '주체경제'는 사실상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경제가 1990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식량부족이 심각해져 감에 따라 주민들은 생

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5년과 1996년의 수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더욱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 및 해외자본을 들여와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수정하여 생산목표를 낮게 부과하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자유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현재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3. 대외관계의 개선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과 냉전시대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는 탈냉전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서방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부분적으

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할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보장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미·북간의 '기본합의문'을 북한이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도 많은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고립탈피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엔 동시가입, 미·일과 관계개선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의 남북관계 개선을 회피하면서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펴는 데 반해 북한은 그동안 우리를 '따돌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다가 99년도 신년공동사설에 이르러 '연공연북통일'이 유일한 출로라고 제시하는 등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남한 및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생존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기본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서방 및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 있음도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컴퓨터사, 1996.
- 김갑철, 『북한학개론』, 문우사, 1990.
- 김영수,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스, 1994.
- 노승우, 『민족통일의 이론과 실천』, 전예원, 1996.
- 박완신, 『북한정권의 체제론적 특성과 변화예측』, 월간국방, 1993.
- 윤정식 외, 『통일환경론』, 오름, 1996.
- 이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 이용필·양성철,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1996.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와 비평사, 1995.
- 최명 외, 『북한개론』, 박영사, 1990.
-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보성문화사, 1995.

공동 집필진(통일교육원 교수)

고 성 호	권 영 경
김 석 향	김 용 재
박 감 수	박 하 진
정 부 략	(가나다 순)

북한문제 이해

인쇄일 1998년 12월 29일
발행일 1998년 12월 31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901-7021 / FAX.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비매품>

